

2008 -

2008

이세정 ·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2008

A Research on the 2008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연구자 : 이세정(부연구위원)
Yi, Se-Jeong
이상윤(부연구위원)
Lee, Sang-Yoon

2008. 9. 5.

국 문 요 약

1997년 IMF 구제금융기를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법의식(정확하게는 권리의식)도 성장하여 그동안 우리국민의 특유한 법의식으로 거론되어 왔던 ‘재판을 싫어하는 국민’이라는 관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여전히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법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이와 같은 우리사회의 변화 및 국민법의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민법의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변화양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91·'94년 국민법의식 조사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과학적인 조사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에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선진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2008년 4월 25일부터 5월 30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전국(제주특별자치구 포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7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8\%$ 이내이다. 수집된 자료)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

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

설문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였다.

제2장에서는 법의식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국민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느낌,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에 관한 문항 등을 채택하여 살펴보았다.

제5장에서는 국민의 법생활화 정도를 ‘법생활과 법적 경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권력·재력·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지도, 제도도입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적 시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제7장에서는 이 외에도 현행법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헌법에 대한 의식, 정치관계법,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환경오염의 규제 방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제8장에서는 전체 조사내용을 요약하고, 2008 국민법의식의 현주소를 밝힌 뒤, 이 보고서의 결과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Abstract

As Korean society underwent rapid change in economic structures and reconstruction during and after the IMF relief loan era, it is experiencing a number of social changes such as earning differentials between social classes and a rise in income disproportion.

Also, as peoples' positive cognizance of the law and the awareness of their rights continue to grow, the issue of the validity of the 'people who abhor trials' - idea, has been raised continuously in the light of the public's increase in legal consciousness.

However, an absence of law-abiding spirit is still occurring, and the opinion on the tendency to use the law as a tool is intensifying. Such discussions on social change and the transformation of legal consciousness suggest the need for a scientific and empirical examination of legal consciousness and its effects (positive and negative) on changes.

Therefore, this report has the following purposes:

- to fully understand the status quo of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by examining and analyzing, through scientific research methodology, aspects of change in legal consciousness with reference to legal consciousness research of 1991 & 1994,
- to suggest comparable references in chronological order to aid future legislation and law enforcement, and furthermore, to put in place a plan for the fairness of law enforcement and possibly make predictions about the korean people's legal interactions in future daily life,
- finally, to make a contribution to realize an advanced Rechtsstaat.

To achieve these purpose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3,007 men and women, over 19 years of age from the whole country (including the Jeju special autonomous district) were asked to complete the survey. The research was conducted for thirty days from April 25, 2008 to May 30th. The researcher visited every household to conduct the survey in person.

The maximum sampling error is 95% with a confidence level of $\pm 1.8\%$. After the process of editing, coding, and capturing the raw data, data was entered into the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using IBM compatible Pentium PC.

Prior to focusing on the survey results, chapter 1 describes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as well as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research.

Chapter 2 briefly looks at the concept of legal competence and the history of legal competency research in Korea.

Chapter 3 examines how change in one's sense of values is reflected in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Chapter 4 includes questions related to the perception of the law, the necessity of the law and reasons for its existence, and the value of the law's existence in order to determine the Korean people's consciousness of law and their attitude towards the law.

Chapter 5 investigates the extent of the law in people's daily life, focusing on the Korean people's legal interactions and legal experience and the law-abiding spirit and consciousness of rights.

To determine the attitude towards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chapter 6 analyzes questions and opinions on effective operational practices on the following: the effect of public opinion in trials, the cognitive level of the

law school system, the effect of applying the system, and the cognitive level of the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trial.

Chapter 7 examines opinions on the current legal system. Questions on inappropriate laws for current societal needs, consciousness of constitutional law,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in political law violations, management labor law, and regulations on environmental pollution are also examined.

Chapter 8 summarizes the research, and exposes the Korean people's legal consciousness in 2008, and makes recommendation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Key Words : Legal Consciousness, Consciousness of Rights, Law-Abiding Spirits, Law-related Education,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목 차

국문요약	3
Abstract	5
제 1 장 서 론	23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3
II.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5
1. 연구의 내용	25
2. 연구의 방법	30
제 2 장 법의식의 개념 정의 및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	43
I. 법의식의 개념 정의	43
1. 문제의 소재	43
2. 법의식의 개념적 다양성	44
3. 유사개념과의 구분	51
4. 이 연구에서의 법의식 개념	60
II.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	62
1. 1990년대 이전	62
2. 1990년대 이후	65
3. 기존의 법의식조사연구 결과의 특징	67
제 3 장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73
I. 개 관	73

II.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75
III. 여성의 법적 지위	79
1. 여성의 법률상 대우	80
2.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85
IV. 병역을 마친 남성의 법적 권리	88
V.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민족에 대한 포용 여부	92
 제 4 장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97
I. 개 관	97
II. 법에 대한 인상	102
III. 법규범력의 좌표	106
1. 법의 필요 정도	106
2. 법이 필요한 이유	107
3. 악법에 대한 인식	111
IV.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115
 제 5 장 국민의 법생활	 119
I. 개 관	119
II. 법생활과 법적 경험	122
1. 법인지경로(생활법률 관련 정보의 인지경로)	122
2. 법인지욕구	130
3. 법적 경험	137
4.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147
5. 법교육	150

6.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169
7. 법지식 수준	179
Ⅲ.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182
1. 개 관	182
2.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	192
3. 법준수 자가진단 및 자신의 비준수 이유	201
4.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유형	205
5.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210
6. 권리의식	214
제 6 장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231
I. 개 관	231
Ⅱ. 권력·재력/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6
1.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6
2.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8
Ⅲ. 로스쿨 제도	242
1. 로스쿨 제도의 인지도	242
2. 로스쿨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245
Ⅳ. 국민참여재판제도	248
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248
2.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방안	250
제 7 장 현행 법제에 대한 태도	253
I. 현실에 맞지 않는 법	254

1.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	254
2. 안락사 허용 여부	258
3. 사형제 존치여부	261
Ⅱ. 헌법에 대한 의견	264
1. 헌법에 대한 인상	264
2. 헌법의 성격	271
Ⅲ. 정치관계법	274
1. 정치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개선점	275
2. 선거법 준수도 및 비준수 이유	279
Ⅳ.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284
1. 개 관	284
2. 노사관계법 준수도	285
3. 노사관계법 비준수 집단	290
Ⅴ. 환경오염의 규제방향(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	293
제 8 장 결 론	299
【참 고 문 헌】	303

표 목차

【표-1】 2008 국민법의식조사 분야 및 항목	27
【표-2】 표본추출과정	31
【표-3】 권역별 추출지점의 수	31
【표-4】 표본집락에 속하는 지역 및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	32
【표-5】 성별 및 연령별 할당표본수	33
【표-6】 표본의 크기별 표본 오차 예시	35
【표-7】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6
【표-8】 설문조사기간 전후의 사건 및 언론동향	39
【표-9】 연도별 민사소송사건 접수 추이	70
【표-10】 특성별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	78
【표-11】 특성별 여성의 법률상 대우 정도	84
【표-12】 특성별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87
【표-13】 특성별 병역을 마친 남성의 법적 권리	91
【표-14】 특성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민족에 대한 포용 여부	95
【표-15】 교차분석 : 악법에 대한 인식↔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99
【표-16】 교차분석 : 유전무죄에 관한 인식 ↔ 법에 대한 느낌	100
【표-17】 특성별 법에 대한 느낌	104
【표-18】 특성별 법이 필요한 이유	110
【표-19】 특성별 악법에 대한 인식	114
【표-20】 특성별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117

【표-21】 요인분석	120
【표-22】 일원분산분석 : 법에 대한 관심집단별 소송제기 의견차이	121
【표-23】 교차분석 : 생활정보 인지경로/계약서 숙지 정도 ↔ 판결기사에 대한 관심	125
【표-24】 특성별 법인지경로(생활법률 관련 정보의 인지경로 -중복응답)	129
【표-25】 특성별 법령·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	133
【표-26】 특성별 계약서 숙지정도	136
【표-27】 교차분석 :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138
【표-28】 교차분석 :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법에 대한 느낌	138
【표-29】 특성별 법률서비스 이용경험	140
【표-30】 특성별 법률서비스 용이 여부	143
【표-31】 특성별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유	146
【표-32】 특성별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149
【표-33】 학년별 민주시민요소의 주제수에 다른 빈도수와 차시 배당시간	152
【표-34】 교차분석 : 초중고교의 법교육↔법교육 효용	154
【표-35】 특성별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158
【표-36】 특성별 법교육 중점부문	162
【표-37】 특성별 법교육의 효용	165
【표-38】 특성별 신규 법교육 수요(중복응답)	168
【표-39】 특성별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172
【표-40】 특성별 법이 난해하다고 여기는지 여부	175
【표-41】 특성별 법이 난해하다고 느끼는 이유	178

【표-42】 특성별 법지식 수준	181
【표-43】 특성별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195
【표-44】 특성별 우리 사회에서 법 비준수 이유	198
【표-45】 특성별 법준수 자가진단	202
【표-46】 특성별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유형(중복응답)	209
【표-47】 특성별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213
【표-48】 특성별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	220
【표-49】 특성별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224
【표-50】 특성별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229
【표-51】 교차분석 :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5
【표-52】 교차분석 : 로스쿨 제도 인지도 ↔ 국민참여재판제도 인지도	235
【표-53】 특성별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41
【표-54】 특성별 로스쿨 제도의 인지도	244
【표-55】 특성별 로스쿨 제도의 시행의 예상효과	247
【표-56】 특성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249
【표-57】 특성별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 방안	252
【표-58】 특성별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	257
【표-59】 특성별 안락사 허용 여부	260
【표-60】 특성별 사형제 존치 여부	263
【표-61】 특성별 헌법에 대한 인상 - 국민의 기본권 보장	266
【표-62】 특성별 헌법의 성격	273
【표-63】 교차분석 : 선거법준수도 ↔ 노사관계법준수도	275

【표-64】 특성별 정치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개선점	278
【표-65】 특성별 준수도	280
【표-66】 특성별 선거법 비준수의 이유	283
【표-67】 특성별 노사관계법 준수도	289
【표-68】 특성별 노사관계법 비준수 집단	292
【표-69】 특성별 환경오염의 규제방향(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	297

비교표 목차

【비교표-1】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77
【비교표-2】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여성의 법률상 대우 등	82
【비교표-3】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법에 대한 인상	105
【비교표-4】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법이 필요한 이유	109
【비교표-5】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생활법률 인지 경로	127
【비교표-6】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법인지 욕구	132
【비교표-7】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계약서 숙지 정도	135
【비교표-8】 1994년조사와의 비교 - 법교육 정도	157
【비교표-9】 1994년조사와의 비교 - 법교육 중점부문	161
【비교표-10】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171
【비교표-11】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준법정신	199
【비교표-12】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207
【비교표-13】 1994년조사와의 비교 -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212
【비교표-14】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불량품 구입시 대처 방법	219
【비교표-15】 1991년조사·1994년조사와의 비교 -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방법	223

【비교표-16】 1991년조사 · 1994년조사와의 비교 - 권력 · 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7
【비교표-17】 1991년조사 · 1994년조사와의 비교 -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40
【비교표-18】 1991년조사 · 1994년조사와의 비교 - 노사관계법 준수도 등	287
【비교표-19】 1994년조사와의 비교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296

그림 목차

【그림-1】 가족내 의사결정 구조	76
【그림-2】 여성의 법률상 대우 정도	81
【그림-3】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86
【그림-4】 병역을 마친 남성의 법적 권리	90
【그림-5】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민족에 대한 포용 여부	94
【그림-6】 법에 대한 인상	103
【그림-7】 법의 필요 정도	106
【그림-8】 법이 필요한 이유	108
【그림-9】 악법에 대한 인식	113
【그림-10】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유전무죄에 관한 의식)	116
【그림-11】 법인지경로(생활법률 관련 정보의 인지경로)	126
【그림-12】 법령·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 정도	131
【그림-13】 계약서 숙지 정도	134
【그림-14】 법률서비스 이용경험	139
【그림-15】 법률서비스 접근 용이 여부	142
【그림-16】 법률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이유	145
【그림-17】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	148
【그림-18】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156
【그림-19】 법교육 중점부문	160
【그림-20】 법교육의 효용	164
【그림-21】 신규 법교육 수요	167

【그림-22】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170
【그림-23】 법이 난해하다고 여기는지 여부	174
【그림-24】 법이 난해하다고 느끼는 이유	177
【그림-25】 법지식 수준	180
【그림-26】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194
【그림-27】 우리 사회에서 법 비준수 이유	197
【그림-28】 법준수 자가진단	202
【그림-29】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	204
【그림-30】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유형	206
【그림-31】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211
【그림-32】 뺑소니 목격시의 행동방법	215
【그림-33】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	218
【그림-34】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222
【그림-35】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228
【그림-36】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6
【그림-37】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239
【그림-38】 로스쿨 제도의 인지도	243
【그림-39】 로스쿨 제도의 시행의 예상효과	246
【그림-40】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248
【그림-41】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방안	251
【그림-42】 인터넷 실명제 필요성	256
【그림-43】 안락사 허용 여부	259
【그림-44】 사형제 존치 여부	262

【그림-45】 헌법에 대한 인상 -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265
【그림-46】 헌법에 대한 인상 -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법	268
【그림-47】 헌법에 대한 인상 - 약자 보호를 위한 법	270
【그림-48】 헌법의 성격	272
【그림-49】 정치 투명화·선진화를 위한 개선점	277
【그림-50】 선거법 준수도	279
【그림-51】 선거법 비준수의 이유	282
【그림-52】 노사관계법 준수도	286
【그림-53】 노사관계법 비준수 집단	291
【그림-54】 환경오염의 규제방향(환경오염 유발기업에 대한 규제)	295

제 1 장 서 론

I.

오늘날 법은 공동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불가결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가사회의 작동장치로서의 수많은 법제도들이 일정한 입법과정을 거쳐 제정되고 있으나, 그 정당한 사회적 가치의 유지는 국가와 사회구성원의 공통적인 인식과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법을 지키는 데는 법을 준수하려는 법의식이 필요하다. 즉, 법의식은 법제도가 그 합법성과 정당성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의욕 내지 정신이며, 동시에 그 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외국법의 수용에 의해 전체적인 법체계가 사회구조 또는 사회구성원의 행위유형이나 법의식과 일치하지 않는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¹⁾ 이러한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한국의 전근대적인 법문화에 있는 것으로 가정되었고, 여기에서 현대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²⁾ 이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부터 여러 학자와 기관에 의해서 국민법의식 관련 조사들이 행해져 왔고, 특히 1990년대에는 우리 사회의 국민법의식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³⁾와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⁴⁾를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연구 이후에도 몇몇 개별적인

1) 황승흠, 법과 사회질서를 보는 사회과학적 시각, 법과 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999, 229쪽.

2) 양 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사회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1989, 69쪽.

3) 박상철 외 2인,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이 조사는 1991년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무작위·계통적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4)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이 조사는 1994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전국 20세 이상의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표본은 ‘다단계층화집락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관련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나, 21세기에 들어선 후에는 대규모의 국민법의식 조사연구는 수행된 바 없다.

1997년 IMF 구제금융기를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다.⁵⁾ 그리고 국민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법의식(정확하게는 권리의식)도 성장하여 그 동안 우리국민의 특유한 법의식으로 거론되어 왔던 무송(無訟)사상이나 ‘재판을 싫어하는 국민’이라는 관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⁶⁾ 하지만 여전히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법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하다.⁷⁾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 및 국민법의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민법의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변화양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91·‘94년 국민법의식조사 이후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과학적인 조사방법론 등을 사용하여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에 있어서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나아가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선진적 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5) 김종철,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9쪽.

6) 양 건, 앞의 논문, 73-74쪽;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山訟)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사회갈등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이은영, 한국의 계약문화,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제25호, 2003, 291쪽 이하; 임상혁, 소송 기피의 문화전통에 대한 재고와 한국사회, 법과 사회 제25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3 등. 홍준형 교수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소송회피적 법문화(Streitsvermeidungskultur)가 아니라 오히려 쟁송불사적 법문화(Streitsbereitschaftskultur)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힘으로써 이러한 입장들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103쪽.

7) 최송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공법연구 제3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10, 3쪽.

II.

1.

(1)

‘2008 국민법의회식조사연구’는 ‘한국인’의 ‘2008년’ ‘법의회식’을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다. 설문분야와 문항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시계열적 비교를 염두에 두면서 ’91·’94 국민법의회식조사를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그 동안의 사회적·경제적·법적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더 이상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문항은 배제함과 동시에 현대사회의 법생활을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수의 새로운 문항들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담당연구진과 자문위원 및 조사·분석 전문가들이 참석한 총 3회에 걸친 자문회의 및 전문가회의를 통하여 예상설문문항을 구성하였고, 이에 관한 적합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에 따라 정리된 예상설문문항을 토대로 여론조사 전문가들과 총 5회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하여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단어 및 문장으로 재구성하였다.

(2)

‘2008 국민법의회식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를 파악함에 있어 그 대표성과 적실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서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여성의 법률상 지위, 남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여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국민법의회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진단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느낌,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를 중심으로 한 법규범력의 좌표와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판단, 악법에 대한 인식, 유전무죄·무전유죄에 관한 인식,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였다.

셋째,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가늠하기 위하여 국민의 법생활화 정도를 조사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법생활과 법적 경험(법인지경로, 법인지욕구, 법적 경험, 법적 지식, 법교육의 중점부문 및 효용 등), 준법정신과 권리의식(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와 비준수 이유, 법준수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고발정신, 권리의식 등), 법의 사용능력 및 분쟁해결방법 등이다.

넷째,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제도 도입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적 시행을 위한 의견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다섯째, 이 조사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법생활, 법정립·집행·적용기관에 대한 태도를 묻는데 중점을 두었으나, 그 외에도 현행법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으로서 현실에 맞지 않는 법, 헌법에 대한 의식, 정치관계법,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3)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에 기초하여 더욱 상세한 조사의 분야 및 항목을 표시하면 다음의 【표-1】 과 같다.

【 -1】 2008

		1991	1994
사회적 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 문1)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권	○ ⁸⁾	○
	• 문2) 여성의 법률상의 대우 정도		○
	• 문2-1)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		
	• 문3)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		
	• 문4)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타인종/민족에 대한 포용여부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 문5) 법에 대한 느낌	○	○
	• 문6) 법의 필요성		
	• 문6-1) 법이 필요한 이유	○	○
	• 문7) 악법에 대한 인식		
	• 문8)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관한 인식		
국민의 법생활	• 문9) 생활법률정보 인지경로	○	○
	• 문10) 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	○	○
	• 문11) 법률서비스 이용경험		
	• 문11-1) 법률서비스 접근 용이 여부		
	• 문11-2)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 문12)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 문13) 계약서 숙지 정도	○	○
	• 문14)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
	• 문15) 법교육 중점부문		○
	• 문16) 법교육의 효용		
• 문17) 신규 법교육 수요			

		1991	1994
	• 문18)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	○
	• 문19) 법의 난해 정도		
	• 문19-1) 법이 난해하다고 느끼는 이유		
	• 문20) 법지식 수준 자가진단		
	• 문21)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	○
	• 문21-1)우리 사회의 법 비준수 이유	○	○
	• 문22) 법준수 자가진단		
	• 문22-1)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		
	• 문23)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	○
	• 문24)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
	• 문25) 뺑소니 대처방법		
	• 문26) 불량품 구매시 대처 반응	○	○
	• 문27)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	○
	• 문28) 집단따돌림 대처 방법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 문29)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 문30)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	○
	• 문31) 로스쿨 제도에 대한 인지도		
	• 문32) 로스쿨 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 문33)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		
	• 문34) 국민참여재판의 효과적 시행 방안		

II.

		1991	1994
현행법제에 대한 견해	• 문35) 인터넷 실명제		
	• 문36) 안락사 허용		
	• 문37) 사형제 존폐		
	• 문38) 헌법에 대한 인상		
	• 문39) 헌법의 성격		
	• 문40) 정치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것		
	• 문41) 선거법 준수도		
	• 문41-1) 선거법 비준수 이유		
	• 문42) 노사관계법 준수도		
	• 문42-1) 노사관계법 비준수 집단	○	○
	• 문43)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한 규제		
기본 인적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 • 나이 • 최종학력 • 직업 • 혼인여부 • 소득수준 • 계층 • 이념성향 • 종교 		

8) 앞서 언급한 것처럼, 2008년도연구에서는 설문문항을 개발할 때 1991년도연구와 1994년도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에서 용어의 선택이나 문장의 구성, 예시의 순서 등에서 일부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맥락에서 시계열적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문항의 경우 '○'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어떠한 의미에서 보면, 입법·법적용·법해석의 방향은 주로 법전문가(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 법학도, 기타 법률종사자 등)에 의하여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법의식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국민법의식의 조사가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방법론 수립 및 별도의 설문지 구성 등을 필요로 하는바, 연구수행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서는 이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⁹⁾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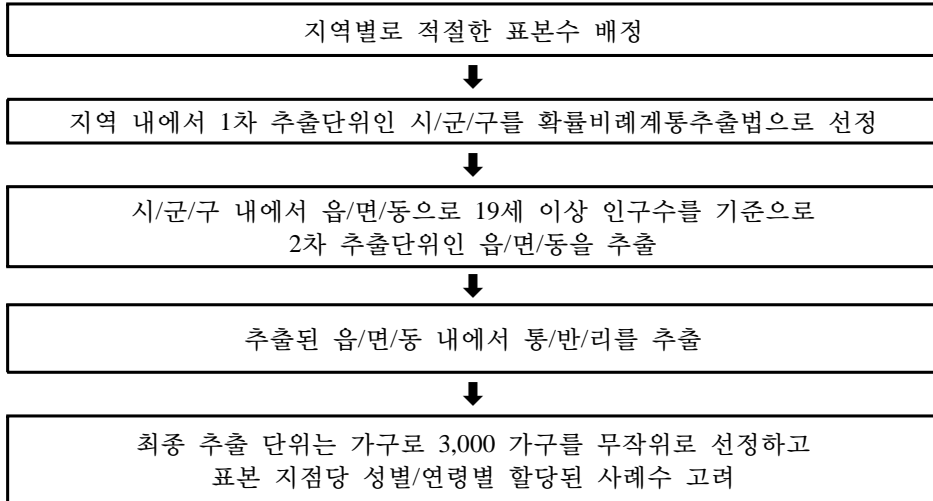
(1)

‘2008 국민법의식조사연구’의 설문조사는 본조사에 앞서서 예비조사(pre-Test)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는 2008년 4월 25일 서울·경기지역 거주자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본조사는 2008년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31일간에 걸쳐 2007년 12월 31일 현재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근거하여 전국(제주특별자치구 포함)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사용하여 조사원이 개별가구를 방문하여 조사대상자를 직접 면접하는 조사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본조사의 표본은 ‘다단계 층화 확률비례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이 방법은 지역별 최소표본수를 약 100개 수준으로 정하고, 기본할당수준에 따라 단순비례와 제곱근비례배분방식을 적절하게 적용함으로써 지역 간의 편차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조사의 표본추출과정은 다음의 【표-2】와 같고, 권역별 추출지점의 수는 다음의 【표-3】과 같다.

9) 법전문가의 법의식조사는 향후 본원의 연구과제로서 선정될 예정이다.

【 -2】



【 -3】

경인권	49	29	1	79
강원권	-	14	5	19
충청권	16	21	13	50
전라권	16	25	13	54
경상권	55	31	9	95
제주권	-	11	4	15
합 계	136	131	45	312

표본은 지역별 비교 등을 고려하여 ‘우선할당 + 비례배분방식’으로 할당하였고,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한 사후층화가중치를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표본추출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추출된 표본집락에 속하는 지역과 조사지역별 할당표본수는 다음의 【표-4】와 같고, 이를 다시 성별 및 연령별로 분류하면 다음의 【표-5】와 같다.¹⁰⁾

【 -4】

		② 80+ ()
		()
서울	8,070,748	296
부산	2,849,853	208
대구	1,903,380	185
인천	2,014,156	189
광주	1,034,784	157
대전	1,102,658	160
울산	810,693	148
경기	8,274,194	298
강원	1,169,747	162
충북	1,152,050	162
충남	1,542,394	174
전북	1,430,990	171
전남	1,504,749	173
경북	2,105,913	190
경남	2,428,111	198
제주	415,807	129
전국	37,810,227	3,000

10) 그리고 조사지점 선정은 16개 각 지역에서 무작위로 뽑았으며, 표본할당 기준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10명, 읍면지역은 11명이다. 조사지점은 【부록 IV】와 같다.

【 -5】

			19 ~29	30 ~39	40 ~49	50
전 국	소계	3000	630	688	677	1005
	남	1482	325	350	345	462
	여	1518	305	338	332	543
서 울	소계	296	68	71	65	92
	남	144	34	35	32	43
	여	152	34	36	33	49
부 산	소계	208	45	44	45	74
	남	102	23	22	22	35
	여	106	22	22	23	39
대 구	소계	185	41	42	43	59
	남	90	21	20	22	27
	여	95	20	22	21	32
인 천	소계	189	43	46	47	53
	남	94	22	24	23	25
	여	95	21	22	24	28
광 주	소계	157	36	40	36	45
	남	76	18	20	18	20
	여	81	18	20	18	25
대 전	소계	160	38	39	37	46
	남	79	19	20	18	22
	여	81	19	19	19	24
울 산	소계	148	32	37	40	39
	남	75	17	17	21	20
	여	73	15	20	19	19
경 기	소계	298	62	80	73	83

			19 ~29	30 ~39	40 ~49	50
	남	149	31	40	38	40
	여	149	31	40	35	43
강 원	소계	162	30	34	36	62
	남	81	16	18	19	28
	여	81	14	16	17	34
충 북	소계	162	35	35	35	57
	남	80	18	18	18	26
	여	82	17	17	17	31
충 남	소계	174	34	38	36	66
	남	87	18	20	19	30
	여	87	16	18	17	36
전 북	소계	171	35	34	35	67
	남	85	19	18	18	30
	여	86	16	16	17	37
전 남	소계	173	30	33	35	75
	남	85	16	18	18	33
	여	88	14	15	17	42
경 북	소계	190	36	39	40	75
	남	94	19	21	21	33
	여	96	17	18	19	42
경 남	소계	198	39	46	45	68
	남	98	21	24	23	30
	여	100	18	22	22	38
제 주	소계	129	26	30	29	44
	남	63	13	15	15	20
	여	66	13	15	14	24

II.

표본추출사례로서 모집단을 추정할 때 이론적으로 가질 수 있는 표본 오차(Sampling Error) 공식은 다음과 같다.

$$SE = \pm 1.96 \sqrt{\frac{P(100 - P)}{N}}$$

P : The Observed Percentage
N : The Sample Size

표본의 크기별 표본 오차 예시는 다음의 【표-6】 과 같고, 본 조사의 경우 표본 크기가 3,007이므로 최대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8% 이내이다.

【 -6】

(95% 신뢰수준)

Observed Percentage	Sample Size				
	500	1000	2,000	3,000	3,007
	± %	± %	± %	± %	± %
50	4.4	3.1	2.2	1.8	1.8
40 or 60	4.3	3.0	2.1	1.8	1.8
30 or 70	4.0	2.8	2.0	1.6	1.6
20 or 80	3.5	2.5	1.8	1.4	1.4
10 or 90	2.6	1.9	1.3	1.1	1.1

본조사의 설문지에서는 설문문항별 교차분석을 위한 기본적인 독립 변수로서 응답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으로 인구학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성·연령·거주지역·지역규모별 항목, 사회경제적 특성으로 분류되는 학력·직업·가족의 월평균 총수입·계층·이념성향·

종교 등을 설정하였다. 본 조사에 임한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의 【표-7】 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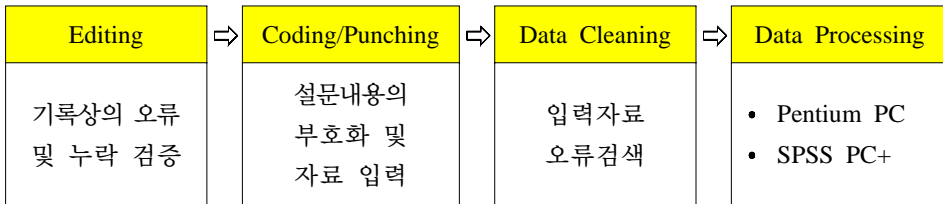
【 -7】

		%
■ 전 체 ■	(3007)	100.0
▣ 성 별 ▣		
남 자	(1485)	49.4
여 자	(1522)	50.6
▣ 연 령 별 ▣		
19 ~ 29 세	(632)	21.0
30 ~ 39 세	(690)	22.9
40 ~ 49 세	(679)	22.6
50세 이상	(1007)	33.5
▣ 학 령 별 ▣		
중졸 이하	(523)	17.4
고 졸	(1522)	50.6
대재 이상	(962)	32.0
▣ 직 업 별 ▣		
농/수/축산업	(108)	3.6
자 영 업	(719)	23.9
블루 칼라	(549)	18.3
화이트칼라	(647)	21.5
전업 주부	(597)	19.9
학 생	(245)	8.2
무직 / 기타	(142)	4.7
▣ 혼인상태별 ▣		
결 혼	(2224)	74.0
이혼/별거/사별	(85)	2.8
미 혼	(698)	23.2
▣ 총 수입 별 ▣		
199만원 이하	(701)	23.3

II.

		%
200 ~ 299만원	(910)	30.3
300 ~ 399만원	(776)	25.8
400만원 이상	(592)	19.7
모름 / 무응답	(28)	.9
▣ 지역별 ▣		
서울	(642)	21.3
인천 / 경기	(818)	27.2
강원	(93)	3.1
대전 / 충청	(302)	10.0
광주 / 전라	(316)	10.5
대구 / 경북	(319)	10.6
부산 / 울산 / 경남	(484)	16.1
제주	(33)	1.1
▣ 지역크기별 ▣		
대도시	(1415)	47.0
중·소도시	(1260)	41.9
읍 / 면	(333)	11.1
▣ 계층별 ▣		
하층	(1339)	44.5
중간층	(1431)	47.6
상층	(237)	7.9
▣ 이념성향별 ▣		
진보	(877)	29.2
중도	(1378)	45.8
보수	(752)	25.0
▣ 종교별 ▣		
불교	(788)	26.2
개신교	(687)	22.8
가톨릭	(277)	9.2
기타	(21)	.7
없다	(1234)	41.0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IBM 호환 Pentium PC를 사용하여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프로그램으로 전산처리하였다.¹¹⁾



(2)

일반적으로 ‘범의식조사’는 설문조사의 방법으로 수집된 계량적 데이터를 분석하여 범의식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규범과 의식의 영역을 수치화 및 통계화의 과정을 거쳐 사실과 현실의 지표를 마련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특히 법이라는 가치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범의식 설문조사의 특성상 완전한 가치중립적인 조직화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폐쇄형 질문’(closed question)방식의 사용을 지양하여야 하지만, 코딩의 자동화 없이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조사방법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조사방법이 부분적인 편차를 보일 수는 있지만, 연구의 적합성마저 상실시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¹²⁾

이와 같은 한계를 설문조사가 갖는 내재적 한계라고 볼 수 있다면, 이러한 내재적 한계 외에 외재적 한계로서 조사기간의 선정과 관련하여 언론동향에 따른 여론변화가 응답자의 반응에 주는 영향을 들 수

11) 통계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였다.

12)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범의식조사연구, 28쪽.

II.

있다. 설문조사기간 전 또는 조사기간 중에 국민의 법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언론재단이 제공하는 언론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¹³⁾ 2008년 4월 10일부터 6월 10일까지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한겨레신문·한국일보 등 8대 일간지의 보도내용을 톱기사(제1면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 내용은 【표-8】 과 같다.

【 -8】

	(4 10 ~4 29)	(4 30 ~5 30)	5 31
정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미 ‘핵 신고’ 잠정 합의(4.9) -4·9총선 실시(~4·9~) -북 핵신고서 제출(4.16) -공기업 사장·기관장 사표 제출 강요(4.11~) -공기업 민영화 추진 (4.14~) -비례대표 공천헌금 의혹 수사(4.16~) -북 핵신고서 제출 가능성(4.16) -지역균형발전 전면 수정 착수(4.16) -뉴타운 공약(空約) 수사(4.17) -혁신도시 대폭 수정, 개선방안 마련(4. 15~ 4.18) -삼성특검 수사발표(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무원 연내 1만 명 감원 추진(5.2) -북, 영변 원전 가동 자료 미국에 제공(5.2)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등(5.3~) -공무원연금 개편 계획 (5.2) -공공기관 지방이전 재검토(5.5) -대운하 국책사업단 부활(5.19) -북 경비정 서해 NLL 침범(5.22) -교육과학기술부 간부 세금으로 모교 지원 (5.22~27) -정운천 농림수산물식품부 장관 해임안 부결 (5.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6·4 재보궐선거 및 여당참패(6.4~) -제18대 국회 개원 및 파행(6.5) -옥수수 5만톤 대북지원(6.5) -청와대실장·수석 전원 사표(6.7) -육류수입업체 ‘쇠고기 자율규제’발표 추진(6.7) -청와대·내각 교체(6.20)

13) <http://www.kinds.or.kr>.

	(4 10 ~4 29)	(4 30 ~5 30)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미 쇠고기협상 타결(4.18) -주한미군 감축계획 중단(4.16) -한·미 전략 동맹 구축 합의(4.21) -박미석 사회정책수석 영종도 땅 투기 의혹 제기 및 사의(4.24~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진·창조한국당 연대 제3의 교섭단체 구성(5.24) -촛불집회 참석자 연행 등(5.26~) -촛불시위 전국 확산(5.28~) -미쇠고기 수입 정부 '고시'발표(5.30) 	
경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태그플레이션 공포 확산(4.12) -정몽구 회장 형량 파기 환송 판결(4.12) -이건희 삼성 회장 조세포탈 혐의 등 기소(4.18~) -삼성 경영채신안 발표(4.23) -무역수지 5개월째 적자(4.28) -정부 성장목표 수정(4.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바구니 물가 폭등(5.2~) -환율 급등(5.10~) -유가 폭등(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시지가 전국평균 10.1% 상승(5.31) -화물연대 총파업 결의 및 파업 강행 등(6.10~)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전국 확산 조짐(4.14~) -태안군 검은띠 2차 습격(4.15) -이랜드·뉴코아 파업 300일(4.17) -식품위해사범 처벌 강화(4.18) -청와대 해킹(4.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부문 신규예산 억제(4.30) -대구 초등학교 집단 성폭력 사건(4.30~) -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공론화(5.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명단 인터넷 공개 논의(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혼숙려기간제도 도입 등 개정민법 시행(6.22)

II.

	(4 10 ~4 29)	(4 30 ~5 30)	5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션, 하나로텔레콤 등 개인정보 해킹(4.23~) -성폭력범죄 처벌강화 및 피해자 보호법(일명 ‘해진예슬법’) 제정 추진(4.25) -친일행위 인사 명단 확정 발표(4.29) -태안 기름 유출 사고 (2007.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GMO(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5.1) -국내 첫 존엄사 소송 제기(5.10) -운전면허 취소·정지자 구제(5.26) -농식품안전협의회 구성(5.30) 	
문 화 · 유 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우주 시대 개막 (4.9~) -학교자율화 3단계 계획 발표(중고우열반·0교시 수업·학원의 방과후 학교 운영 허용) (4.16) -학교자율화 불허(4.18) 		

제2장 법의식의 개념 정의 및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

I.

1.

법의식조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가오는 문제는 과연 법의식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이다. 이는 법의식의 개념화 문제인데, ‘법’개념¹⁴⁾은 말할 것도 없지만,¹⁵⁾ ‘의식’이라는 것도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법의식이라는 개념을 일반적 수준에서 정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¹⁶⁾ 법의식이라는 용어의 사전적 정의는 “법에 대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규범의식 또는 사회의식”이다.¹⁷⁾ 그러나 이러한 사전상의 용어 정의로는 법의식이 내포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다. 또한 법의식이라는 개념은 이 용어 자체가 지니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와 유사한 법감정, 법관념, 법지식, 법문화 등의 개념과의 관계에서도 명확한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다.¹⁸⁾

14) 그동안 법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으나, 어느 누구도 보편적인 법개념에 도달하지 못했다. 따라서 여기서도 새삼스럽게 법개념을 정의하지 않는다.

15) 법의식조사를 수행할 때 조사자가 염두에 둔 법과 응답자가 생각하는 법은 표현은 같지만 서로 생각하는 바가 다를 수 있는데, 법에 대한 의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뜻의 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도현 외, 한국경제선진화와 법치, 백산서당, 2004, 113쪽.

16) 철학에서 ‘의식(Bewußtsein)’의 개념은 무언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Vorstellen)을 의미한다. 그 무언가는 생각 또는 표상(Vorstellung)의 대상이다. 대상을 생각하는 자는 나이다. 나와 대상은 표상의 주체와 객체로서 대립한다. E.-J. Lampe (Hrsg.), Zur Entwicklung von Rechtsbewußtsein, Frankfurt am Main, 1997, S. 8. 의식은 정신작용의 아주 특정한 순간이나 부분만을 가리키며, 일상적인 사고의 구조라기보다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지는 일종의 ‘각성’과 같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 이와 같이 특정 상황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현상으로서 ‘의식’ 개념을 통해 법의식을 개념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곽한영, 법의식과 법교육 - 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 한국학술정보원, 2007, 75~76쪽 참조.

17) 국어국문학회 감수, 새로 나온 국어대사전, 민중서관, 2001.

18) 이러한 상황은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인다. 즉, 일본에서도 ‘법의식’이라

하지만 국민법의식조사를 위해서는 법의식의 개념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정립하거나 또는 적어도 그 개념의 범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먼저 법의식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법의식 개념의 보다 명확한 이해 및 범위확정을 위해서 법의식 개념과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는 법감정, 법지식, 법문화의 개념 및 법의식과 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의 법의식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한다.

2.

(1) 1

법의식이라는 개념은 학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리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다. 그 하나의 견해에 따르면, 법의식은 특정한 법규범이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식은 “법이란 타당한 법에 대한 견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법규범의 내적 동의와 결부되어 있는 이와 같은 소위 이상적 법의식(ideales Rechtsbewußtsein)만을 법의식으로 다룬다. 이에 상응하여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으로서 이상적 법감정(ideales Rechtsgefühl)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법이상에 대한 지향, 즉 법양심을 말한다.

는 용어는 그 연구의 연혁적 차원에 비추어 볼 때, 적어도 법학연구에서는 도처에서 출현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른바 ‘일상어화’ 되어 버려 오히려 그 어의에 관한 충분한 검토나 이론모델/계측모델의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경험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고 지적되고 있다. 다만, 도처에 출현하는 것만으로 일상어화 되는 것은 아닌데, 예컨대, 법해석학에서의 ‘권리/의무’, ‘책임’ 등의 용어는 그야말로 도처에 출현하지만, 그 개념에 관하여 반복하여 이론적인 검토가 행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법의식이라는 용어의 경우에는 경험적 연구를 함에 있어 완전하게 조작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어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한다. 和田仁孝 外, 法社會學の可能性, 法律文化社, 2004, 101, 120頁.

또한 법의식의 인정은 단지 경험과학적으로만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i) 민주사회에서는 올바른 법에 대한 여론 조성이 법생활의 조건이며, ii) 형성된 법여론은 입법과 사법의 통제능력에 대하여 한계를 설정한다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¹⁹⁾ 즉, “어느 정도 입법이 공공의 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얼마나 입법이 자신의 유효성을 위하여 거기에 적응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법정책이 고려하고 전제해야 할 일이다”²⁰⁾는 것이다. 법적용 대상자의 법규범에 부합하는 법의식 및 정당한 법으로서의 규범의 내적 승인에 대하여 배려하는 것도 또한 법정책적 과제이다.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에는 법적용대상자는 되도록이면 규범을 준수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의 유효성은 법의식에 의존하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견해는 법의식의 개념을 ‘법의 유효성’의 조건으로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법의식이 반드시 ‘법의 유효성’의 확보만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²¹⁾

(2) 2

두 번째 견해는 법의식은 “무엇이 법이고, 법이어야 하고, 법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는가와 관련된 입장과 행동양식”을 말하며, 이 경우 법현상 중 인지적 요소가 지배할 경우에는 법의식,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의 뒷전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법감정이라고 보는 견해이다.²²⁾ 이 견해는 법의식이라는 용어를 주로 태도 개념의 요소 중 정서적 차

19) M. Rehbinder, 이영희·최종고 역, 법사회학, 1984, 170쪽 이하 참조.

20) U. Matz, Rechtsgefühl und objektive Werte, 1966, S. 411.

21) 황승흠, 법의식조사의 법사회학 : 방법론 모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참조.

22) T. Würtenberger, Schwankungen und Wandlungen im Rechtsbewußtsein der Bevölkerung, NJW 1986, 2281.

원에 국한해서 사용한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3) 3

세 번째 견해는 법의식의 개념을 논의할 때, 먼저 구체적인 ‘현실의 법’과 추상적인 ‘관념상으로서의 법’을 구별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현실의 법’은 특정 구체적인 법체계, 법규범, 법적 기관을 가리키고, 그것은 또한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사람들이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을 자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의 ‘법 지식’, 둘째, 구체적인 상황에서 법이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사람들이 품는 ‘법의견’, 셋째, 법에 대하여 사람이 갖는 호의·찬부·존중·경시 등의 ‘법태도’이다.²³⁾ 이와 같이 법에 대한 지식, 의견, 태도를 총칭하여 ‘법의식’이라 부르고, 이에 대해 관념상으로서의 법에 대한 의식을 ‘법관념’이라고 하여 법의식과 법관념을 구별한다. 말하자면,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의식의 배후에 존재하는 사회 일반의 법에 대한 지배적 관념을 ‘법관념’이라는 별개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견해는 스스로 법의식의 의미를 명확히 인식, 표현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²⁴⁾

(4) 4

네 번째 견해는 법의식을 “사회공동체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또는 과정)²⁵⁾에 대하여 가지는 행태·가치판단 등의 심리

23) 六本佳平, 法社會學, 有斐閣, 1986, 189-231頁.

24) 양 건, 한국과 일본 간의 비교법문화론을 위한 서설 : 함병춘과 川島武宜를 넘어서,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99쪽.

25) 법에 의한 사회통제(법적 사회통제)라는 것은 적어도 현대의 문명사회에서의 문제관심과의 관련에서는 정치권력이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을 미치게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상되고 있는 일정한 구속에 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라는 것, 정치적·사회적으로 요청되고 있다는 것, 특히 한정적인 의미에서는 위의 요청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 사회적 메카니즘으로서 국민에 대한 강제력의 발동은 일정한 한정된 조건을 구

적 상태”로 정의한다.²⁶⁾ 이 견해에 의하면, “사회통제수단 내지는 제도로서의 법은 사회구성원의 행동(작위·부작위 포함)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틀림이 없고, 그렇다면 사회구성원은 이러한 법이라는 하나의 사회제도에 대하여 일정한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심리상태란 반드시 의식적인 것뿐 아니라, 무의식적인 것도 포함하여야 할 것인데, 왜냐하면 사회구성원이 법에 관계되는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에는 후자가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크고 더 자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의식은 법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의식뿐 아니라, 무의식적 심리상태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한다.²⁷⁾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법은 좁은 의미의 법령, 즉 행정부·입법부 또는 사법부가 정립하여 집행·적용하는 법률·명령·판례 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법령이 현실적으로 행하는 기능과 관계가 있는 사회구성원의 행동결정의 요인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²⁸⁾ 따라서 법의식에 관련된 법이라는 개념 속에는 형식적인 법령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의식을 포함시키는데, 왜냐하면 사회통제와 관련하여 이들의 행위결정의 요인으로서 분쟁해결에 관한 이들의 의식이 법의 현실적인 기능과 관련을 가지는 사회적 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작용하는 의식과 같기 때문이다.²⁹⁾

법의식을 이와 같이 이해하면, 법의식은 다음의 세 가지 측면, 즉 법적 인식, 법적 가치판단 및 법감정을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비한 자에 의한 결정재판에 기하는 경우에만 사회적으로 허용된다, 즉 정당시되고 있다 라는 것이다. 최 식, 한국인의 권리 및 법의식, 성대논문집 제17집, 1972, 120쪽.

26) 최 식, 앞의 논문, 119쪽 이하;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권, 연세대학교, 1982, 354쪽 이하;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사상과 정책, 법문사, 1989, 82쪽 이하;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 岩波新書, 2005, 7頁 以下 參照.

27) 양승두, 앞의 논문, 354쪽.

28) 양승두, 앞의 논문, 355쪽.

29) 양승두, 앞의 논문, 355쪽.

하에서는 이들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법적 인식은 법규범·법제도에 관한 지식을 말하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법규범·법제도를 행위결정요인으로서의 좌표(frame of reference)로서 인식하는 것도 포함한다. 바꾸어 말하면 일정한 법령의 조문에 관하여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계약불이행은 손해배상의 원인이기 때문이 계약은 이행하여야 한다는 행위결정의 좌표로서 불법행위법제도를 인식하는 것을 포함한다.³⁰⁾

둘째, 법적 가치판단은 “법규범 내지는 법제도에 관하여 내리는 일정한 가치판단과 이러한 가치판단을 내리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법적 가치판단은 합리적인 사유활동으로서 이를테면, 현행 형법상의 간통처벌조항에 대하여 악법이라든지 또는 필수불가결한 법조항이라든지 하는 판단작용과 이 판단의 기준을 말한다.³¹⁾

셋째, 법감정은 법률의 규정에 관한 지식이나 가치판단 외에 “법적 통제에 관하여 정부나 법원이 하는 것에 대하여 논리를 초월한 감정·증오·적의를 가지거나 또는 호감을 가지거나 하는 것과 같은 감정상의 태도”를 말한다.³²⁾ 즉 “법적 인식과 법적 가치판단과는 달리 법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혐오감 등과 같은 비합리적 또는 비논리적 성격을 지닌 감정”을 말한다. 이 견해에 의하면, 이러한 감정도 법에 관한 행위결정의 요인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다만, 이 견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떠한 구조를 갖고, 어떻게 측정하는가가 명확하지 않다. 둘

30) 양승두, 앞의 논문, 355쪽. 법적 인식의 경우에는 어떤 법률상의 제도(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의 보호)를 알고 있는가 또는 알지 못하고 있는가 뿐 아니라, 이들을 어떠한 판단의 틀(Frame of reference)에 관련지워서 알고 있는가 라는 것도 문제된다고 한 川島武宜, 前掲書, 7頁도 參照.

31) 양승두, 앞의 논문, 355쪽.

32) 최 식, 앞의 논문, 121쪽.

째, 의식이라는 용어는 심리학에서는 널리 각성수준을 넘어 인간의 지식이나 사고의 차원에 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사람들의 인식활동 모두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에 대하여 태도라는 용어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가치부여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의식의 한 측면이지만, 그것은 의식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의식과 태도는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비판적 입장은 이 견해가 말하는 ‘법의식’ 중에서 무의식을 떼어내고, 의식이라는 단어를 심리학의 용어법에 합치시키면, 이 견해가 말하는 ‘법의식’은 법과 법체계에 대한 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³³⁾

(5) 5

다섯 번째 견해는 위에서 살펴본 견해들보다 더 넓게는 “개별 주체의 법, 규범, 도덕, 질서, 정의, 권리, 자유 등 구체적 삶과 사회관계를 엮어 내는 가치들에 대한 총체적 의식 및 태도”³⁴⁾로서 “현저하게 법적인 현상에 대한 인지적(cognitive), 정서적(affective) 및 행동적(behavioral) 심리상황을 총칭하는 개념”으로 정의하는 견해이다.³⁵⁾

이 견해는 법의식을 법태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한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법의식의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차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인지적 차원은 ‘법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위자들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행동을 할 때 그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는가에 대한 어느 정도의 구체적인 지식이 필

33)和田仁孝編, 法社會學, 法律文化社, 2006, 93頁 以下 參照.

34) 김은경, 준법의식 현황과 과제,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준법운동의 전개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0. 6. 2, 28쪽.

35)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39쪽 이하.

요하다고 한다. 따라서 행위자들이 법의 도덕적·정치적·사회적 기초나 법의 사회적 기능·법적 절차 등에 관한 어느 정도의 지식 없이는 법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둘째, 정서적 차원은 법적 동일시감을 말하는데, 행위자가 법을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가까운 것으로 느끼는 정도, 법의 타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정서적 반응, 권리가 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과 이에 대한 자신이 느끼는 의무감 등이 행위자의 법행동 유형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셋째, 행동적 차원은 법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행위자가 구체적인 사회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보호받기 위해서 법을 사용할 의사와 자신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를 말한다. 법을 사용할 의사와 자신감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위적 차원에서 건전한 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법태도의 개념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법에 대한 의식이나 자세와 같이 비교적 경계가 명확하고 구성요소와 맥락이 분명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와 같은 계량적 측정방법과 용이하게 결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법태도를 중심으로 법의식을 파악하는 경우, “어떤 대상을 받아들이는 심리적 방식”이라는 복합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인지의 차원을 지식의 차원으로 단순화시켜 접근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 또한 구체적이고 제한적인 수준에서 객관적이고 생산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는 있으나, 이를 토대로 일반적 수준의 논의로 끌어올리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³⁶⁾

36) 황승흠, 앞의 논문 참조.

3.

(1)

법감정(Rechtsgefühl)이란 “무엇이 법인가, 그리고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 인간행태의 근본가치로서 법적인 것에 대한 감정”을 말한다.³⁷⁾ 달리 정의하면 법감정은 “법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직관적인 가치감정” 또는 “인간이 법적인 문제에 접한 경우에 직관적인 결정을 야기하는 법적 근본감정”이라 할 수 있다.³⁸⁾ 즉 법감정은 법적 인식과 법적 가치판단과는 달리 법에 대하여 가지는 호감·혐오감 등과 같은 비합리적 또는 비논리적 성격을 지닌 감정을 말한다.

법감정은 다시, i) 현재 무엇이 법인가에 대한 감정[실증적 법감정(positives Rechtsgefühl)], ii) 법이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감정[이상적 법감정(ideales Rechtsgefühl)], iii) 법에 일치하는 것만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감정[보편적 법감정(allgemeines Rechtsgefühl)]으로 구분할 수 있고,³⁹⁾ 그 밖에 우리나라에서는 법집행상의 불평등이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법에 대한 저항감 내지 불신감을 야기하는 점에 비추어, iv) 법은 만인에게 공평하게 집행되어야 한다는 감정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이러한 법감정도 법에 관한 행위결정의 요인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테면, “재판질 10년에 기둥뿌리 빠진다”라든가, “변호사

37) H. Henkel, Rechtsphilosophie, 2. Aufl, 1977, S. 534.

38) 임 응,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제1권, 1998, 87쪽.

39) E. Riezler, Das Rechtsgefühl, 1. Aufl., 1921, S. 2; 임응, 앞의 논문, 88쪽.

40) 법감정과 비슷하지만 구별하여야 할 개념으로 정의감정이 있다. 법감정의 종류를 ii) 정의감정, 권리감정, 의무감정, 평등감정 등으로 나누는 경우, 정의감정은 법감정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오로지 정의의 문제에 직면해서 작용하는 감정이고, 법, 특히 현행법과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 그러나 정의감정은 이상적 법감정과는 상당히 공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임 응, 앞의 논문, 88쪽.

와 의사는 허가받은 도둑놈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 해결을 기피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⁴¹⁾

또한 법감정은 입법과 법발견(Rechtsfindung)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⁴²⁾ 입법과 법발견은 올바른 법의 정립과 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법감정이야말로 무엇이 법인가, 또 무엇이 법이어야 하는가 라는 법과 정의의 문제에 대하여 직관적이고도 핵심적인 대답을 주기 때문이다.⁴³⁾

법감정은 상황에 따라 과민반응을 보일 수 있으므로, 법감정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는 항상 이성적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 법감정은 이성적인 논구작업과 결합함으로써 주관적 판단에 빠질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된다.⁴⁴⁾ 이처럼 법감정은 주관적이며, 항상 오류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화하고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⁴⁵⁾

법관은(특히 유럽대륙법계에서는)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함을 오히려 법감정에만 의존하여 주장할 수는 없고, 판결이유에서 합리적인 논거를 들어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감정이 법의

41) 양승두, 앞의 논문, 355쪽.

42) 법발견에서 법감정이 결정적 기능을 하는 법계는 영미법계인데, 영국의 보통법(common law)과 형평법(equity)이 특히 그러하다. 무엇보다도 형평법은 형평과 정의, 양심에 따른 재판을 의미하는 만큼, 법감정에 전적으로 지배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임 응, 앞의 논문, 100쪽.

43) 이와 관련하여 1995년 형법개정에서는 법감정이 입법에 영향을 미친 흥미로운 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데, i) 형법개정을 위하여 1985년에 설치된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원회는 애당초 이성적 고려하여 간통죄의 처벌규정(형법 제241조)을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여론조사 결과 우리 국민의 지배적 법감정은 간통죄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득이 간통죄를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고, ii)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절도죄의 성립이 부정되는 이른바 ‘사용절도’와 관련하여 현대생활에서 자동차에 대한 사용절도가 빈번하고 법감정상의 당벌성을 고려하여 1995년 형법개정에서는 자동차 등의 교통기관에 대해서 만큼은 특별히 불법사용죄(제331조의2)가 신설되었다. 임 응, 앞의 논문, 99-100쪽.

44) 임 응, 앞의 논문, 101쪽.

45) 임 응, 앞의 논문, 89쪽.

흡결시에 충전기능을 한다고 하더라도 법감정 그 자체가 독자적인 법원(法源)이 될 수 없고, 법발견을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⁴⁶⁾

법적용 단계에서 법감정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로는 불확정개념의 해석과 초실정적 법원칙의 발견에 있다. 헌법상으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제10조), 공공복리(제23조 제2항, 제37조 제2항), 민법상으로는 선량한 풍속(제103조), 형법상으로는 사회상규(제20조), 음란(제243조-제245조) 등과 같은 대표적 불확정개념의 해석에서 살아 있는 법으로서 적용되도록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법감정이다.⁴⁷⁾

초실정법적 법원칙의 발견에서도 법감정의 꿈틀거림이 단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그 한 가지 예로서 형법상 과실범에서 주의의무의 범위를 한정해 주는 ‘신뢰의 원칙’을 들 수 있다. 법원에 의하여 신뢰의 원칙이 도입된 것은 이론적·학문적 사고의 결과가 아니라 현대생활에서 원활한 교통의 필요성과 상대방의 과실이 있을 경우까지도 고려해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되고 주의의무의 적절한 분배가 타당하다는 법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초실정적 법원칙은 처음에는 개인의 법감정에 의하여 발견된다고 하더라도 법공동체의 합의를 얻어 보편적 법감정에 도달한 경우에 비로소 하나의 법원칙으로서 정착될 것이다. 법흡결시에도 법감정에 의하여 인식되 초실정적 법원칙이 흡결을 충전하여 줄 수 있다.⁴⁸⁾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의식과 그와 연관성을 갖는 법감정이라는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다만, 법의식과 법감정이라는 두 개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관련되고 있다.⁴⁹⁾

46) 임 응, 앞의 논문, 101쪽.

47) 임 응, 앞의 논문, 101쪽.

48) 임 응, 앞의 논문, 101-102쪽.

49) M. Rehbinder/이영희·최종고 역, 앞의 책, 171쪽 이하.

첫째, 정신적 과정(psychischer Vorgang)의 대상은 실정법의 개별규범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식은 법이란 법확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다. 여기서 법의식이라는 것은 소위 실정법의식(positives Rechtsbewußtsein)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실정법감정(positives Rechtsgefühl), 즉 법적 직관(rechtliche Intuition)이 존재한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를 ‘Judiz’라 한다.

둘째, 정신적 과정의 대상은 특정한 법규범이 어떻게 보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념일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의식은 법이란 타당한 법에 대한 견해라고 하는 의식이다.

셋째,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 즉 소위 일반적 법의식은 법질서에 대한 존경, 즉 법정신(Rechtsethos)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감정으로서는 일반적인 법감정이 존재한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법을 준수하고 옹호하게 하는 윤리적 의무감, 즉 법성향(Rechtsgesinnung) 또는 법충성(Rechtstreue)을 말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법의 심리적 현상형태에서 인지적 요소(kognitives Element)가 지배할 경우에는 법의식이라 하고, 인지적 요소가 정서적 요소(emotionales Element)의 뒷전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법감정이라고 하는 구별이 점차 늘고 있다. 이러한 구분에 의하면, 법의식에서는 합리적 정신현상이 우세하고, 법감정의 경우에는 비합리적 정신현상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다.⁵⁰⁾

즉, i) 법감정은 법률문제에 접하여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지만, 법의식은 법률문제에 접하여 ‘일정한 사고와 성찰을 거쳐’ 의식된 심리작용, 심지어는 계획된 목적을 향하여 조종하는 정신작용까지 포괄한다.

ii) 법감정은 법률문제를 전체로서 파악하기 때문에 그 반응은 합법인가 불법인가 또는 시비를 가리는 식으로 비교적 단순한 결론에

50) M. Rehbinder/이영희·최종고 역, 앞의 책, 171쪽.

도달하지만, 법의식은 숙고하는 인간으로서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그 내용은 좀 더 분화되고 명료해진다.

iii) 법감정의 내용이 전반적·추상적·단선적이라면, 법의식의 내용은 특수적·구체적·복선적이다. 법감정은 법의식에 앞서는 일차적인 심리적 요소로서, 법감정이 의식화되어 사유의 명료성을 얻었을 때 법의식이 된다는 점에서 법의식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다.⁵¹⁾

물론 법의식과 법감정을 구별하는 학자도 많으며,⁵²⁾ 또한 이러한 주장에 일리가 있음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법의식을 광의로 이해하여 법감정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법감정을 법의식을 구성하는 요소, 법의식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한 추동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⁵³⁾

(2)

법지식(Rechtskenntnis)은 특정한 법규범 내용의 정신적 현실화(mentale Realisation)이고, 연령, 성, 거주지, 교육 정도 그리고 사회 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⁵⁴⁾ 법지식은 법규범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기본적 조건을 이루므로, 법지식의 사회적 보편화는 준법생활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법규정에 대한 낮은 인식상태는 비법률적 사회질서의 약화로 인하여 법의 유효성에 위협적이다. 오늘날 법지식은 과거보다 훨씬 더 사회에서의 법규범의 효율적 기능을 위한 기본

51) 임 응, 앞의 논문, 1998, 89쪽.

52) 심재우, 박병호 교수의 전통적 법, 법의식과 현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2; 大橋智補, 法感情について, 法哲學講座, 第6・7合併卷, 有斐閣, 109頁 以下 參照..

53) 같은 견해 大橋智補, 前掲論文, 333頁. 여기서는 법의식과 법감정의 개념 구별이 곤란함을 인정하면서도 법감정을 법의식의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즉 법의식을 매우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고 법적 인식·사고·이론·의욕·감정 등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54) M. Rehbinder/이영희·최종고 역, 앞의 책, 1984, 170쪽.

적 조건을 이룬다. 하지만 법지식만으로는 법규범의 유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 법정보수준을 가능한 한 높이기 위하여 모든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면, 그만큼 규범내용도 내면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노력도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규범수령자가 그 규범을 준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⁵⁵⁾

(3)

‘법문화’(legal culture, Rechtskultur)라는 말은 서양에서는 영미법학에서 보다 대륙법학에서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⁵⁶⁾ 대륙법학에서 법문화라는 말은 “법·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태도, 신조, 가치관, 이상, 기대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⁵⁷⁾ 법문화의 개념을 이와 같이 정의하면 언제·왜·어디서 사람들이 법·법제도 혹은 법적 과정을 사용하는가를 결정하는 것이 법문화라는 것, 즉 그것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법 이외의 제도를 사용하는가 혹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환언하면 문화적 요소란 정적인 구조와 정적인 규범의 집합체를 살아 있는 법의 체계에 전화하는 본질적 성분이다.⁵⁸⁾ 법에 대한 태도, 가치관, 의견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지만, 한 국가 또는 한 집단 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법문화를 발견할 수 있다.⁵⁹⁾

그러나 한 시대에 있어서도 법문화를 규정짓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며, 그에 따라 법문화의 유형도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가나

55) M. Rehbinder/이영희·최종고 역, 앞의 책, 170쪽.

56) F. Wieacker, Grundlagen der Rechtskultur, Plenaritzungsreferate und Korreferate der 11. Weltkongress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Helsinki, 1982, S. 159-185.

57) 로렌스 M. 프리드만/박남규 역, 법과 사회, 법문사, 1990, 125쪽. 이와는 달리 영미법, 특히 미국법에서는 법문화의 개념을 법적 현실주의의 발달과 법에 대한 미시적 및 거시적 사회학을 뜻한다.

58) 로렌스 M. 프리드만/박남규 역, 앞의 책, 법문사, 1990, 125쪽.

59) 최종고, 한국법문화의 근대화과정, 석당논총(石堂論叢) 제9집, 1984, 277쪽.

종족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예컨대, 도시의 법문화와 농촌의 법문화) 또는 물질적 생활정도에 따라(예컨대, 노동자의 법문화와 경영자의 법문화) 구분될 것이다. 특히 법조가 고도로 전문화하는 근대 이후에는 법조 내부의 법문화(internal legal culture)와 일반인들의 법문화(lay legal culture)의 구분이 뜻을 지니게 된다.⁶⁰⁾ 법조내부의 법문화는 상대적으로 강한 통일성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하여 일반인의 법문화는 통일성이 희박하여 문화적 집단만큼의 다양한 법문화의 존재를 상정하여 볼 수 있다. 법조 내부의 법문화의 특성으로는 흔히 그 보수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그들의 특성은 법언어(Rechtssprache)에서도 잘 나타난다. 법언어의 기술적 특성은 법조인을 다른 일반인들과 분리시켜 그들을 동료로서 결속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법문체 역시 법조인을 묶어 주는 의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⁶¹⁾

다음으로 근대적 법문화와 전근대적 법문화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근대적 법문화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은 도구주의적 법률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근대적 법문화에서의 신적·초월적 법률관에서의와는 달리 여기서는 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로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고 변동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⁶²⁾ 근대적 법문화의 특징을 정당성(legitimacy)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여 합리성(Rationalität)을 근대적 법문화의 특징으로 지적한 사람은 막스 베버(Max Weber)이다. 그는 합리성도 실질적 합리성(materiale Rationalität)과 형식적 합리성(formale Rationalität) 내지 절차적 합리성(prozeßuale Rationalität)을 구별하고, 근대법이 되려면 후자의 형식적 합리성이 발달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법문화에 관한 종래의 논의의 주된 관심사는 사람들이 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법의 정당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

60) L. Friedmann, *Law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Prentice-Hall, 1977, p. 76.

61) 최종고, 앞의 논문, 276쪽.

62) L. Friedman, *op. cit.*, p. 78.

각하고 있는가, 어느 정도로 법을 존중하고 있는가, 분쟁을 법원에 의한 재판을 통해 해결하려는 성향을 어느 정도인가, 어떠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로 변호사나 그 밖의 법적 기관을 이용하는가, 법적 제재의 강도 및 형벌의 종류·형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법 이외의 어떠한 사회통제의 수단에 의거하고 있으며, 왜 그것에 의거하는가 등의 문제이다.⁶³⁾

법문화가 구체적인 현상으로 드러나는 것은 사회구성원들의 행태와 의식을 통해서 이며, 동시에 이러한 인적 요소들에 의해서 사회 특유의 법문화가 형성된다. 법문화의 영역은 다른 문화영역과 달리 인적 요소를 중심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시민대중의 문화(popular legal culture)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전문가들의 법문화(professional legal culture)이다. 한 사회 내에서 두 상이한 집단이 형성하는 법문화는 때로는 현격한 괴리를 형성하기도 하며, 서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한 집단의 문화는 다른 집단의 문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외관상으로는 두 집단의 법문화가 경계를 두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상호간에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간격이 클 때 법문화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⁶⁴⁾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법문화를 다루면서 주로 시민들의 법문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법문화의 부정적 현상을 진단할 때에도 시민들의 법행동이나 법의식이 전근대적이라든지 아니면 매우 소송지향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에 대한 해결책이나 대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리고 그 대안이나 해결책도 대체로 과도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식으로 제시되어 왔다.⁶⁵⁾

63) 양 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4, 250쪽.

64) 김정오, 법원의 법문화 : 법원의 이미지 Vs. 법원의 현실, 법과 사회 제21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1, 161-162쪽.

65) 김정오, 앞의 논문, 162쪽

이상에서 법문화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종래 법문화와 법의식의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었고, 실제로도 혼용되어서 사용되어 왔다. 특히 법의식을 법문화에 포함시켜서 이해하는 것이 일본과 한국 법사회학자들의 주된 견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양자를 동일시하는 입장에서는 굳이 양자를 구분한다면 법의식은 법문화라는 용어보다 법현상의 심리적 측면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구별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한다.⁶⁶⁾

하지만 이와 같이 문화라는 외재적 요인을 의식이라는 내재적 요인과 동일시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즉 전통적으로 심리학에서는 문화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요인의 하나로서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위치지움에 반하여, 의식은 내적인 요인으로서 개인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들의 의식이 사회로 확대되어 문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문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의식을 규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화는 어디까지나 외적 변수이고, 의식은 내적 변수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법문화를 법의식과 동일시 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법문화가 개인의 의식으로서 내재화된 것 또는 개인이 인지하는 법문화를 법의식으로 부를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은 개인의 인지 공간에 투영된 법문화이고, 법문화 그 자체는 아니라는 점⁶⁷⁾을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은 참고할 만한 것이다.

66) Th. Geiger, *Vorstudien zu einer Soziologie des Rechts*, 2. Aufl., 1970, S. 382 f.

67) 和田仁孝 編, 前掲書, 91-92頁.

4.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법의식(legal consciousness, Rechtsbewußtsein, conscience juridique)에 관한 개념은 용어 자체가 지니는 추상성으로 인하여 매우 다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유사개념인 법감정(legal feeling, Rechtsgefühl), 법문화(legal culture, Rechtskultur) 등과 구분지우려는 경향과 구분짓지 아니하려는 경향이 혼재되어 있다. 법이론상 법의식과 법감정·법관념·법문화를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의가 있고 또한 필요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양자의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며, 법의식의 순간순간마다 법감정이나 법관념, 법문화의 작용이 침투하므로 양자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⁶⁸⁾ 대체로 명확한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2008 국민법의식조사는 국민법의식의 변화양상을 과학적 조사와 분석을 통하여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국민들의 법의식 현주소를 파악하고, 미래의 입법과 법집행의 발전을 위해 시계열적으로 비교가능한 중요한 참고자료를 제공하며, 더 나아가 법생활의 예측가능성과 법집행의 공정성 도모, 선진법치국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식과 법감정 또는 법문화를 개념상 명확하게 구분지어 협의의 법의식 개념을 통하여 법의식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법의식의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 법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 경우 법의식은 개개인의 구체적인 법의 인지를 기초로 하여 실정법 및 일반적 법상황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계층상황에 대한 태도에까지 영

68) 서경림 외, 제주도민의 법의식,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12쪽.

향을 미치는 다양한 견해로 볼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법의식과 법문화는 서로 다른 차원의 것이라는 지적에 비추어, 양자를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나, 사람들의 법의식이 사회로 확대되어 법문화를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법문화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법의식을 규정할 수는 등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 따라서 법의식을 법문화의 한 구성요소로 보고자 한다. 다만, 이들 용어가 지니는 의미는 어느 정도의 뉘앙스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법의식이라는 말로 획일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⁶⁹⁾

69) 모든 개별적인 해당 법규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법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자료의 증가는 모든 규정을 다 파악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설령 모든 법규범의 개별 내용을 알게 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다수에 대해서는 - 예를 들면, 물권법이나 상속법의 경우 -, 그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아무런 입장을 취할 수 없게 된다. M. Rehbinder/이영희·최종고 역, 앞의 책, 174쪽 참조.

II.

한국인의 법의식조사는 1965년에 함병춘·양승두 교수가 행한 조사에 이어, 1972년에 사회학자 임희섭 교수가 행한 것, 1991년과 1994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전국 2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상대로 광범하게 조사한 것 등이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법의식조사를 1990년대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1. 1990

(1) 1960

함병춘 교수에 의해서 수행된 1963년과 1964년에 걸친 법의식조사 연구는 근대적 제도 하에서 전통적 인식과 서구적 제도의 상호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혼재’(mixed status) 상태로 결론을 내렸다.⁷⁰⁾

함병춘 교수는 한국인들은 소송을 기피하는 법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그 원인을 전통적인 소송의식에서 찾았다. 즉 한국인들은 분쟁에서 한쪽 당사자가 옳고 상대방이 그르다고 흑백으로 지적하는 것을 매우 싫어해 왔다고 하며,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방이 전적으로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은 ‘조화’(harmony)라는 중요한 가치평가와 맞지 않아서 훼손된 조화의 신속한 회복을 저해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소송을 기피한다고 분석하였다.⁷¹⁾

하지만 이와 같은 소송을 꺼리는 한국의 문화적 전통을 지적한 함병춘 교수의 견해에 대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반론이 제기되어 왔다. 즉 소송을 기피하는 한국인의 태도가 전통적인 비법적 분쟁해결

70) Hahm Pyung-choon, *Decision Process in Korea,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Seoul, Yeonsei University Press, 1986.

71) Hahm Pyung-choon, *op. cit.*, 95-96.

의 선호 때문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지나치게 피상적이고, 조사 당시의 낮은 산업화 수준에서 오는 여러 하위 사회체계의 미분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권위주의적 정권 하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 ‘선 성장, 후 분배’ 원칙 하의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오는 극심한 소득분배의 격차, 소수의 변호사들의 독점으로 인한 높은 소송비용 등과 같은 비문화적인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⁷²⁾ 즉, 1960~1970년대의 적은 소송건수는 소를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고 싶었던 많은 이들로 하여금 소송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오래 전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사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존재했다는 것이다.⁷³⁾

한편 전통사회의 소송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실증되고 있다.⁷⁴⁾

(2) 1970

임희섭 교수의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는 한국인들은 법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고 또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를 알아보는 데 그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 그 다음으로 한국인의 법의식이 과거에는 어떠한데, 지금은 어떻게 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알아보는 것을 그 두 번째 목적으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인의 법의식(법에 대한 태도)을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측면에서 i) 인지적 측면에서는 법의 도덕성, 정치성 못지 않게 사회성도 역시 중요시하고 있다는 점과 법의 형법적·징벌적 측면과 통제 기능을 법의 민법적·계약적 측면이나 사회개혁적 기능보다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점, ii) 정서적 측면에서는 법적 소외감이 상당히 높고, 법의 타당성·공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다는 점, iii) 행동적인

72) 양 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73-74쪽.

73) 임상혁, 앞의 논문, 157쪽.

74) 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경목, 앞의 논문; 김경숙, 앞의논문 등 참조.

측면에서는 법의 타당성에 대한 심한 회의로 인하여 법사용능력이 비교적 낮은 점 등에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⁷⁵⁾

그리고 위 연구는 법지식, 법동일시감, 법사용능력의 3변수를 조합하여 법행동유형을 준수형, 조종형, 신민형, 회피형 등 네 가지로 분류하여 각 유형에 속하는 개인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남자, 고소득층, 고등교육수혜계층, 청장년층의 인구는 주로 준수형과 조종형의 법행동유형을 취하고 있고, 반대로 여자, 저소득층, 저교육층, 노년층, 그리고 농민들은 신민형과 회피형의 법행동을 주로 선택하고 있음을 밝혔다.⁷⁶⁾

따라서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한국인의 법의식이 법의 도덕성과 정치성에의 강조로부터 사회성에의 강조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과 현재의 법적 타당성에 대한 심한 회의로 인하여 법으로부터의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행동에서의 준수형, 조종형, 신민형, 회피형 등이 광범하게 확산되어 있다는 점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⁷⁾

위 조사에서는 가령 법의 도덕성, 정치성, 사회성이 비슷하게 되어 있었고, 전국표본과 대학생표본과의 응답의 패턴을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법의 도덕적 기초를 강조하는 쪽에서 법의 사회적 기초를 강조하는 쪽으로 법의식이 변화하고 있고, 법의 형법적 측면에서 경제활동, 정치활동 등 여러 활동을 하는 하나의 질서로서 계약적, 사회개혁적 의미를 포함한 법개념으로 바뀌고 있다는 변화의 측면을 시사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전통적 법의식’이라는 용어를 별로 사용하지 않고, 실증주의적 관점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⁷⁸⁾ 위에서 알 수 있듯 법에 대한 태도를 인지적 측면, 정서적 측면, 행동적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

75) 임희섭, 앞의 논문, 54쪽.

76) 임희섭, 앞의 논문, 54쪽.

77) 임희섭, 앞의 논문, 54-55쪽.

78) 한도현 외, 앞의 책, 120쪽.

다. 하지만 법의식의 진화방향을 전제하고 일반인과 대학생의 의식차이를 설명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점에서 위의 연구도 ‘전통으로부터 근대로의 이행’이라는 틀 속에서 1960~1970년대 한국인의 법의식을 분석한 것으로 보인다.⁷⁹⁾

2. 1990

(1) 1990

한국법제연구원이 1991년에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연구에 의하면,⁸⁰⁾ 1980년대 후반 이후 우리 사회는 민주화의 전환지대에 들어섰고, 참여적 시민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유교중심적인 과거의 가치관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는 국민의 법의식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더 이상 유교적 전통을 한국인의 가치관으로 전제하고 국민의 법의식을 진단하는 것은 시대적 변화에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기존의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었고, 권리의식이 신장되었으며, 국민의 법인지욕구가 상승하였고, 과거의 소송기피문화도 사라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반하여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두드러졌으며, 법정립 및 집행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역시 심화되었다고 한다.

(2) 1990

한국법제연구원이 1994년에 실시한 국민법의식조사에 의하면,⁸¹⁾ 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에 상당한 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여기서 괄목할 만한 변화는 근대적 법의식이 크게 신장되었다는

79) 한도현 외, 앞의 책, 120쪽.

80) 박상철 외 2인,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81)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점이다. 1994년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오히려 권리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⁸²⁾

탈·위법행위에 대한 불용적 태도, 높은 고발정신,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감이 제고, 국가기관과의 일체감 형성 등의 측면에서 1991 국민 법의식조사의 경우에 비해서 법의식이 상당히 제고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다만, 국민 법의식의 면면에는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를 위태롭게 하는 요소들 역시 상존하고 있는데, 분쟁해결방법으로서 법의 선택이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의식의 확산이 아니라, 불명확하고 비타협적이며 막연한 이익요구까지 포함하는 권리주장인 경향이 강하다는 점과 사회지도층 인사나 고학력·고소득층에 법경시풍조가 존재하고 있고, 죄의식이 희박하다는 점, 입법과정에 대한 불신 등은 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높은 권리의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법을 알고자 하는 구체적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법의식의 특징이 건전한 규범문화와 질서의 형성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선 국민들이 법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됨으로써 법치주의 실현에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권리의식의 신장이 건전한 시민정신으로 이어질 때 사회의 탈법·위법행위에 대한 비판으로 집결되어 법치주의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준법의식의 결여와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은 국민 법의식 제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다분하며, 이러한 태도가 후기 산업사회의 부정적 측면인 법경시풍조와 기존제도 및 질서에 대한 부정 일변도 현상과 맞물릴 경우 사회혼란은 증폭되고 법치국가 실현은 요원해지고 말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⁸³⁾

82) 박상철 외 2인, 앞의 보고서, 1994.

83) 박상철 외 2인, 앞의 보고서, 13-19쪽 참조.

II.

이러한 진단과 함께 우리 국민들의 법에 대한 정서와 의식의 변화로 인하여 유사한 경제발전을 이룬 다른 동양사회, 특히 일본의 경우보다 우리 사회에서 분쟁으로 인한 법정소송의 잠재력이 훨씬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1960·70년대에 이루어진 법의식조사에서는 한국인의 법문화와 법의식을 ‘전통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한국 법률문화의 문제점을 전통적 법문화와 서구식 근대 법문화의 괴리라고 지적했다. 또한 1960·70년대 법의식 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점은 우리 국민들의 권리의식이나 근대적 법의식이 대단히 낮다는 것이었다.⁸⁴⁾

이상에서 살펴본 여러 법의식 실태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한국인의 ‘전근대적 법의식’의 특징으로는 i) 법의 도덕성·정치성과 형법적 징벌적 측면이 강조된다는 점, ii) 법의 공정성·타당성에 대한 회의로 말미암아 법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점, iii) 준법정신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iv) 권리의식이 희박하다는 점, v) 법의 타당성 내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회의로 인하여 재판을 경원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들에 의하면, 한국인은 “법적 권리의 존중과 의무의 성실한 이행에 관한 의식이 박약하거나, 법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제정한 것이거나, 법의 위반을 목격하고 이를 고발하는 것은 점잖은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는 등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84)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 1968;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 1975;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률연구 제2집, 연세대학교, 1982; 차용석 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에서 논의되어 온 한국인의 법의식 논의의 결론은 다음의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⁸⁵⁾

첫째, 한국인은 전통적으로 유교사상, 특히 주자학의 가르침에 강한 영향을 받아서 법보다는 예를 더욱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사실이다.

둘째, 우리나라의 법제도가 근대적인 법제도로 확립되는 시점이 일제의 우리나라 침략의 시점과 그 시기를 같이 하였고, 일제는 식민정책의 일환으로 우리나라 법제도를 정착시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처음부터 국가주의적·권위주의적·경찰국가적·억압적인 특징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은 일반적으로 법에 대하여 친숙한 감정을 가지지 못하거나 반항적이거나 또는 외포심을 가지고 있다.

셋째, 일제는 우리나라의 문화를 말살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바탕을 둔 민주적 법문화의 형성이 불가능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에 바탕을 둔 민주적 법 및 법제도의 형성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큰 흐름 속에서,

넷째, 군사정권이 손쉽게 탄생하였고 군사정권은 법을 단순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법은 사회적 정의의 실현보다는 통치자가 생각하는 국가목적, 이를 테면, 경제발전·산업화 등의 통치자의 의지실현의 수단으로 전락하였다는 사실 등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권리·의무의식이 박약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지 못하여 계약을 준수하려는 태도가 철저하지 못하고, 따라서 분쟁을 법원이나 그 밖의 공식적인 사법제도를 통하여 해결하려 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한다.⁸⁶⁾ 그리고 이렇게 한

85) 양승두, 한국의 법문화론, 고시연구, 1997. 7, 12-13쪽.

86) 박병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사회와 그 법에 관한 인식이 철저하지 못함으로 인한 문제점을 “역사적 사회와 법에 대한 무지·무관심은 역사상의 도그마에 못지않게 쉽사리 헤어نا지 못할 도그마의 올라미에 감겨들게 한다. 즉 실정법학에

국민의 법의식을 분석한 뒤 현 실정법제도의 합리적 운영은 한국인의 법감정에 합치하지 않기 때문에 지극히 어렵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였다.⁸⁷⁾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이러한 종래의 법의식론 내지 법문화론이 제시한 결론과는 괴리된 법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를 테면, 종래의 법의식론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리·의무의식이 강하지 않으며, 법원과 같은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관에 제소하여 그들의 분쟁을 해결할 것을 기피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오히려 권리의식이 지나칠 정도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⁸⁸⁾ 오히려 우리와 같은 전통적 법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일본의 경우⁸⁹⁾에 비하여 법원과 같은 공식적인 분쟁해결기구를 통하여 그들의 분쟁의 해결을 구하는 경향이 현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결국 종래의 법의식론 내지는 법문화론의 주장을 부정하는 현상을 노정하고 있다고 한다.⁹⁰⁾ 보다 진보적인 견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소송회피적 법문화(Streitvermeidungskultur)⁹¹⁾가

서는 서구에서의 역사적 발전과정의 공식이 그대로 타당하게 되며, 따라서 자기의 역사적 발전과정은 무(無)로 돌리거나 관심 밖에 두게 된다. 사회학자나 법사회학자는 현실사회나 법을 인식하려고 하나, 역사적 조건을 무시하고는 객관적 인식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에서의 실정법학자는 전통적 사회와 그 법의 인식 없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구적 법제도의 서구에서의 발전과정의 탐구에 치우쳐 있고, 사회학자나 법사회학자도 전통적 사회와 그 법의 인식 없이 현실사회나 법을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한다.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73-4쪽.

87) 박병호, 전통적 법체계와 법의식;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함병춘·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의 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출판부, 1975, 358쪽 이하;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등 참조.

88)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참조.

89) 일본에서의 연구는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거의 같은 법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川島武宜, 日本人の法意識 등 참조.

90) 양승두 외, 한국의 법문화 I,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1-2쪽.

91) Tokiyasu Fujita, Streitvermeidung und Streiterledigung durch informelles Verwaltungshandeln in Japan, NVwZ 1994, 133 ff.

아니라 오히려 쟁송불사적 법문화(Streitsbereitschaftskulture)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다.⁹²⁾

그 하나의 전형적인 증거로 1980년대 중반 이후의 한국에서의 소송 사건수의 현저한 증가 추세를 들 수 있다. 1986년부터 2001년까지 법원에 접수된 전체 사건수의 누년 비교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9】와 같다.

【 -9】

1986	1,580,932	1994	1,653,500
1987	1,560,391	1995	2,033,452
1988	1,401,233	1996	2,233,938
1989	1,284,610	1997	2,663,525
1990	1,338,249	1998	4,149,462
1991	1,480,341	1999	3,467,710
1992	1,645,988	2000	2,737,474
1993	1,729,178	2001	2,741,783

※자료 : 법무부, 사법연감 재구성

이러한 우리나라의 소송증가 추세는 선진국의 추세와 비교하여 볼 때, 결코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법원에 제소하는 것을 꺼리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소액소송이 급속히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적은 액수의 손해에 대해서도 대단히 민감해졌고, 과거처럼 손해를 감수하거나 이웃에게 양보하는 성향이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것’보다는

92) 홍준형, 앞의 책, 103쪽.

II.

‘나의 것’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졌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94년도 법의식조사에서 지적한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의식이 행동으로 전환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⁹³⁾

물론 현재에도 과거의 전통적 법의식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분쟁이나 상거래분쟁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은 “법대로 합시다”인 것으로 보아서는 오히려 분쟁해결의 잣대를 법으로 보는 경향이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서구 국가들에서처럼 소송을 우선적 분쟁해결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개인의 권리의식이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 당사자간의 다툼을 중립적 제3자가 가려주는 소송이나 중재의 방식에 의존하겠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⁹⁴⁾

이하에서는 장을 바꾸어 2008국민법의식 조사의 내용을 i)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ii)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iii) 국민의 법생활, iv)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v) 현행 법제에 대한 태도로 나누어 상세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93) 김정오, 규범마찰과 분쟁야기에 따른 정서변화의 양태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301쪽.

94) 장문철,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식(ADR), 인권과 정의 제215호, 1994, 20쪽.

제 3 장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

I.

사회변동과 그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은 현시대의 국민법의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법의식’이 법과 사회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 상태’라는 것을 감안할 때, 개인의 가치관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법의식 변화와 상당부분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는 변화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변화들로 인하여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예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공유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국민법의식 실태파악’을 수행하기에 앞서 2008 국민법의식조사(이하 **“2008년조사”**라 한다)는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진단하고자 한다.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여성의 법률상 지위,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또한 최근 들어 외국인 노동자나 국제결혼 여성 등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을 감안하여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련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들 중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와 여성의 지위의 기본구조는 '94 국민법의식조사(이하 **“1994년조사”**라 한다)⁹⁵)와 동일하나,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 예시의 경우 ‘자녀’ 항목을 추가하였고, 여성의 지위의 경우 여성의 법률상 지위에 한정하여 질문을 재구성하였다. 그 외에도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에 대한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95) 이하 박상철 외 2인,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은 “1991년조사”라고 한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1994년조사에 비하여 2008년조사에 있어서 기본빈도의 분포는 가족 내 의사결정권자로서 부모(부부) 공동의사에 보다 많은 응답을 하였고,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증가하였으며,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로는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를 꼽는 응답이 많았다.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II.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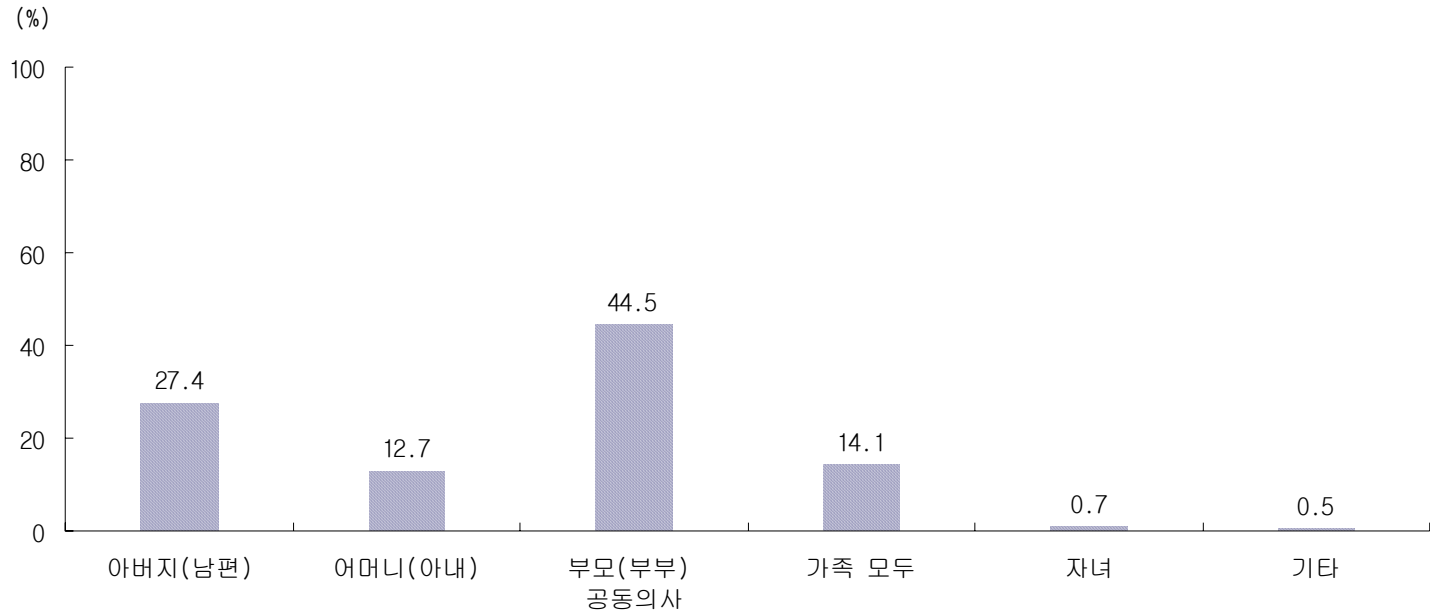
문1) ○○님의 가정에서는 가족공동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을 주로 누가 합니까?

결 과	%
아버지(남편)	27.4
어머니(아내)	12.7
부모(부부) 공동의사	44.5
가족 모두	14.1
자녀	0.7
기타	0.5
모름/무응답	0.0
계(N=3,007)	100.0

【 】

- ▣ 가족의 공동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주체가 누구인지를 물어본 결과, 부모(부부)의 공동이라는 응답(44.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아버지(남편)(27.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94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가족공동문제에 대한 의사결정권한이 ‘어머니(아내)에게 있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늘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서 살펴볼 여성의 법적 지위(문2)와도 깊은 관련성을 가지는 결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는 과거에 비하여 어머니 혹은 아내로 대변되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신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가정 내에서의 발언권 또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 가



Ⅱ. 가

【 -1】 1991 · 1994 - 가

	1991	1994	2008
	6. 가 가 ?	6. 가 가 ?	1)○○ 가 가 가 ?
가족 내 의사결정 구조의 변화	1)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24.5(490) 2)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1.6(32) 3)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 어진다 30.6(612) 4)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 어진다 42.2(844) 5)기타 1.0(20)	1)아버지(남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24.35(291) 2)어머니(아내)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 진다 1.5(18) 3)부모(부부)의 공동의사에 따라 이루 어진다 32.3(387) 4)가족 모두의 의사를 종합하여 이루 어진다 40.8(489) 5)기타 1.3(15)	1)아버지(남편) 27.4(825) 2)어머니(아내) 12.7(383) 3)부모(부부) 공동의사 44.5 (1339) 4)가족 모두 14.1(424) 5)자녀 0.7(21) 6)기타 0.5(15) 7)모름/무응답 0.0(1)

III.

여성이 어느 정도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은 비교적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적인 사회·경제적 평가와 실질적인 보상이 적은 전업주부가 자신이 불공정하게 평가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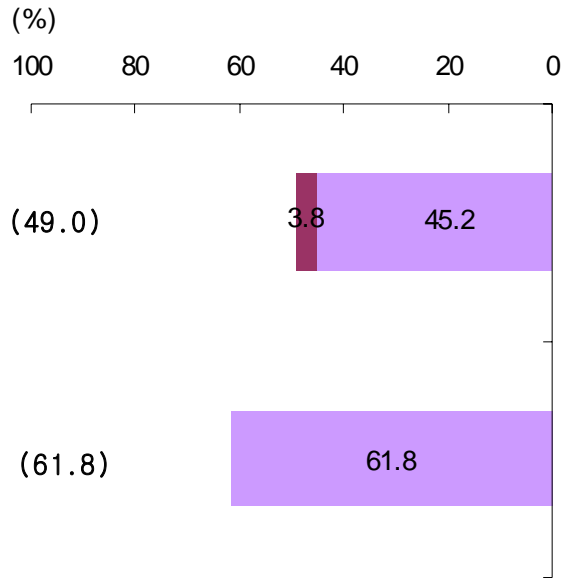
실제로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은 경제적 보상이나 만족을 논의할 때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라는 개념을 사용해 왔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의 불평등 정도를 인지하거나 평가할 때, 절대적으로 경제적 보상 정도만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즉, 자신들이 받는 경제적 보상을 객관적인 투자나 공헌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또는 개인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하게 된다. 그런데 이 경우 그 집단 혹은 사회의 규범이나 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불평등의 문제를 절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기 보다는 상대적인 시각에서 본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상대적인 시각이 어떠한 대상에 대한 ‘인식’이라 명명될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것들이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면 당연히 하나의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가는 성(gender)적인 측면에서 차별과도 관련이 있다. 실제로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질문에 응답자의 44.4%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즉, 여성(특히 전업주부일 경우)이 가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불평등도 법률적 측면에서 여성이 경험하게 되는 불리한 대우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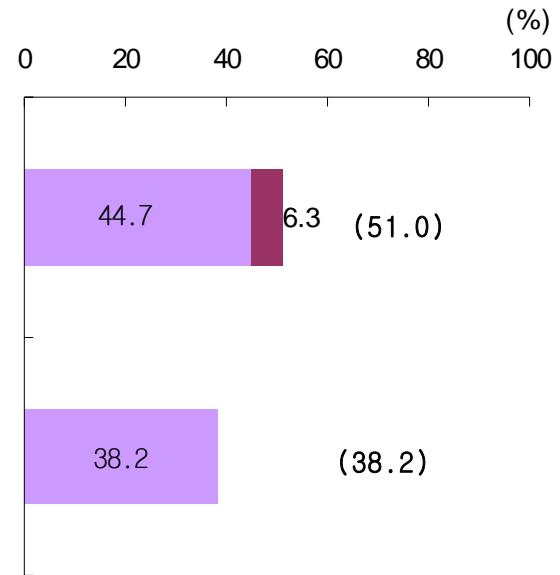
이러한 여성의 객관적인 상황은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이미 남성의 교육수준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

【 -2】

(매우+그런편) 불리한 대우를 받고있다 ◀



▶ (그런편+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지않고있다



【 -2】 1991 · 1994 -

	1991	1994	2008
여성의 법률상 지위	8. 가 가 가 ? 1)정치참여 11.0(219) 2)재산상속 10.2(202) 3)취업 및 승진 60.3(1198) 4)가정에서의 역할 15.7(311) 5)요즈음은 대체로 평등하다 4(27) 6)기타 1.5(30)	8. 가) ? 1)그렇다 61.8(740) 2)그렇지 않다 38.2(457)	2)○○ ? ? 1)매우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 3.8(113) 2)불리한 대우를 받는 편이다 45.2(1360) 3)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는 편이다 44.7(1345) 4)전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 6.3(189)

Ⅲ.

	1991	1994	2008
		<p>) 가</p> <p>?</p> <p>1)정치참여 8.8(65) 2)재산상속 5.6(41) 3)취업 및 승진 69.3(511) 4)가정에서의 역할 14.0(103) 5)기타 2.3(17)</p>	<p>2-1)(2 '1,2 ')</p> <p>,</p> <p>가</p> <p>?</p> <p>1)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5.0(721) 2)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 생활의 불철저 16.4(241) 3)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4.0(649) 4)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11.5(170) 5)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 차이 13.1(193) 6)기타 0.0(1)</p>

Ⅲ.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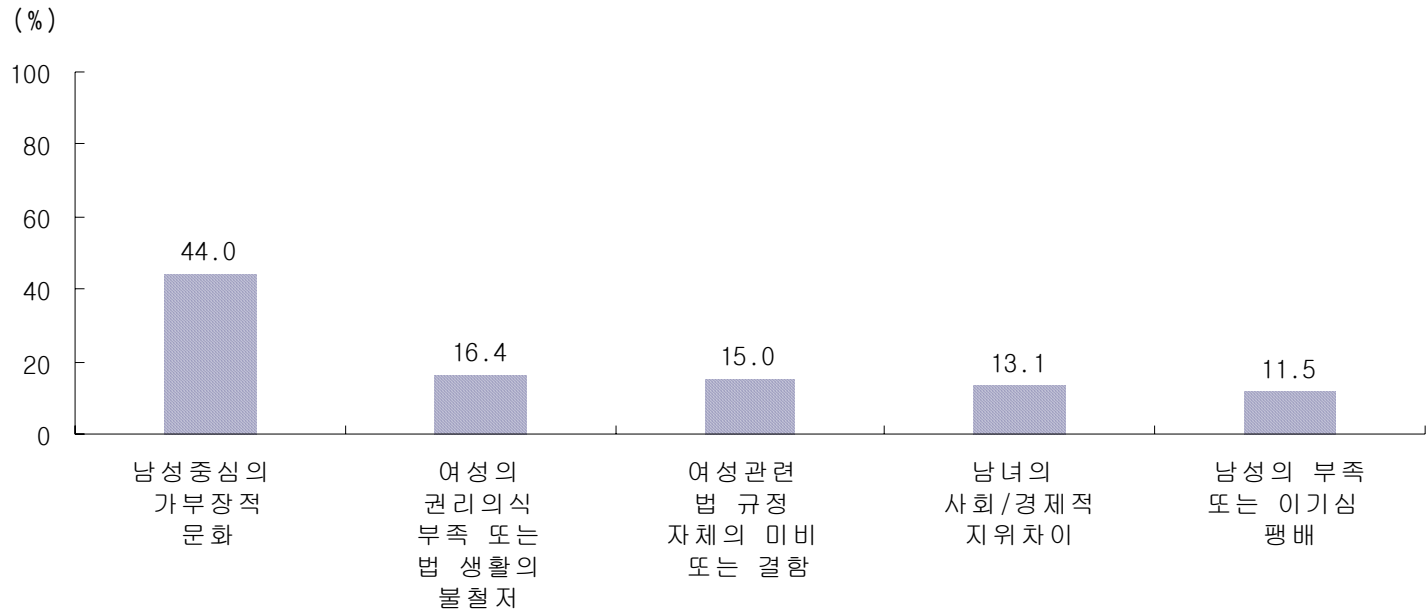
문2-1) 그럼,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44.0
여성의 권리의식 부족 또는 법생활의 불철저	16.4
여성 관련 법 규정 자체의 미비 또는 결함	15.0
남녀의 사회/경제적 지위차이	13.1
남성의 이해 부족 또는 이기심 팽배	11.5
모름/무응답	0.0
계(N=1,474)	100.0

【 】

-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자(N=1,474)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44.4%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 때문이라고 답하였다.

【 -3】



Ⅲ.

【 】

▣ 여성이 법률상 불리한 대우를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문화’는 남자집단에서 높게 나타났으며(48.4%), 이를 제외한 다른 항목들은 여자집단에서 더 높거나 혹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 -12】

(%)

		가	/	/					
전	체	1,474	44.0	16.4	15.0	13.1	11.5	0.0	100.0
▣ 성 별 ▣									
남	자	594	48.4 ↑	15.6	12.7	11.5	11.7	0.0	100.0
여	자	910	41.3	16.9	16.4	14.0	11.4	0.0	100.0

IV.

문3) 1999년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이 내려졌던 군가산점제도의 재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님은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결 과	%
전적으로 찬성한다	31.7 ↗ 79.5
찬성하는 편이다	47.8 ↘
반대하는 편이다	18.2 ↗ 20.5
전적으로 반대한다	2.3 ↘
계(N=3,007)	100.0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응답자 지지 수준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지만, 응답자 특성별로 군가산점제도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아래의 특성별분석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응답자 특성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변수는 성별과 학력이며, 이것은 다른 문항들에서도 비교적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뒤로 갈수록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남성의 찬성율이 높은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문제는 학력인데, 학력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변수 또한 학력변수와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즉, 소득이 낮을수록 상대적으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군가산점제도가 가지고 있는 복합성을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 즉, 군가산점제도는 성별이라는 측면에서는 남녀불평등의 문제가

IV.

지만, 학력이라는 측면에서는 고학력자와 저학력자의 불평등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자가 남성에 대한 징집이라는 법률적인 점과 관련이 있다면, 후자는 계층별 국방의무의 차이라는 현실적인 점과 관련이 있다. 남성만이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는 현실로 인하여 군가산점제도가 자칫 남성에 대한 특혜로 비취질 수 있다. 반면에 계층별 국방의무의 정도가 차이나는 현실에 비추어 군가산점제도는 어쩌면 이러한 현실적 불평등에 대한 보상적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만약에 군가산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결국 두 가지 측면에서의 동시적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남녀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점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군가산점제도는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이지 남녀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예를 들면, 성별에 상관없이 일정기간 이상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점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군가산점제도와 유사하게 출산을 비롯한 사회전체에 대한 공헌을 포함하여 일종의 국가공헌가산점제도를 도입한다면 남녀불평등에 관한 논란을 다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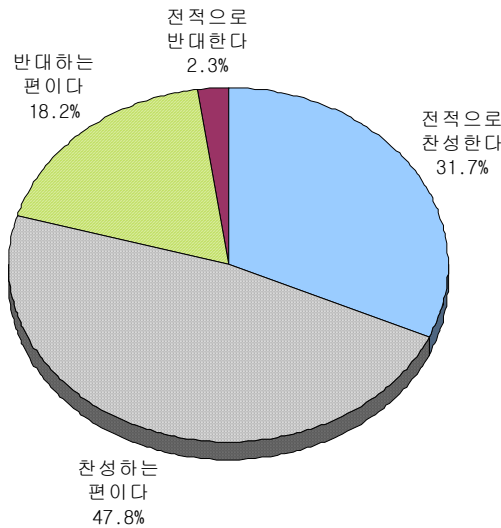
둘째, 현실적으로 계층별 병역의무의 정도에 차이가 난다는 문제를 다소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론적으로 개별국민이 공평하게 사회적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에 공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의 확산과 행정체계가 좀 더 완비됨에 따라 병역이행과 관련된 시비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 때, 공정한 병역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지도층이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를 실천하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쉽게 단기간 내에 달성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사회계층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층에서는 끊임없이 보다 편한 길을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국민에게 군가산점제도 등을 통해 일종의 제도적 보상을 부여하는 것은

전체적인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점에서도 순기능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적 측면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남녀차별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 】

■ 군가산점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4명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다.⁹⁶⁾

【 -4】



96) 이러한 조사 결과는 기존의 여론 조사 결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즉,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8년 8월 1,000명의 20-30대 남성만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73.8%가 찬성하였고,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2006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군가산점제도에 찬성한다는 여성이 60.3%로 나타났다. 이것은 2002년도 조사 결과의 48.5%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군 가산점제 부활, 여풍에 대한 역풍이 부채질, 한겨레신문, 2008. 2.22.자 참조.

V.

문4) 최근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탈북자) 등이 국내에 들어와 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결 과	%
전적으로 찬성한다	15.5 ↘ 79.3
찬성하는 편이다	63.9 ↙
반대하는 편이다	18.9 ↘ 20.7
전적으로 반대한다	1.8 ↙

계(N=3,007)	100.0

한국사회에서 1990년대 중반 이후 외국인 이주자의 증가에 따른 사회적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러한 관심이 거시적인 추세에만 머물지 않고 미시적이고 심층적인 측면으로 옮겨가는 추세이다. 이번 조사에서 수행한 타인종·민족에 대한 포용여부를 살펴보면 압도적으로 찬성의 비율이 높다. 전체 응답자의 79.3%가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령과 정치성향에서 특성별 차이가 나타났다. 즉, ‘찬성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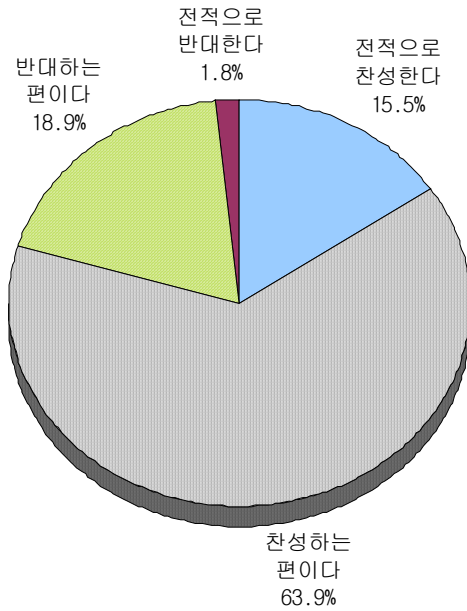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한국사회의 구성원들이 다문화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간주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연 “한국사회의 포용력이 매우 높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반드시 “그렇다”고 평가하기는 쉽지 않다. 사실 ‘타인종/민족을 포용해야 한다’는 의견 속에는 다양한 측면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보다도 고려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당위성의 측면이다. 위의 설문은 다소 바람직한 응답을 요구하고, 그러한 응답이 응답자들에게 특별히 부담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결과를 해석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타인종·민족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에 이루어진 다양한 조사에서 평가 대상에 따라 조사결과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미국인과 일본인과 같은 선진국 출신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포용성이 나타나지만, 개발도상국 또는 후진국 출신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향을 찾아보기 힘들다. 그리고 응답자들이 생각하는 포용분야가 어디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예를 들면, 일시적인 방문과 지속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동료·이웃·친구 사이에 차이가 두드러진다. 특히 국민과 가족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포용성 정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타민족 포용과 관련한 평가에 다양한 특성이 포함되어 있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하게 결과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은 주의를 요할 것이다.

【 】

▣ 국제결혼여성, 외국인 노동자, 새터민 등을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79.3%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 -5】



제 4 장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

I.

국민법의식을 보다 정확하게 조사·진단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사회변동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른 국민법의식의 변화를 진단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의 법에 대한 이해와 판단,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사회구성원들의 법의식과 정서의 변화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 못지않게 우리 사회의 분쟁상황의 변화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2008년조사에서는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정서를 진단하기 위하여 크게 법에 대한 인상, 법규범력의 좌표,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다만, 1994년조사에 포함되었던 ‘법의 존재가치에 대한 진단’에 관한 문항(문3 만약 우리 사회에서 법이 다 없어진다면 어떻게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은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8년조사에서는 제외하였고, ‘분쟁해결방법으로서의 법의 선택’에 관한 문항(문4 분쟁이 생겼을 때 “법적으로 해결합시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을 갖게 됩니까?)은 “문12)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로 질문을 수정하여 ‘국민의 법생활’부분에서 질문하였다. ‘탈법행위자에 대한 평가’에 관한 문항(문5 “법을 어기면서도 잘 사는 사람은 대체로 능력있는 사람이다”라는 말에 동의하십니까?)은 2008년조사에서는 제외하였고, 그 대신에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고자 “문8)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다”라는 문항으로 대체하였다. 그리고 ‘악법에 대한 인식’에 관한

문항(문7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을 추가하였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것처럼 법에 대하여 ‘권위적이다’거나 ‘불공평하다’와 같은 부정적인 느낌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사실은 현재 한국 사회에서 법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및 기능과 관련하여, 현 사회의 공적 분야와 공공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는 것은 법적 정의가 다른 요소에 의해 희석되어 있는 우리 사회의 현주소, 즉 법이 경제적·사회적 강자 앞에서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의식이 사회의 지배적인 분위기임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실에서 자유는 보편적 자유로 나타나기보다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변되듯 경제적 권력의 차이에 따라서 실현될 수 있는 자유의 양과 폭이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이에게는 자유의 과잉이지만, 또 다른 이에게는 자유의 결핍이라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⁹⁷⁾ 유전무죄·무전유죄라는 속설이 사회의 지배적 분위기로 이해될 때, 법은 기득권층의 이익보호에는 철저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에 대한 배려는 부족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사법제도의 민주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다.⁹⁸⁾ 이러한 현상은 법집행과정에서의 법의 해석 또는 적용의 자의성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이를 통하여 법치주의는 객관적 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집단 또는 특정권력의 이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현상을 바로잡기 위한 법정정책적 노력들이 요구된다.⁹⁹⁾

97) 최송화, 앞의 논문, 8쪽.

98) 오병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평가와 과제,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7, 12쪽.

99) 송기춘,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7, 307-308쪽.

한편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식의 교과서적인 준법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 우리 사회의 법구현 방식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은 의외의 결과로 보여진다.

【 -15】 : ↔

(%)

		8) (有錢無罪), (無錢有罪)		
		동의	동의하지 않음	계
7)	찬성	68.4	31.6	100.0
	찬성하지 않음	63.6	36.4	100.0

물론 법의 필요성 자체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며, 실제로 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특히 사회질서의 유지에 법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그 구체적인 기능과 관련하여 부정적인 평가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사실 현대 한국사회의 공적 분야와 공공성은 자체적인 발전에 근거하기보다는 식민지 지배와 관련이 많다. 즉, 일제침략시기에 식민지 지배를 효율적으로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법과 행정분야의 발달이 이루어졌으며, 이후에도 군사정권 및 권위주의 정부 등의 등장으로 인하여 법과 행정 분야는 통치의 목적이 전면에서 부각되어 온 것이 사실

이다. 따라서 법의 기능에 사회질서의 유지라는 목적 이외에도 억압적 통치기능이 내포되어 왔음은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을 근거로 하여 그 구체적인 모습은 응답자들의 특성별 결과를 살펴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주목할 만한 변수는 학력과 직업으로 보여진다. 불공정성과 권위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불공평하다’는 응답이 학력이 낮을수록 높다는 사실은 그 만큼 법이 부분적으로 억압적 지배 기제로써 기능했다는 측면과 관련이 깊다. 그리고 ‘권위적이다’라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은 학력이 높을수록 권위주의적 사회구조에 비교적 높은 친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적 질서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경우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불공평, 권위적)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현재 사회적·경제적으로 힘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법적 질서가 탈색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국민정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16】 : ↔

(%)

		5)			
		공평	민주적	불공평	권위적
8) (有錢無罪), (無錢有罪)	동의	50.0	54.1	65.7	71.2
	동의하지 않음	50.0	45.9	34.3	28.8
	계	100.0	100.0	100.0	100.0

그러나 이러한 결과만을 근거로 한국사회에서 법에 대한 인상을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무엇보다도 젊은 세대가 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 수 있다. 즉, 직업별 특성에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집단이 바로 학생집단이며, 이들은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을 민주적이라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연령별 평가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 젊은 세대일수록 상대적으로 법에 대한 인상이 긍정적이다. 이들 세대는 민주주의적 제도가 정착된 시기에 성장하였으므로, 권위주의적 정부와 이에 따른 법의 억압적 측면을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민주주의적 제도가 지금보다 발전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법에 대한 인상이 보다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즉, 적어도 현재까지는 법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앞으로 좀 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지며, 이러한 사회의 전반적 발전 뿐만 아니라 법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이 더해진다면 개선과정이 보다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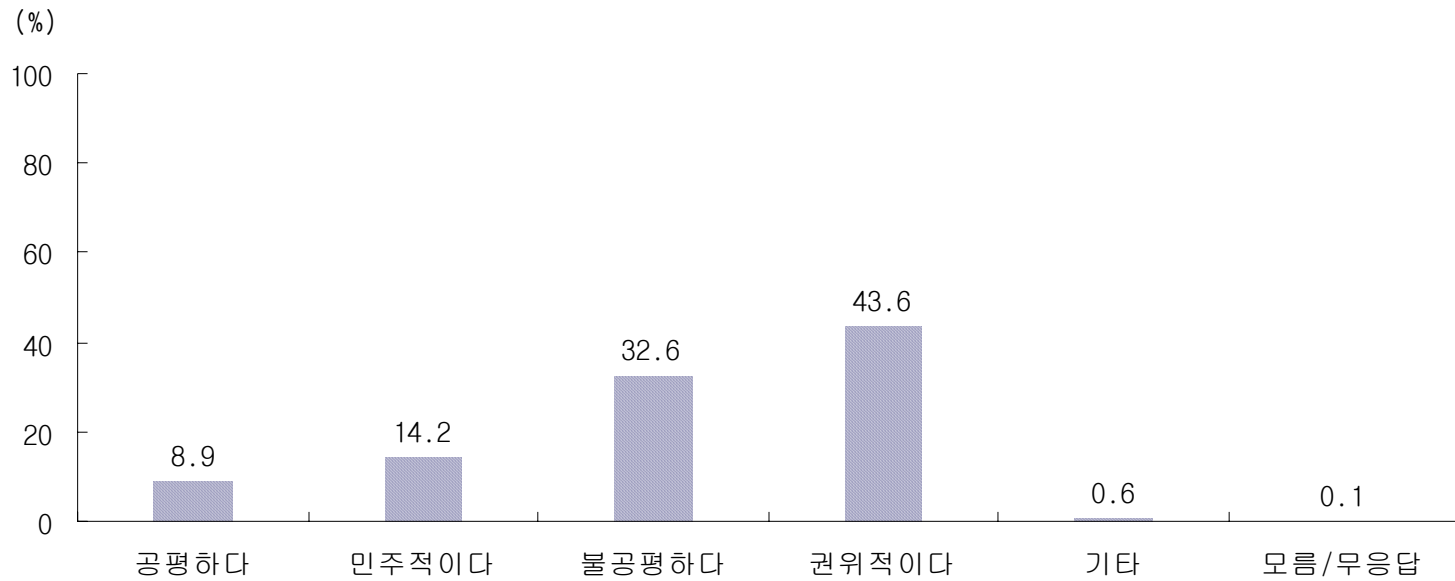
문5) ○○님은 ‘법’이란 말을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결 과	%
공평하다	8.9
민주적이다	14.2
불공평하다	32.6
권위적이다	43.6
기타	0.6
모름/무응답	0.1
계(N=3,007)	100.0

【 】

- ▣ ‘법’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연상되는 단어나 느낌에 대한 질문에 응답자의 대부분이 권위적(43.6%)이거나 또는 불공평(32.6)하다는 응답을 하여 법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상을 가진 응답자가 2/3을 넘게 차지하였다.

【 -6】



【 -3】 1991 • 1994 -

	1991	1994	2008
법에 대한 인상	1. “ ” 가 — ?	1. “ ” 가 — ?	5)○○ ‘ ’ 가 ?
	1)공평하다 13.4(267)	1)공평하다 13.0(156)	1)공평하다 8.9(267)
	2)민주적이다 11.1(221)	2)민주적이다 12.8(153)	2)민주적이다 14.2(427)
	3)엄격하다 18.9(378)	3)엄격하다 19.1(229)	3)불공평하다 32.6(981)
	4)편파적이다 24.7(494)	4)편파적이다 24.9(298)	4)권위적이다 43.6(1311)
	5)권위적이다 32.0(640)	5)권위적이다 30.3(363)	5)기타 0.6(19) 6)모름/무응답 0.1(2)

Ⅲ.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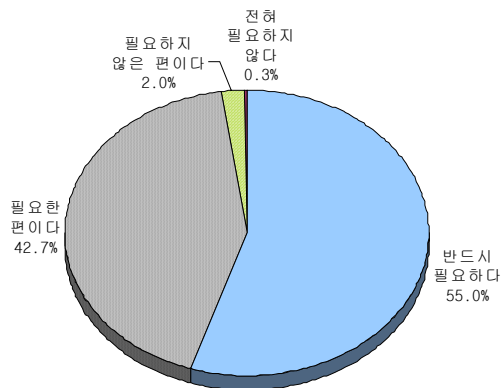
문6) ○○님은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반드시 필요하다	55.0 ↘ 97.7
필요한 편이다	42.7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 ↘ 2.3
전혀 필요하지 않다	0.3 ↘

계(N=3,0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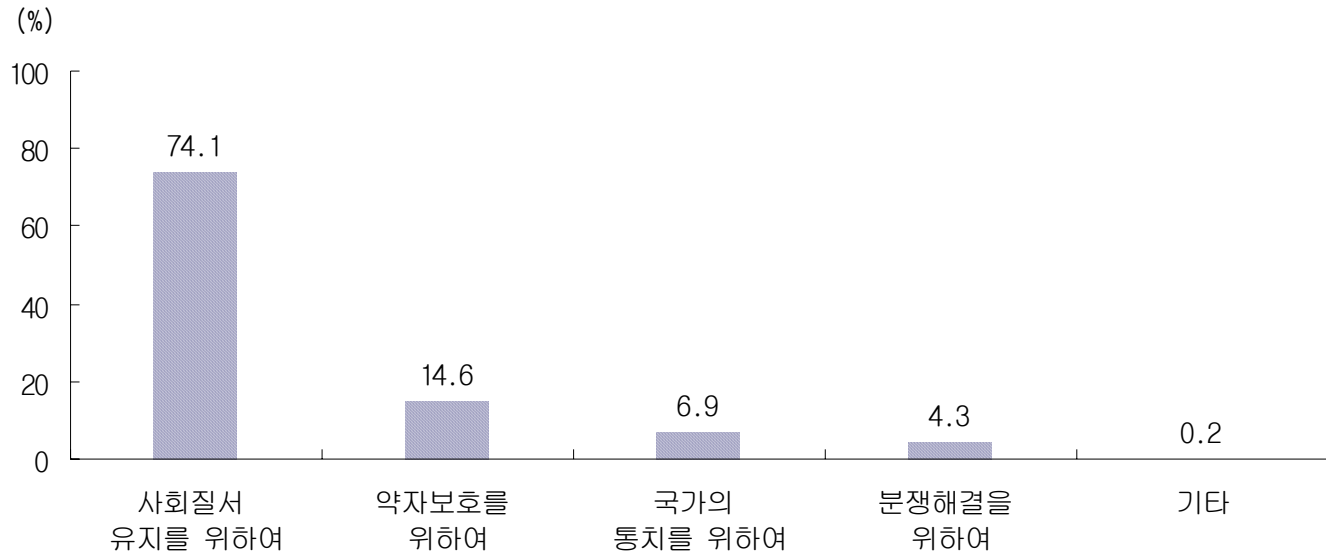
【 】

- ▣ 법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대다수가 필요하다 (97.7%)고 여기고 있었다.

【 -7】



【 -8】



【 -4】 1991 • 1994 -

	1991	1994	2008
법이 필요한 이유	1. ? 1)국가통치를 위하여 7.5(150) 2)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76.7(1532) 3)억울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8.8(176) 4)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1.9(38) 5)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3.2(64) 6)사회를 개혁하기 위하여 1.9(38)	1. ? 1)국가통치를 위하여 8.2(98) 2)사회질서유지를 위하여 70.9(849) 3)사회개혁을 위하여 1.2(14) 4)분쟁해결을 위하여 2.2(26) 5)범죄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4.2(50) 6)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3.4(161)	6)○○ ? ? 1)반드시 필요하다 55.0(1653) 2)필요한 편이다 42.7(1285) 3)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0(61) 4)전혀 필요하지 않다 0.3(8) 6-1) , 가 가 ? 1)국가의 통치를 위하여 6.9(202) 2)사회질서 유지를 위하여 74.1(2176) 3)분쟁해결을 위하여 4.3(126) 4)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14.6(429) 5)기타 0.2(5)

3.

문7) ○○님은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전적으로 찬성한다	8.4 ↘ 57.3
찬성하는 편이다	48.9 ↓
반대하는 편이다	36.1 ↘ 42.7
전적으로 반대한다	6.6 ↓
모름/무응답	0.0
계(N=3,007)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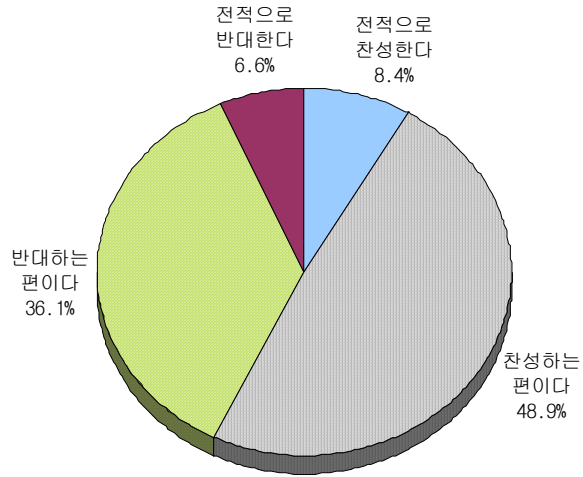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악법도 법이다’(Dura lex, sed lex)는 것은 어떠한 법률이 비록 도덕적으로 그릇되고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무효가 되거나 법률로서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며, 입법권자나 상위법에 의하여 폐기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지 않는 한 국민은 그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법실증주의적 관점에 입각하여 국가권력·정치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장된 것으로서 강한 비판을 받기도 한다.¹⁰³⁾ 이와 관련하여 2004년 11월 7일 헌법

103)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 1994, 10쪽. 여기에서 강교수는 “우리는 과거 독재정권의 역사적 과오를 시인하고 민주화의 의지를 다진다는 의미에서 독재정권의 하수인으로 부역해 온 소크라테스에 대해 민주주의에 대한 불경죄와 정소년타락죄로 유죄선고를 하고 사형에 처해야 할 것이다”고 서술하고 있다. 같은 논문, 33쪽.

재판소는 초·중·고교 사회교과서의 헌법재판 관련오류와 미비점을 찾아내어 교육부에 수정을 요청하였다. 즉, 일부 중학교 사회교과서에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이라며 독배를 마시고 숨졌다는 내용을 준법정신을 강조하기 위한 사례로 소개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적법절차가 강조되는 오늘날의 헌법체계에서는 준법이란 정당한 법, 정당한 법집행을 전제로 한다며 이 사례를 준법정신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것이다.¹⁰⁴⁾ 위의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악법도 법이므로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과반수 이상인 5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응답자의 과반수 이상이 개인에 의한 자의적인 초규범적 판단을 방지하고, 사회공동체의 기본적인 질서유지를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것은 국가권력·정치권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당한 법과 법집행을 전제로 하는 준법정신의 고취 및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립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04) 동아일보 2004년 11월 7일 관련기사 참조.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과거 권위주의정권 때에는 헌법을 여러 가지의 법 중의 하나로 대접했고, 국민의 기본권을 공동체를 위해 양보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하면서 이로부터 “교육이 권위주의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준법정신이 잘못 기술되었다” 곁들였다.

【 -9】



【 】

▣ 악법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찬성하는 의견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과 계층이 높을수록 악법이라도 법은 일단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 -19】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	
전 체	3,007	8.4	48.9	57.3	36.1	6.6	42.7	.0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7.2	47.0	54.1	40.4	5.4	45.9	0.0	100.0
고 졸	1,522	8.8	48.5	57.3	36.0	6.7	42.7	0.0	100.0
대재 이상	962	8.3	50.7	59.0▼	33.9	7.1	40.9	0.1	100.0
▣ 계층별 ▣									
하 층	1,339	8.3	47.5	55.7	37.3	6.9	44.3	0.0	100.0
중 간	1,431	8.1	49.8	57.9	35.4	6.6	42.0	0.0	100.0
상 층	237	10.5	51.8	62.3▼	33.5	4.2	37.7	0.0	100.0

IV. 가
()

문8) ○○님은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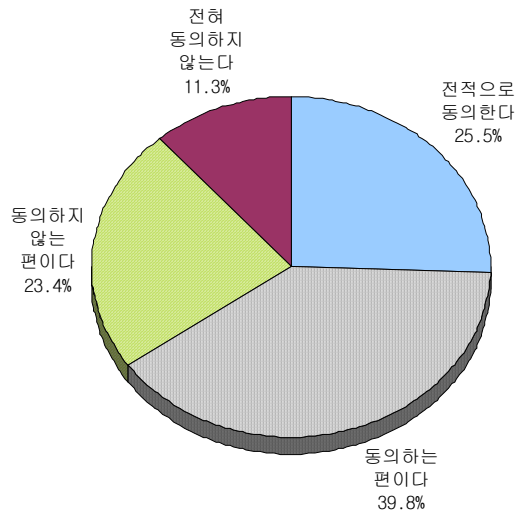
결 과	%
전적으로 동의한다	25.5 ↗ 65.2
동의하는 편이다	39.8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3.4 ↗ 34.8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1.3 ↘

계(N=3,007)	100.0

【 】

▣ 우리 사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65.2%로 나타났다.

【 -10】 가()



【 】

-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통용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와 관련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은 학력 및 수입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V. 가()

【 -20】 가()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25.5	39.8	65.2	23.4	11.3	34.8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20.0	39.1	59.1	26.1	14.7	40.9	100.0
고 졸	1,522	25.0	38.3	63.3	25.4	11.2	36.7	100.0
대재 이상	962	29.1	42.5	71.6 ▼	18.8	9.6	28.4	100.0
▣ 총수입별 ▣								
199만원 이하	701	23.7	39.4	63.1	21.8	15.0	36.9	100.0
200~299만원	910	24.1	39.2	63.3	25.2	11.5	36.7	100.0
300~399만원	776	26.0	40.2	66.2	24.1	9.6	33.8	100.0
400만원 이상	592	29.2	40.1	69.3	21.8	9.0	30.7	100.0
모름/무응답	28	19.8	50.3	70.1 ▼	21.5	8.4	29.9	100.0

제 5 장 국민의 법생활

I.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가늠함에 있어 법에 대한 관심, 준법정신, 권리의식 등을 포함한 국민의 법생활화의 실태와 수준을 조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생활법률정보 인지경로, 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계약서 숙지정도, 법교육에 대한 의견 등,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 법의 난해성에 관한 의견, 법지식수준 자가진단, 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 법준수 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가장 시급히 퇴치해야 할 범죄유형, 범죄퇴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 불량품 구매시 대처 방법, 횡단보도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집단따돌림 대처방법 등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1994년조사의 경우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금융실명제에 관한 문항(문14), 민법상 재산상속순위에 관한 지식(문40), 법을 가장 잘 지키지 않는 자(문10의 다), 분야별 법준수도(문11), 사적 모임에서의 규칙준수(문12) 등은 시대상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거나 비공식적 영역에서의 의식에 관한 질문이라는 등의 이유로 삭제하였다. 그 대신 2008년조사에서는 신규 법교육의 수요, 법의 난해성에 관한 의견, 법지식수준 자가진단, 법준수 자가진단과 비준수 이유 등에 관한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 외의 문항의 경우에는 질문 및 예시를 일부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선에서 조정하였다.

이와 같이 국민의 법생활 분야는 다른 분야와 비교하였을 때 문항수도 많을 뿐만 아니라 문항들의 성격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들을 몇 가지 성격으로 축약하는 요인분석을 통하여 대표적인 몇 개의 차원으로 설명한다면 보다 구조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

이다. 법생활에 관한 문항의 경우 ‘법에 대한 관심’과 ‘법교육’ 및 ‘법준수’라는 세 가지 요인(요인의 이름은 임의적으로 부여함)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으며,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은 다음의 표와 같다.

【 -21】

(%)

		Component		
		1	2	3
법에 대한 관심	문10) 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	0.721	-0.092	0.208
	문20) 법지식 수준 자가진단	0.629	0.177	0.041
	문13) 계약서 숙지 정도	0.623	0.018	-0.096
법 교육	문14) 초중고교의 법교육 정도	-0.094	0.781	0.029
	문16) 법교육의 효용	0.256	0.649	0.049
법 준수	문23) 법준수 자가진단	-0.032	-0.195	0.791
	문21) 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	-0.069	0.390	0.600
	문12)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	0.210	0.098	0.335

이 중 법에 대한 관심과 관련된 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10)○○님은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으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13)○○님은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문20)○○님은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에 대한 관심의 정도가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법에 대한 관심문항 3개를 점수화하여 총합한 값(최대값은 12점)들 중 3~6점은 법관심이 높은 집단, 9~12점은 법 관심이 낮은 집단으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 두 집단이 소송에 대한 어떤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 way ANOVA)을 시행한 결과 다음의 표와 같이 법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집단은 소송제기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2】 :

		F		
9.513	1	9.513	23.868	.000
528.06	1325	.399		
537.581	1326			

II.

1. ()

문9) ○○님은 생활법률 관련 정보를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얻습니까? 다음 중에서 자주 접하는 경로를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 과	가장 %	중복 %
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74.4	93.0
인터넷	17.6	45.6
주위 사람	5.2	43.2
책(법전)이나 잡지(법령 정보지)	2.0	9.7
정부홍보물	0.4	3.3
학교	0.3	1.1
기타	0.2	0.4
계(N=3,007)	100.0	(중복응답)

생활법률 관련정보 인지경로에 관한 결과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정보화와 매체 영향력 변화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뉴미디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형태의 매체 영향력의 증가가 주목할 만하다. 뉴미디어는 1970년대부터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새롭게 그 영역을 확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말한다. 음성·문자의 다중방송, 위성으로부터의 직접방송, 대화형(對話型) 방송매체, 뷰데이터(view data) 또는 비디오텍스(videotex), 비디오디스크, 가정용 팩시밀리 장치, 인터넷 등이 대표적이다.

II.

기존에는 주로 신문과 방송을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다면, 최근에는 이러한 뉴미디어를 통해 사람들이 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방송과 언론이라는 기존 매체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는다. 생활법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언론매체’를 통해 주로 얻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러한 특성이 증가한다. 반면에 대표적인 뉴미디어인 ‘인터넷’의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념적으로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학생의 경우 높게 나타났다.

사실 지난 10여 년간의 정보화과정 속에서 이동전화, 그리고 컴퓨터로 대표되는 IT 관련 상품 및 서비스는 한국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경우 전체 인구 중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이 전 세계에 가장 높고, 실제 이용에서도 70% 이상의 인구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사회이다. 생활 속에서의 인터넷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인터넷 이용자들은 쇼핑, 시사정보의 검색,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의 활동에서는 오프라인(off-line) 공간보다 오히려 인터넷을 보다 친숙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제 인터넷은 전문가들의 전유물도 아니고, 소수의 사람들이 생활 속의 필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의 의미도 넘어서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익명성에 숨어 있는 사회적 고립자들의 욕구배설의 장이나 잃어버린 공동체를 복원하는 새로운 기술적 가능성이라는 초기 연구의 극단적 묘사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사회생활 속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또 하나의 실제적 사회공간인 것이다. 그리하여 현대인들은 다양한 IT기기와 환경을 기반으로 음악을 듣고, 친구를 만나며, 여행정보를 검색하여 주말여행을 계획하고,

그 주말여행을 위한 특별한 의상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IT 기반의 활동은 유비쿼터스(Ubiquitous) 사회의 등장과 함께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활법률정보를 제공하거나 또는 입법기관의 입법활동을 홍보할 경우 신문이나 TV 등 전통적인 언론매체 이외에도 대표적인 뉴미디어인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국민의 법생활과 법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 활동을 높이며, 나아가서 법치사회의 구성에 이바지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한편 몇몇 문항들 간의 교차분석을 통하여 드러난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즉, 생활정보를 매체나 정부 홍보물 등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얻는 사람이 소극적인 방법을 통해 얻는 사람들(주위사람 혹은 학교로부터)에 비하여 판결에 관한 기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와 유사하게 계약서를 읽는 사람이 읽지 않는 사람에 비하여 판결에 관한 기사에 더 많이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II.

【 -23】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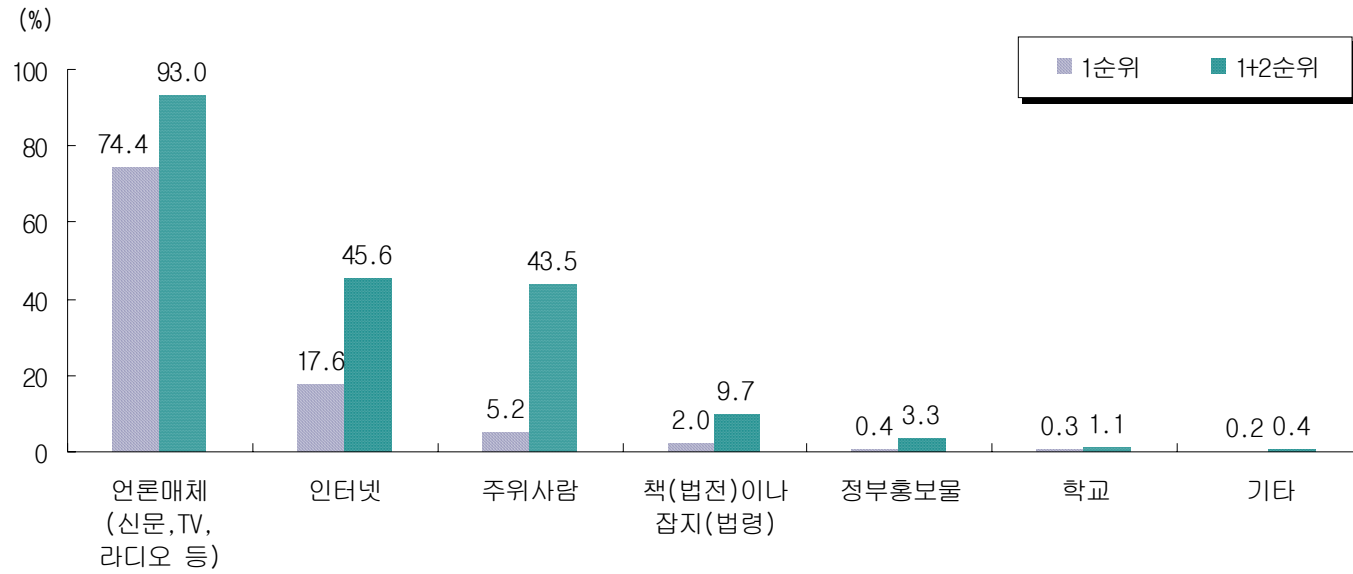
(%)

10)		관심있음		관심없음	계
		관심있음	관심없음		
9)	언론매체 (신문, TV, 라디오 등)	73.5	26.5		100.0
	인터넷	72.7	27.3		100.0
	책(법진)이나 잡지(법령 정보지)	83.3	16.7		100.0
	정부홍보물	81.8	18.2		100.0
	주위 사람	51.3	48.7		100.0
	학교	44.4	55.6		100.0
13)	읽음	79.4	20.6		100.0
	읽지 않음	63.2	36.8		100.0

【 】

▣ 생활법률 관련정보를 얻는 주된 경로에 대하여 물어본 결과, 대다수의 응답자가 신문, TV, 라디오 등의 언론매체(93.0%)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인터넷, 주위사람 등을 통해서 라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중복응답 기준). 앞서 언급한 것처럼 1994년조사와 비교할 때 2008년조사결과에서 주목할 점은 1994년조사의 경우에는 신문·TV 등 전통적인 대중매체에 의하여 생활법률 관련 정보를 얻는 경향이 있었다면, 2008년조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등 뉴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경향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 -11】 ()



【 -5】 1991 · 1994 -

	1991	1994	2008
생활법률 인 지 경로	17. ?	17. ?	9)○○ ?
	1)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4.9(1497) 2)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2(184) 3)책을 보고서 6.2(124) 4)학교에서 배워서 4.1(81) 5)사건을 겪고 나서 5.6(112)	1)신문이나 TV를 통해서 70.9(850) 2)주위사람들로부터 듣고서 9.1(109) 3)책을 보고서 9.8(118) 4)학교에서 배워서 3.4(41) 5)사건을 겪고 나서 4.9(59) 6)정부홍보물을 통하여 1.8(22)	가 (1순위) 1)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74.4(2237) 2)인터넷 17.6(528) 3)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2.0(60) 4)정부홍보물 0.4(11) 5)주위 사람 5.2(157) 6)학교 0.3(8) 7)기타 0.2(6)

	1991	1994	2008
			(2순위) 1)언론매체(신문, TV, 라디오 등) 19.3(558) 2)인터넷 29.1(842) 3)책(법전)이나 잡지(법령정보지) 8.0(232) 4)정부홍보물 3.1(90) 5)주위 사람 39.5(1143) 6)학교 0.8(24) 7)기타 0.2(7)

II.

【 】

▣ 생활법률 관련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주로 얻는다는 의견이 대다수인 가운데 연령층이 높을수록 이러한 특성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미디어인 ‘인터넷’의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이념적으로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학생(84.2%)의 경우 높게 나타났고 ‘주위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는 연령층이 높을수록, 농/수/축산업 종사자((78.5%)의 경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24】

(

-

)

(%)

		(,TV,)		()	()				
전 체	3,007	93.0	45.6	43.2	9.7	3.3	1.1	0.4	100.0
▣ 연령별 ▣									
19~29 세	632	87.1	77.9▲	21.8	7.3	1.3	3.2	0.0	100.0
30~39 세	690	91.5	66.1	29.9	8.1	2.4	0.1	0.2	100.0
40~49 세	679	94.5	36.4	44.7	14.5	4.6	0.9	0.4	100.0
50세 이상	1,007	96.7	17.5	64.8▼	9.1	4.4	0.4	0.8	100.0
▣ 직업별 ▣									
농/수/축산업	108	98.8	10.3	78.5↑	6.5	3.0	0.5	0.0	100.0
자 영 업	719	94.6	35.1	50.8	10.3	3.3	0.1	0.7	100.0
블루 칼라	549	95.4	47.7	40.1	10.0	3.2	1.2	0.3	100.0
화이트 칼라	647	88.0	60.9	28.4	13.4	4.5	0.4	0.4	100.0
전업 주부	597	96.6	31.1	58.7	5.3	2.9	1.4	0.5	100.0
학 생	245	84.5	84.2↑	18.6	5.5	1.2	5.1	0.0	100.0
무직 / 기타	142	93.1	41.9	35.8	17.1	4.8	0.0	0.4	100.0
▣이념성향별▣									
진 보	877	93.0	53.5▲	35.0	10.4	2.6	1.5	0.4	100.0
중 도	1,378	92.2	46.4	45.2	8.6	3.2	0.7	0.2	100.0
보 수	752	94.4	34.8	49.3	10.9	4.6	1.3	0.8	100.0

2.

(1)

법을 알고자 하는 욕구, 즉 법인지욕구는 법생활의 철저화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며, 법인지의 욕구가 강한 자는 고발정신이 높고, 소송이라는 수단을 권리보장과 분쟁의 해결수단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참여적 시민문화가 정착된 사회일수록 법인지욕구는 강하기 마련인데 조사결과 ‘뉴스에 보도되거나 신문에 실리는 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해서 (매우)관심이 있다’와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매우)자세히 읽는다’는 응답이 각각 72.3%와 61.8%에 달하여 우리 사회의 높아진 권리의식이나 고발정신에 비례하여 법을 알고자 하는 욕구도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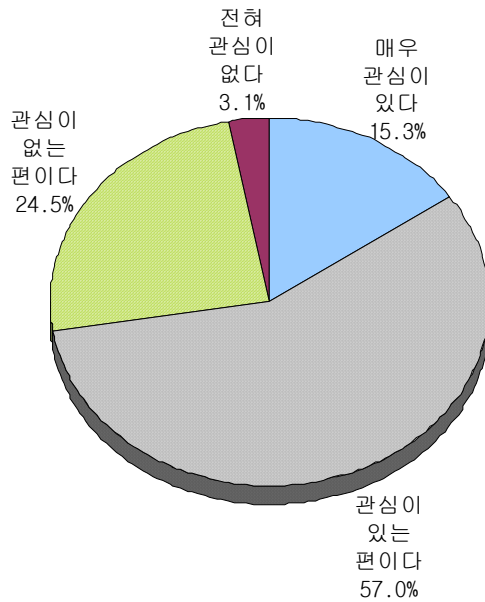
(2)

결 과	%
매우 관심이 있다	15.3 ↘ 72.3
관심이 있는 편이다	57.0 ↓
관심이 없는 편이다	24.5 ↘ 27.6
전혀 관심이 없다	3.1 ↓
계(N=3,007)	100.0

【 】

■ 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정도를 물은 결과, 상당수인 72.3%가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법적인 보도내용에 주목하는 개인과 그렇지 않은 개인 사이에는 법의식에서 현저한 차이가 날 수도 있다¹⁰⁵⁾는 점에서 국민의 판결에 관한 기사에 대한 관심정도가 높다는 것은 국민의 법생활과 법의식 수준을 높이고, 국민의 참여 활동을 높이며, 나아가서 법치사회의 구성에 이바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 -12】 ·



105) 김영란,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4호,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1989, 277쪽 참조.

【 -6】 1991 · 1994 -

	1991	1994	2008
법인지 욕구	18. ?	18. ?	9)○○ ? ?
	1)자세히 본다 21.2(423)	1)자세히 본다 22.2(266)	1)매우 관심이 있다 15.3(461)
	2)대충 본다 59.6(1192)	2)대충 본다 55.6(667)	2)관심이 있는 편이다 57.0(1715)
	3)거의 보지 않는다 14.6(291)	3)거의 보지 않는다 16.0(192)	3)관심 없는 편이다 24.5(736)
	4)전혀 보지 않는다 4.7(94)	4)전혀 보지 않는다 6.3(75)	4)전혀 관심이 없다 3.1(94)

II.

【 】

▣ 판결기사에 대한 관심 여부와 관련하여, ‘관심이 있다’는 응답은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한 응답자(75.2%)들이 다른 집단(이혼/별거/사별 혹은 미혼)에 비해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5】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15.3	57.0	72.4	24.5	3.1	27.6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13.0	50.1	63.1 ↓	30.4	6.4	36.9	100.0
고 졸	1,522	14.1	56.7	70.8	26.1	3.1	29.2	100.0
대재 이상	962	18.5	61.4	79.9 ↓	18.7	1.4	20.1	100.0
▣ 혼인상태별 ▣								
결 혼	2,224	17.0	58.2	75.2 ↑	22.1	2.7	24.8	100.0
이혼/별거/사별	85	11.1	45.8	56.9	32.3	10.8	43.1	100.0
미 혼	698	10.6	54.7	65.3	31.1	3.6	34.7	100.0
▣ 계층별 ▣								
하 층	1,339	14.2	54.0	68.2 ↓	27.8	4.0	31.8	100.0
중 간	1,431	15.3	58.4	73.7 ↓	23.8	2.5	26.3	100.0
상 층	237	21.9	65.8	87.8 ↓	10.1	2.1	12.2	1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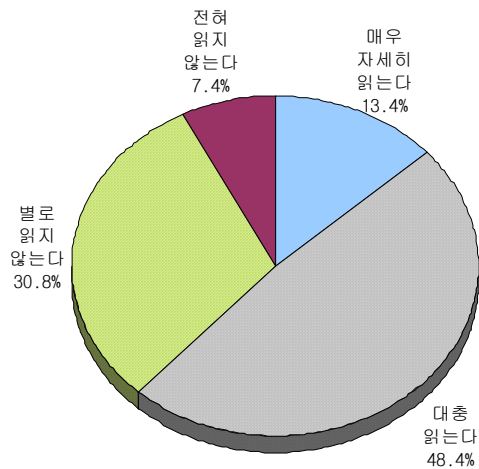
문13) ○○님은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에 있는 규정(약관)을 어느 정도 자세히 읽어 보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매우 자세히 읽는다	13.4 ↗ 61.8
대충 읽는다	48.4 ↘
별로 읽지 않는다	30.8 ↗ 38.2
전혀 읽지 않는다	7.4 ↘
계(N=3,007)	100.0

【 】

- 전체 응답자의 60% 이상이 보험이나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서 규정(약관)을 읽는다고 응답하였다.

【 -13】



II.

【 -7】 1991 • 1994 -

	1991	1994	2008
계약서 속 지 정 도	21. () ?	21. 가 , ()	13)○○ 가 ()
	1)자세히 본다 27.6(551)	? ()	? ()
	2)대충 본다 46.9(937)	1)자세히 본다 33.6(403)	1)매우 자세히 읽는다 13.4(403)
	3)안본다 21.1(42)	2)대충 본다 44.8(537)	2)대충 읽는다 48.4(1455)
	4)그런 규정이 어느지도 모른다 4.4(87)	3)안본다 18.1(217)	3)별로 읽지 않는다 30.8(927)
	4)그런 규정이 어느지도 모른다 3.6(43)	4)전혀 읽지 않는다 7.4(222)	

【 】

▣ 계약서 숙지와 관련하여, 계약서 내용에 대한 관심은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진보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판결에 대한 관심 정도’와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결과이다.

【 -26】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13.4	48.4	61.8	30.8	7.4	38.2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13.8	40.8	54.6	36.4	9.0	45.4	100.0
고 졸	1,522	12.5	48.6	61.1	31.5	7.4	38.9	100.0
대재 이상	962	14.6	52.1	66.7↓	26.8	6.5	33.3	100.0
▣ 계층별 ▣								
하 층	1,339	11.1	48.0	59.2	31.6	9.2	40.8	100.0
중 간	1,431	14.2	49.3	63.5	30.7	5.9	36.5	100.0
상 층	237	21.5	44.9	66.3↓	27.5	6.2	33.7	100.0
▣ 이념성향별 ▣								
진 보	877	17.7	50.0	67.7↑	26.5	5.8	32.3	100.0
중 도	1,378	12.3	50.4	62.7	30.0	7.3	37.3	100.0
보 수	752	10.4	42.7	53.1	37.4	9.5	46.9	100.0

3.

(1)

후술하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이 현저하게 낮은 가운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견 또한 ‘법에 대한 인상(문 5)’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리 긍정적이지 않았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계층이 낮을수록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았는데 그 이유로 ‘어려운 내용’과 ‘비싼 비용’을 들고 있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법률서비스가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특히, 뉴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접하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지식이 풍부한 만큼 법률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계속하여 커질 것이기에, 현재보다 적극적으로 법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소송제기를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비율이 보다 많은 것 역시 서비스제공에 대한 불만에서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27】 : ↔

(%)

		12)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계
11)	있다	66.3	33.7	100.0
	없다	70.1	29.9	100.0

또한 법에 대해 호의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분쟁 발생시 ‘법’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해 보다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이 우리 사회의 소송문화 선진화를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28】 : ↔

(%)

		5)			
		공평	민주적	불공평	권위적
12)	바람직함	71.9	77.3	66.4	68.0
	바람직하지 않음	28.1	22.7	33.6	32.0
	계	100.0	100.0	100.0	1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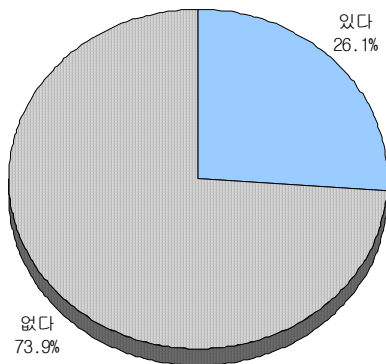
문11) ○○님은 법적 문제 발생시 법률상담, 법률서류작성 등의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결 과	%
있다	26.1
없다	73.9
계(N=3,007)	100.0

【 】

■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하여 물은 결과, 70% 이상이 이용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14】



【 】

- ▣ 법률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이용경험이 있다’는 의견은 여자보다는 남자집단(32.8%)에서,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경험이 없다’는 의견의 경우 미혼 집단(14.1%)이 다른 집단(결혼, 이혼/별거/사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9】

(%)

전 체	3,007	26.1	73.9	100.0
▣ 성 별 ▣				
남 자	1,485	32.8 ↑	67.2	100.0
여 자	1,522	19.6	80.4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21.9	78.1	100.0
고 졸	1,522	24.8	75.2	100.0
대재 이상	962	30.5 ↓	69.5	100.0
▣ 혼인상태별 ▣				
결 혼	2,224	29.8	70.2	100.0
이혼/별거/사별	85	30.1	69.9	100.0
미 혼	698	14.1	85.9 ↑	1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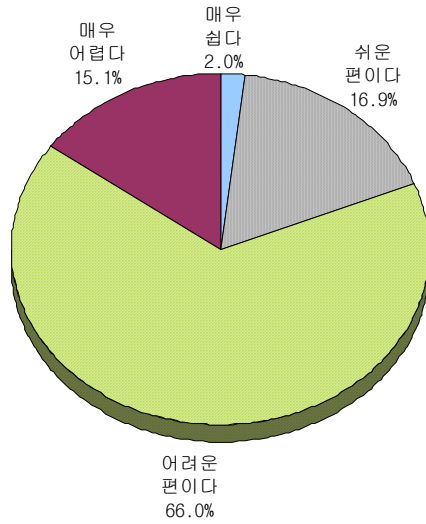
문11-1) 그럼, 법률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느 정도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쉽다	2.0 ↘ 18.9
쉬운 편이다	16.9 ↘
어려운 편이다	66.0 ↘ 81.1
매우 어렵다	15.1 ↘
<hr/>	
계(N=785)	100.0

【 】

▣ 법률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N=785)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이 용이했는지 여부를 묻은 결과, 어렵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여전히 법률서비스에의 접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15】



【 】

▣ 법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이용이 쉽다’는 의견은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이 가장 적었던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은 계층이 낮아질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서비스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 -30】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785	2.0	16.9	18.9	66.0	15.1	81.1	100.0
▣ 연령별 ▣								
19~29 세	73	2.5	31.5	34.1 ↑	56.9	9.0	65.9	100.0
30~39 세	196	1.5	14.5	16.0	67.8	16.2	84.0	100.0
40~49 세	244	2.6	13.8	16.3	70.1	13.6	83.7	100.0
50세 이상	273	1.8	17.5	19.3	63.4	17.2	80.7	100.0
▣ 계층별 ▣								
하 층	387	1.6	12.8	14.3	66.4	19.3	85.7▲	100.0
중 간	337	1.8	19.4	21.2	66.8	12.1	78.8	100.0
상 층	61	6.2	29.3	35.5	59.5	5.0	64.5	100.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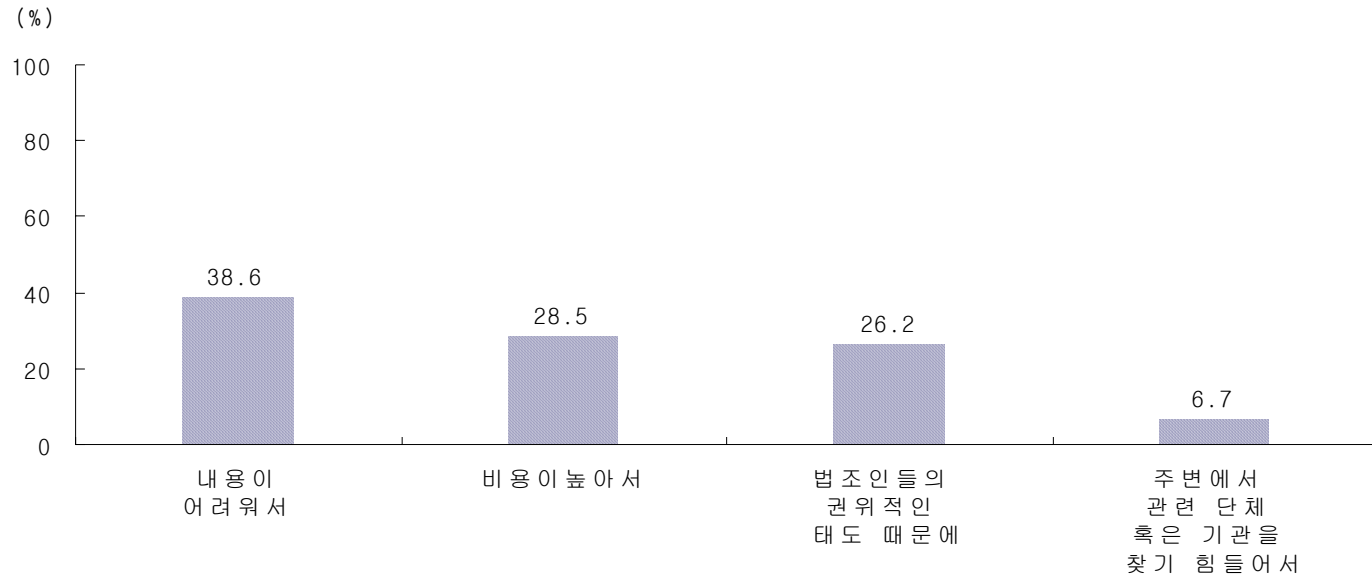
문11-2) 그림, 이용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내용이 어려워서	38.6
비용이 높아서	28.5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	26.2
주변에서 관련단체 혹은 기관을 찾기 힘들어서	6.7
-----	-----
계(N=637)	100.0

【 】

-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응답자(N=637)를 대상으로 어려운 이유를 물어본 결과, 38.6%가 ‘내용이 어려워서’라고 응답했고 ‘비용이 높아서’(28.5%),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 때문에’(26.2%) 라는 의견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16】



【 】

▣ 법률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이유에 대하여, ‘내용이 어려워서’라는 의견은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미혼(52.8%)의 경우 높게 나타났고, ‘비용이 높아서’라는 응답은 학력 및 계층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조인들의 권위적인 태도’에서 원인을 찾는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많이 나타났다.

【 -31】

(%)

전 체	637	38.6	28.5	26.2	6.7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100	35.5 ↓	34.1 ↑	27.1 ↑	3.3	100.0
고 졸	297	46.3 ↓	29.7 ↑	26.9 ↑	7.1	100.0
대재 이상	240	42.7 ↓	24.8 ↑	24.9 ↑	7.6	100.0
▣혼인상태별▣						
결 혼	539	37.0	29.0	27.9	6.1	100.0
이혼/별거/사별	24	28.7	37.4	27.0	6.9	100.0
미 혼	75	52.8 ↑	22.3	14.0	11.0	100.0
▣ 계층별 ▣						
하 층	331	36.5 ↓	30.4 ↑	27.2	5.9	100.0
중 간 층	266	39.9 ↓	27.7 ↑	24.5	7.9	100.0
상 층	40	47.7 ↓	18.1 ↑	28.8	5.5	100.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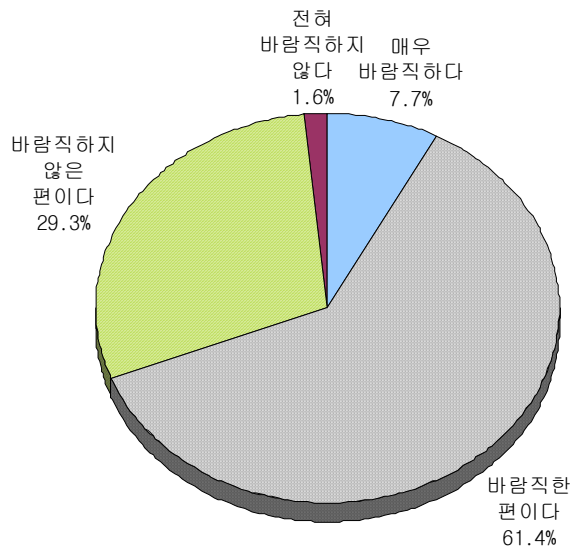
결 과	%
매우 바람직하다	7.7 ↘ 69.1
바람직한 편이다	61.4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29.3 ↘ 30.9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6 ↘
계(N=3,007)	100.0

【 】

- 법률문제가 발생한 경우 그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69.1%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로부터 과거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에 호소하는 것을 합리적인 해결방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한국인의 소송회피문화가 불식되어 가는 것¹⁰⁶⁾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법의식의 제고와 선진법치주의 실현에 매우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106)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79쪽.

【 -17】



【 】

- 소송제기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소송을 통한 문제해결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높아졌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집단(80.7%)에서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 -32】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7.7	61.4	69.1	29.3	1.6	30.9	100.0
▣ 연령별 ▣								
19~29 세	632	6.3	71.3	77.6 ↑	21.9	0.5	22.4	100.0
30~39 세	690	7.6	62.7	70.3	27.7	1.9	29.7	100.0
40~49 세	679	8.7	58.6	67.3	30.8	1.9	32.7	100.0
50세 이상	1,007	8.0	56.1	64.1	33.9	2.0	35.9	100.0
▣ 직업별 ▣								
농/수/축산업	108	6.9	44.4	51.3	46.2	2.5	48.7	100.0
자 영 업	719	9.7	56.9	66.6	31.0	2.4	33.4	100.0
블루 칼라	549	7.2	63.3	70.4	27.9	1.7	29.6	100.0
화이트 칼라	647	7.1	62.2	69.3	29.8	0.9	30.7	100.0
전업 주부	597	7.2	61.0	68.1	29.9	1.9	31.9	100.0
학 생	245	5.6	75.1	80.7 ↑	18.9	0.4	19.3	100.0
무직 / 기타	142	9.7	63.8	73.5	26.1	0.4	26.5	100.0
▣ 지역크기별 ▣								
대 도시	1,415	8.7	63.4	72.1 ↑	27.1	0.8	27.9	100.0
중소 도시	1,260	6.3	60.3	66.6	31.4	2.0	33.4	100.0
읍 / 면	333	9.2	56.7	65.9	30.5	3.6	34.1	100.0

5.

(1)

민주주의 사회는 법치주의의 실현을 전제로 할 때 그 존립이 가능하며,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소가 민주적 법질서이다. 이러한 민주적 법질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의 기본적 자질로서 법적 소양과 법적 문제의 해결능력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민주시민적 자질은 청소년기에 의도적·형식적인 법교육(Law-Related Education)을 통하여 함양될 수 으며,¹⁰⁷⁾ 이로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법교육이 끊임없이 이루어져 온 것이다. 건국 초기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여 1970년대의 새마을 교육, 1980년대의 국민정신교육, 1990년대의 민주시민교육 등은 법교육과 관련이 깊으며, 법에 대한 지식과 이해, 태도의 함양 등을 교육했다.¹⁰⁸⁾

최근 학교에서는 ‘도덕과’와 ‘바른 생활’이라는 교과를 통하여 학생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본적인 생활습관과 규범을 준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형성하여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제7차 교육과정¹⁰⁹⁾에서는 도덕과를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을 이해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규범과 예절을 익히며, 국가·민족 구성원으로서 그리고 세계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게 하여 한국인, 나아가 세계시민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을

107) 김다현,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영향 연구 :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제2호, 2006, 35쪽.

108) 박재운, 법교육에 관한 연구 - 초·중등학교 법교육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 제19권, 1992, 135쪽 참조.

109) 1995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을 구성하여 발표하면서 개정작업을 실시하여 2000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하였고, 2003학년부터 전 학년에 걸쳐 적용하고 있다.

II.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교과로 정의하고 있다. 아울러 ‘도덕’을 제7차 교육과정 개정의 기본방향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교과로, 바람직한 삶을 위한 도덕 규범과 가치 문제를 다루는 규범과학적 관점과 사회질서 유지 및 국가·민족 발전을 위한 국민의식 형성문제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적 관점을 중심으로 학제적(學際的) 접근을 시도하는 교과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교육과정은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의 정신을 반영하고, 1-10학년 도덕과 교육의 전체적인 계열성과 연계성을 고려한 가운데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단계에서의 도덕성 발달수준과 교육의 중점을 특성화하고자 하였다. ‘도덕’의 계열적 특성을 보면, 초등학교 단계인 3-6학년에서는 통합 교과인 1-2학년의 ‘바른 생활’에서 이루어진 기본생활 습관의 형성교육을 발전·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초보적인 도덕적 판단력의 육성, 그리고 도덕적 실천성향과 행동습관의 형성에 역점을 둔다. 중·고등학교 단계인 7-10학년에서는 나선형 교육과정의 원리에 따라 초등학교 단계에서의 도덕과 교육을 보다 심화시켜 도덕적 가치·규범의 좀 더 깊은 이해와 신념화, 도덕 원리에 입각한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적 사고력과 판단력의 육성 및 자율적 도덕성의 습득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¹¹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1-2학년의 ‘바른 생활과’의 민주시민 교육 영역과 과제는 주요 가치·덕목으로 생명존중, 협동, 타인 배려, 준법, 인류애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각각 활동영역으로 내일 스스로 하기, 예절 지키기, 다른 사람 생각하기, 질서 지키기, 나라 사랑하기로 구분할 수 있다. 1학년 과정에서 준법과 관련한 주요 지도 요소 및 제재는 차례 지키기와 학교 규칙 지키기 등이며, 2학년은 교통규칙 지키기, 여럿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질서 지키기 등이다. ‘바른 생

110) 임현모,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3, 283쪽.

활과’에서는 이 사회가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기본 생활습관, 덕목들이나 활동영역, 주요 지도요소 등은 나름대로 잘 정리되어 있으나, 주당 1시간으로 배정된 현 상황에서 얼마나 실천으로 나타나느냐가 문제일 것이다.¹¹¹⁾

【 -33】

112)

/								
3	4	12	6	18	0	0	0	0
4	5	15	2	6	1	3	2	6
5	5	15	1	3	3	9	1	3
6	4	12	3	9	1	3	2	6
계	18	54	12	36	5	15	5	15
비율(%)	45%		30%		12.5%		12.5%	

위의 【표-33】에서는 3-6학년의 도덕교과에서 민주시민요소의 주제수에 다른 빈도수와 차시 배당시간을 나타낸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의 민주시민요소들은 학년에 따라 요소별로 비중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초등학교 전체 학년에서의 비율을 따져볼 경우 ‘인간의 존엄성’이 40개의 총 단원 수 중 18개로 4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본질서’가 12개의 단원수로 30%,

111) 임현모, 앞의 논문, 286쪽.

112) 권미경,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비교분석,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62쪽.

‘민주적 사회에서의 절차’와 합리적 의사결정’이 5개의 단위 수로 12.5%를 나타내고 있다.

교과 내용은 준법의식과 관련된 기본질서 부분의 비중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교육과정의 총론을 보면 도덕과의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으로 정해져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주요 교과에 비해 정규 수업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여 민주시민의 핵심인 도덕교과가 학교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¹³⁾

교육주체들 모두가 우선 입신출세의 최초 관문으로 알고 있는 대학 입시에 매달려 민주시민교육은 교육기본법이나 교육목표, 그리고 교육과정 등에서 강조하고 있으나 이는 실천적 교육이 아닌 관념적·형식적 교육에 그치고 있다.¹¹⁴⁾ 즉 교육현장에서 실제 사회생활에서 실천되고 생활화되는 방향으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기보다는 입시교육의 한 방편에서 무시되고 있다고 보는 경향이 많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의 도덕교과뿐만 아니라 여러 과목에서도 민주시민교육 내용이 반영되어 있기는 하지만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교육내용도 규범적·원론적 서술에 그치고 있어 생활속에서의 민주적 생활양식을 체득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화와 토론으로 민주적 절차를 숙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매우 취약한 편이다. 결국 도덕적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교육적 환경이 변화해야 하는 것을 뜻한다. 교육적 환경의 변화는 교육과정, 교육내용, 학교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¹¹⁵⁾ 이러한 교육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회의 전문가 단체와 연계한 교육을 통해 실천적인 준법정신을 기르게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113) 최응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기초질서 확립 방안 전문가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29쪽.

114) 임현모, 앞의 논문, 291쪽.

115) 임현모, 앞의 논문, 292쪽.

2008년조사의 결과 법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1994년조사에 비해 약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 교육을 통한 법지식 또한 도움이 된다는 평가보다도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우세하였는데, 심지어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학교 교육을 통한 법 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하였다. 1994년조사 결과와 2008년 조사의 결과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사회구성원들의 사회적 참여증가나 향상된 시민의식, 준법의식의 향상 등의 영향으로 법에 대한 지식이 예전에 비해서 증가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추측하건대, 법교육 자체가 축소되거나 질이 저하되지는 않았을 것이며, 오히려 교육시스템의 향상에 발맞추어 법교육 자체의 질 또한 향상되었을 것이다. 다만, 우리 사회의 법교육이 사회 구성원들의 지식이 증가하고 요구가 확대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부정적인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잘되고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법교육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학교에서의 법교육이 제대로 정립될 경우 법교육의 효용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34】 : ↔

(%)

		16)		
14)	(→)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계
	잘 되고 있음	73.1	26.9	100.0
	잘 되지 않고 있음	38.9	61.1	100.0

(2)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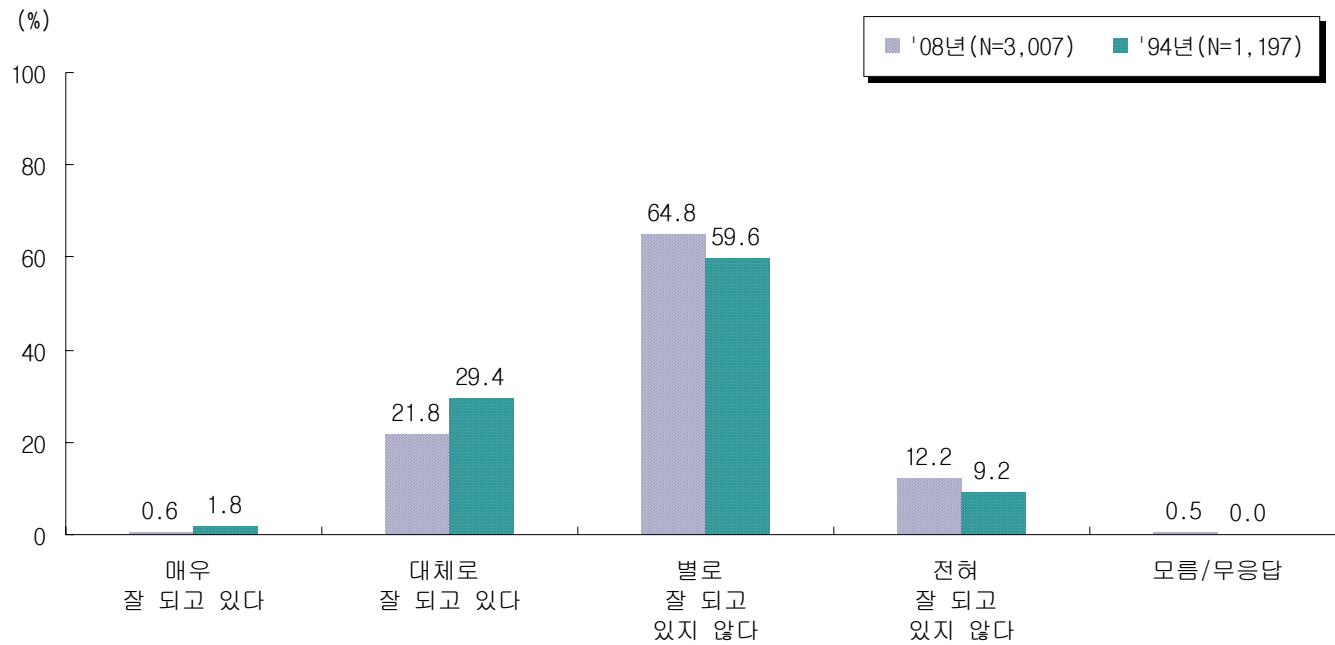
문14) ○○님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 교육이 어느 정도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8년 (N=3,007)	1994년 (N=1,197)
매우 잘되고 있다	0.6 ↘ 22.5	1.8 ↘ 31.2
대체로 잘되고 있다	21.8 ↘	29.4 ↘
별로 잘 못되고 있다	64.8 ↘ 77.0	59.6 ↘ 68.8
전혀 못되고 있다	12.2 ↘	9.2 ↘
모름/무응답	0.5	-
계	100.0	100.0

【 】

■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 실태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2008년조사에서는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이 4명 중 3명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며, 1994년조사에서 또한 2008년조사의 결과보다는 ‘잘 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아지기는 하였지만, 대략적인 추세는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에서의 법교육을 바라보는 시각이 여전히 부정적이고, 이와 동시에 그 정도 또한 심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8】 . .



【 -8】 1994

-

	1994	2008
법교육 정도	20.	14)○○ _____ ? ?
	가) ?	1)매우 잘되고 있다 0.6(19) 2)대체로 잘되고 있다 21.8(657) 3)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64.8(1949) 4)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12.2(366) 5)모름/무응답 0.5(16)
	1)매우 잘되고 있다 1.8(22)	
	2)대체로 잘되고 있다 29.4(352)	
	3)별로 잘되고 있지 않다 59.6(713)	
4)전혀 잘되고 있지 않다 9.1(110)		

【 】

▣ 법교육 실태에 대하여 특성별로 살펴보면, 법교육이 ‘잘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나, 비교적 최근 까지 실제 학교에서 법교육을 받았던 집단이 오히려 현재의 법교육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현재의 법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큰 것을 알 수 있다.

【 -35】 . .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	
전 체	3,007	0.6	21.8	22.5	64.8	12.2	77.0	0.5	100.0
▣ 연령별 ▣									
19~29 세	632	1.1	18.4	19.5	63.1	17.3	80.4 ↑	0.1	100.0
30~39 세	690	0.5	20.1	20.6	63.5	15.4	79.0	0.4	100.0
40~49 세	679	0.5	20.9	21.4	68.1	10.1	78.2	0.3	100.0
50세 이상	1,007	0.5	25.9	26.4	64.6	8.1	72.7	1.0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0.1	29.0	29.1	62.3	6.7	69.0 ↓	1.9	100.0
고 졸	1,522	1.0	21.6	22.6	64.6	12.5	77.0	0.3	100.0
대재 이상	962	0.4	18.3	18.6	66.6	14.7	81.3 ↓	0.1	100.0
▣이념성향별▣									
진 보	877	1.0	19.7	20.8	64.8	14.5	79.2 ↑	0.0	100.0
중 도	1,378	0.5	21.5	21.9	66.0	11.7	77.7	0.4	100.0
보 수	752	0.5	25.0	25.5	62.7	10.3	73.0	1.5	100.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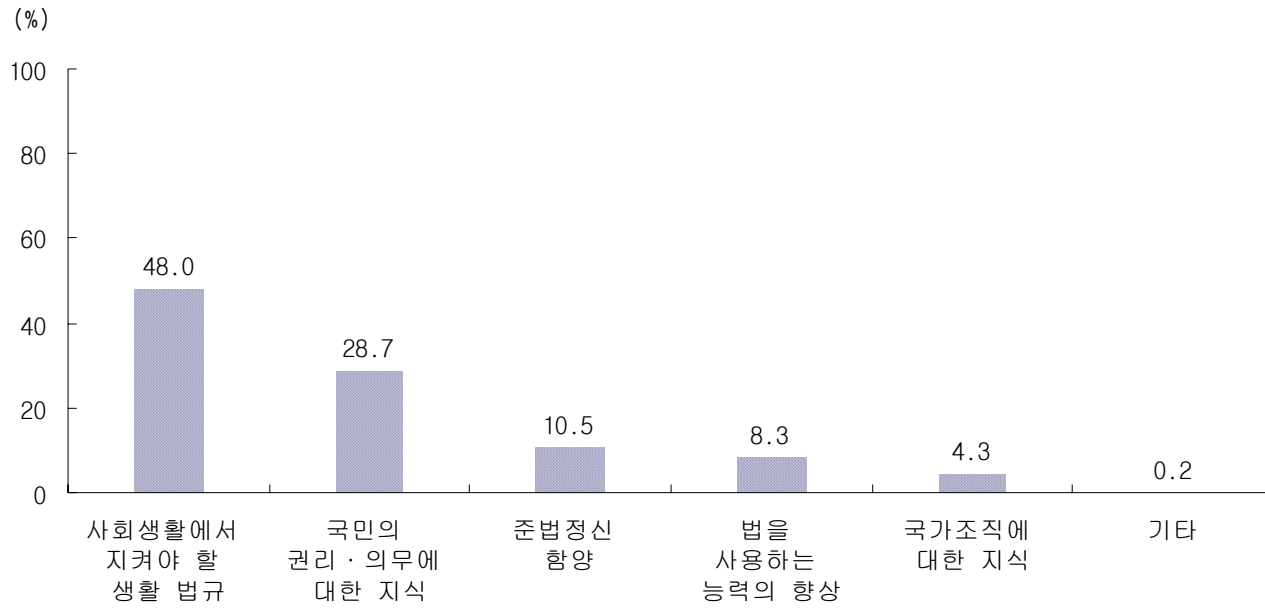
문15) ○○님은 법교육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48.0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28.7
준법정신의 함양	10.5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8.3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4.3
기타	0.2
모름/무응답	0.0
계(N=3,007)	100.0

【 】

- ▣ 법교육이 중점을 두어야 할 부분에 대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라는 의견이 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28.7%)이 높게 나타났다. 시민들이 공동체 생활의 주체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적 이념의 함의라고 한다면, 법교육은 이러한 공동체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법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가치를 습득하는 것이 주요한 주제가 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겠다.

【 -19】



【 -9】 1994

-

	1994	2008
법교육 중점 부문	20.) ?	15)○○ 가_ ?
	1)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15.7(187)	1)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 28.7(864)
	2)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25.4(303)	2)국가조직에 대한 지식 4.3(129)
	3)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5.7(68)	3)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 48.0(1442)
	4)준법정신의 함양을 위한 올바른 인간상 정립 52.1(622)	4)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 8.3(49)
	5)기타 1.1(13)	5)준법정신의 함양 0.5(316)
		6)기타 0.2(5)
		7)모름/무응답 0.0(1)

【 】

▣ 법교육 중점부문과 관련하여, ‘사회생활에서 지켜야 할 생활법규’가 중요하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고연령층과 보수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지식’이 중요하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을수록 그리고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았다.

【 -36】

(%)

	가	나	다	라	마	바	사	하	가	나
전 체	3,007	48.0	28.7	10.5	8.3	4.3	0.2	0.0	100.0	
연령별										
19~29 세	632	41.2	35.6 ↑	9.8	9.7	3.4	0.3	0.0	100.0	
30~39 세	690	47.6	29.3	9.4	9.2	4.4	0.0	0.0	100.0	
40~49 세	679	51.8	27.7	9.2	7.7	3.4	0.0	0.1	100.0	
50세 이상	1,007	49.8 ↓	24.6	12.6	7.2	5.4	0.4	0.0	100.0	
이념성향별										
진 보	877	45.0 ↑	34.4	8.1	8.0	4.4	0.2	0.0	100.0	
중 도	1,378	48.0	27.0	11.4	8.5	4.8	0.2	0.0	100.0	
보 수	752	51.3	25.2 ↓	11.7	8.3	3.3	0.1	0.1	100.0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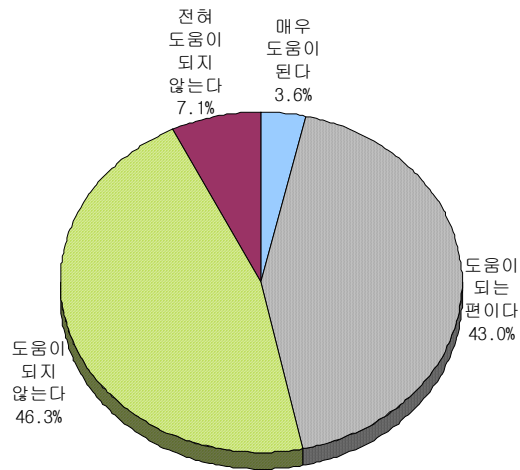
문16) ○○님은 학교교육을 통해서 배웠거나 현재 배우고 있는 법 관련 지식이 자신의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도움이 된다	3.6 ↘ 46.5
도움이 되는 편이다	43.0 ↘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46.3 ↗ 53.5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7.1 ↘
계(N=3,007)	100.0

【 】

- 자신의 법관련 지식이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물은 결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53.5%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비해 약간 우세하였다.

【 -20】



【 】

- 법교육의 효용성에 대하여, 실제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은 학력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이 있으며, 특히 30대(63.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37】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3.6	43.0	46.5	46.3	7.1	53.5	100.0
▣ 연령별 ▣								
19~29 세	632	3.8	42.9	46.8	47.6	5.6	53.2	100.0
30~39 세	690	2.8	33.9	36.7	51.3	12.0	63↑	100.0
40~49 세	679	4.2	43.7	47.9	45.7	6.4	52.1	100.0
50세 이상	1,007	3.6	48.6	52.2	42.5	5.3	47.8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2.1	47.5	49.7	43.2	7.1	50.3	100.0
고 졸	1,522	4.4	43.5	47.9	45.0	7.2	52.1	100.0
대재 이상	962	3.2	39.6	42.7	50.2	7.1	57.3↓	100.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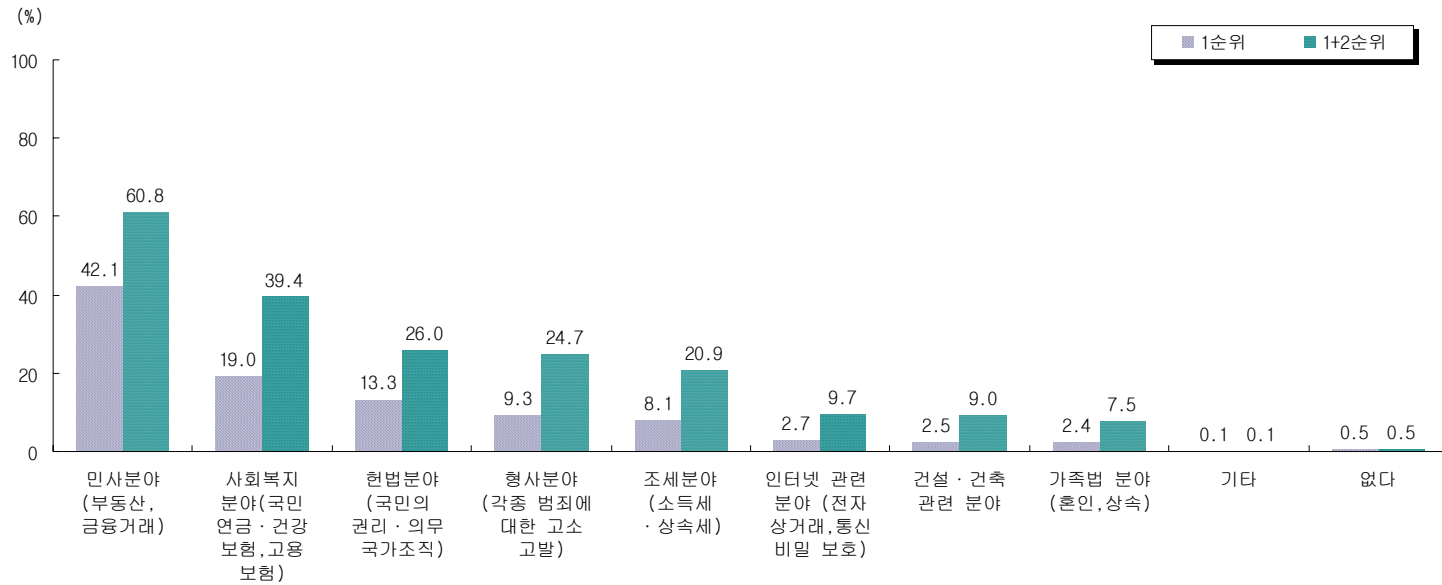
문17) 만약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생긴다면, 어떤 분야를 배우고 싶으십니까?
다음 중에서 두 가지만 순서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결 과	가장 %	중복 %
민사 분야(부동산, 금융거래)	42.1	60.8
사회복지 분야(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19.1	39.4
조세 분야(소득세·상속세)	8.1	26.0
형사 분야(각종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	9.3	24.7
헌법 분야(국민의 권리·의무, 국가조직)	13.3	20.9
인터넷 관련 분야(전자상거래, 통신비밀보호)	2.7	9.1
가족법 분야(혼인, 상속)	2.4	9.0
건설·건축 관련 분야	2.5	7.5
기타	0.6	0.6
계(N=3,007)	100.0	(중복응답)

【 】

- ▣ 배우고 싶은 법 분야에 대해 민사분야(부동산, 금융거래)라는 의견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사회복지분야(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와 조세분야(소득세, 상속세)가 높았다(중복응답 기준).

【 -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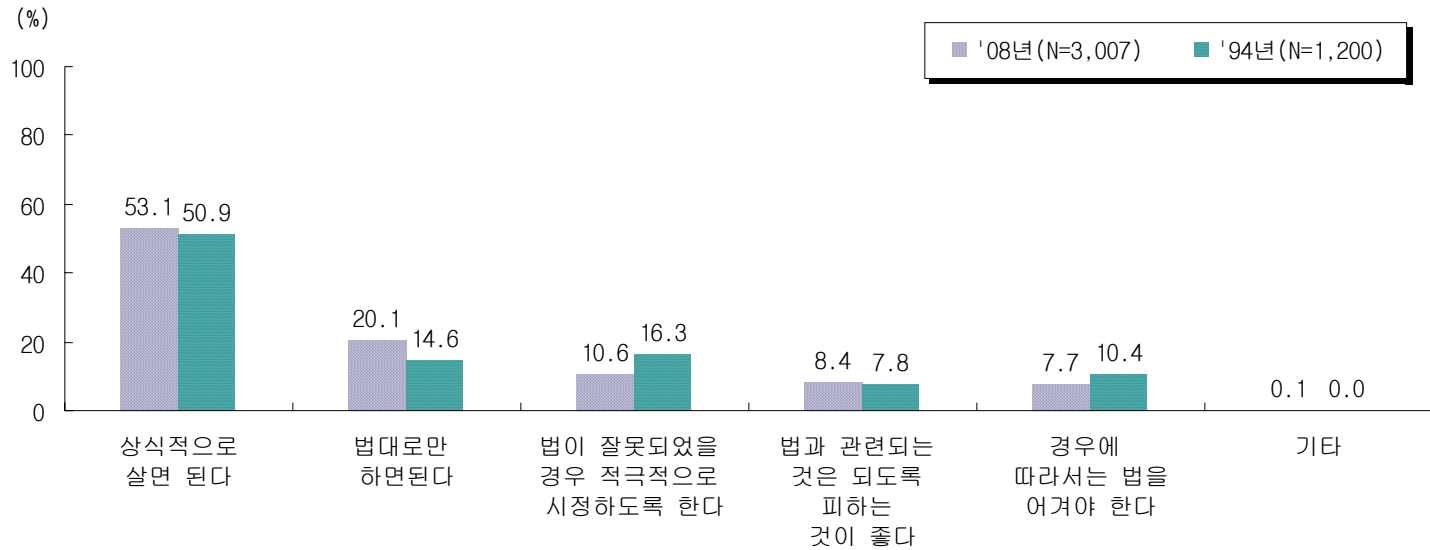
문18) ○○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피해를 입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8년 (N=3,007)	1994년 (N=1,200)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3.1	50.9
법대로만 하면 된다	20.1	14.6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0.6	16.3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4	7.8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7.7	10.4
기타	0.1	-
모름/무응답	0.0	-
계	100.0	100.0

【 】

- ▣ 피해입지 않고 사회생활을 하는 방법에 대하여,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53.1%) 또는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8.4%)라고 응답하여 여전히 우리나라 국민의 법생활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은 일면을 보여 주고 있다. 특히 1994년조사의 경우 보다 더 이러한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할 만하나, ‘법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응답이 소폭 증가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는 의견이 소폭 감소했다는 점에서 미미하나 향후 법생활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22】



	1991	1994	2008
불이익 없이 사회생활하는 방법	22. 가 가 ?	22. 가 가 ?	18)○○ 가 가 ?
	1)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6.3(1125) 2)법대로만 하면 된다 13.1(262) 3)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3(166) 4)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4.0(280) 5)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8.3(166)	1)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0.9(611) 2)법대로만 하면 된다 14.6(175) 3)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7.8(93) 4)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6.3(196) 5)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10.4(125)	1)상식적으로 살면 된다 53.1(1596) 2)법대로만 하면 된다 20.1(604) 3)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8.4(253) 4)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10.6(319) 5)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 7.7(232) 6)기타 0.1(3) 7) 모름/무응답 0.0(1)

【 】

▣ 피해입지 않는 방법과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는 의견은 계층이 낮을수록 우세한 반면, ‘법대로만 하면 된다’는 의견은 계층이 높아질수록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이 잘못되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시정한다’는 의견은 진보적 성향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보였다.

【 -39】

(%)

전 체	3,007	53.1	20.1	10.6	8.4	7.7	0.1	0.0	100.0
▣ 계층별 ▣									
하 층	1,339	55.6↑	17.7↓	10.5	8.0	8.2	0.0	0.0	100.0
중 간 층	1,431	52.6	20.9	10.7	8.7	7.0	0.1	0.0	100.0
상 층	237	41.9	28.9↓	10.6	9.1	9.1	0.5	0.0	100.0
▣이념성향별▣									
진 보	877	49.3	18.7	15.1↑	7.7	9.2	0.1	0.0	100.0
중 도	1,378	55.0	19.7	9.1	8.0	8.1	0.1	0.0	100.0
보 수	752	53.9	22.4	8.2	10.0	5.4	0.2	0.1	100.0

(1)

문19) ○○님은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어렵다	21.7 ↘ 86.8
어려운 편이다	65.1 ↘
어렵지 않은 편이다	12.5 ↘ 13.2
전혀 어렵지 않다	0.6 ↘

계(N=3,007)	10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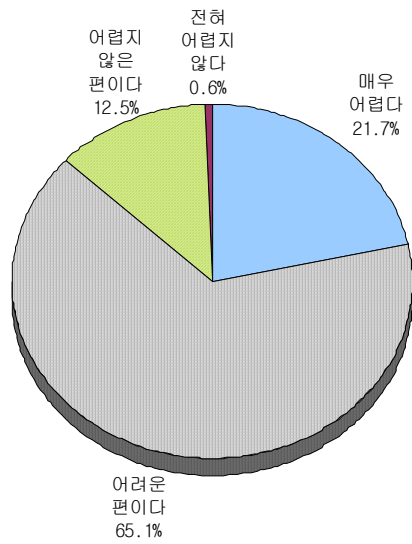
■ 법이 어느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의 상당수 (86.8%)가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종합적·체계적으로 법령을 순화하여 친근한 법령을 만들어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률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법제처는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¹¹⁶⁾ 이것은 법제선진국 내지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을 향한 발전적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특히 일본의 내각법제국 등의 관심을 끌기도 하였다.¹¹⁷⁾ 이러한 법제처의 노력은 선진적 법률문화의 실현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조사결과를 보면, 아직도 국민 중심의

116) 최송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의 창달, 법제 2006. 10, 2-4쪽 참조.

117) 임송학,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법제국을 다녀와서, 법제 2007. 2, 157쪽 참조.

법률문화가 완전히 정착되어 있지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 이에 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 -23】



II.

【 】

▣ 법의 난해성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법이 어렵다’는 의견은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40】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21.7	65.1	86.8	12.5	0.6	13.2	100.0
▣ 계층별 ▣								
하 층	1,339	23.5	65.3	88.8 ↑	10.8	0.5	11.2	100.0
중 간	1,431	20.4	65.8	86.2	13.0	0.8	13.8	100.0
상 층	237	19.9	60.3	80.2	19.4	0.4	19.8	1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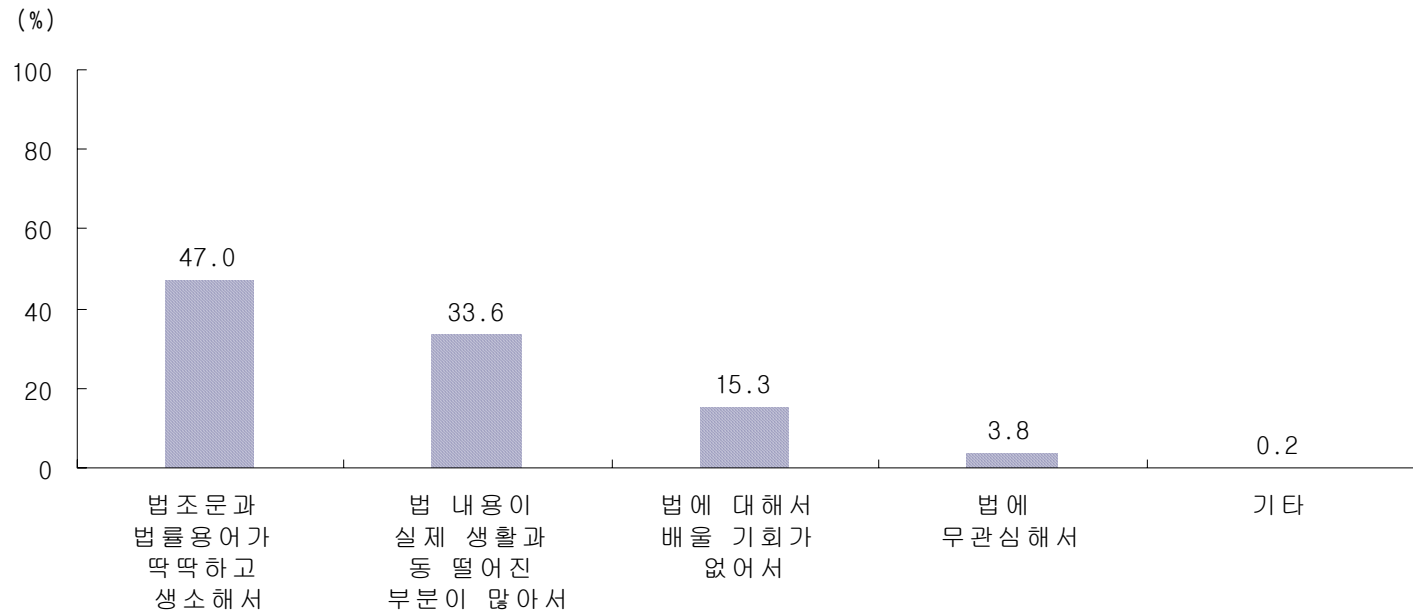
문19-1) 그럼, 어렵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 과	%
법조문과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	47.0
법 내용이 실제 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	33.6
법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없어서	15.3
법에 무관심해서	3.8
기타	0.2
모름/무응답	0.0
계(N=2,611)	100.0

【 】

- 법이 어렵다는 응답자(N=2,611)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조문과 법률용어가 딱딱하고 생소해서’라는 응답(47.0%)이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법내용이 실제생활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서’라는 의견(33.6%) 이 높게 나타났다.

【 -24】



7.

문20) ○○님은 본인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잘 알고 있다	1.3 ↘ 20.5
잘 아는 편이다	19.2 ↘
모르는 편이다	73.2 ↘ 79.5
전혀 모른다	6.3 ↘
모름/무응답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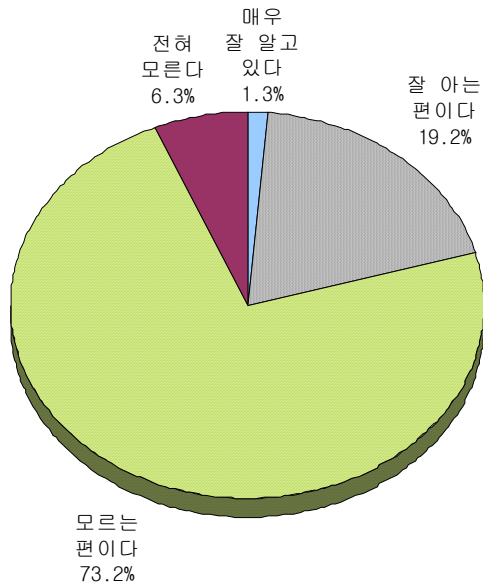
계(N=3,007)	100.0

【 】

- 스스로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나라 국민의 5명 중 4명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에 대한 무관심, 법의 난이도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나타난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법률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범국가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국회·대법원·법제처 등의 홈페이지나 각종 정보검색프로그램을 통하여 다양한 법령 및 법률지식을 검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법지식 획득 및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국민의 법률문화 선진화에 대한 관심과 의식이 법지식의 수준을 높이는데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법률지식의 공유·확산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국민의 법률문화선진

화에 대한 자발적 참여를 극대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진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현대적 과제라고 하겠다.

【 -25】



II.

【 】

▣ 법지식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하였을 때, ‘모른다’(85.9%)는 의견은 남자보다는 여자집단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력 및 계층이 낮을수록,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수록 이러한 응답이 높게 나왔다.

【 -42】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	
전 체	3,007	1.3	19.2	20.5	73.2	6.3	79.5	0.1	100.0
▣ 성 별 ▣									
남 자	1,485	1.5	25.5	27.0	68.8	4.1	72.9	0.1	100.0
여 자	1,522	1.0	13.1	14.1	77.5	8.4	85.9↑	0.0	100.0
▣ 학력별 ▣									
중졸 이하	523	1.3	13.7	15.0	71.9	13.0	84.9↑	0.2	100.0
고 졸	1,522	1.2	18.3	19.5	74.1	6.3	80.4↑	0.1	100.0
대재 이상	962	1.3	23.7	25.0	72.5	2.5	75.0↑	0.0	100.0
▣ 계층별 ▣									
하 층	1,339	1.0	14.5	15.5	76.3	8.1	84.4↑	0.1	100.0
중 간	1,431	1.4	19.5	20.9	74.1	5.0	79.1↑	0.0	100.0
상 층	237	1.8	44.0	45.7	50.8	3.5	54.3↑	0.0	100.0
▣ 이념성향별 ▣									
진 보	877	2.1	20.7	22.8	72.5	4.7	77.1↓	0.1	100.0
중 도	1,378	1.0	18.8	19.8	73.2	7.0	80.1↓	0.1	100.0
보 수	752	0.7	18.3	19.0	74.1	6.9	81.0↓	0.0	100.0

Ⅲ.

1.

일반국민의 법준수도에 관한 인식을 보다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2008년조사에서는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 법준수 자가진단 및 자신의 법 비준수 이유, 가장 시급히 퇴치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고, 권리의식 및 고발정신을 측정하기 위해서 뺑소니 목적시의 행동방법,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 횡단보도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 집단따돌림 대처방법에 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이들 중 ‘법준수 자가진단 및 법 비준수 이유’에 관한 문항은 1994년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반국민의 우리 사회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법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8년조사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집단따돌림 현상과 관련하여 ‘집단따돌림 대처방법’에 관한 일반국민의 의견을 묻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일반국민의 고발정신을 알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문항으로 ‘뺑소니 목적시의 행동방법’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그 외의 문항은 1994년조사에서의 문항을 일부 수정 및 변경하는 선에서 조정했다.

한편 준법정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나 본조사에서 그 개념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질문으로 다음의 세 가지 항목을 들 수 있다.

III.

- 문6) ○○님은 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21)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22)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 항목은 신뢰도 Cronbach 수치가 0.2에 불가하나 학문적인 조사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고 준법정신을 측정하기에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보아 세 항목의 응답수준을 합한 지수를 준법정신에 대한 지수로 활용하기로 한다. 문21)의 경우 약간 관련성이 떨어지나 문22)의 질문이 사회적 바람직성(Social Desirability)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대신 문21)과 같이 다른 사람에 대한 질문으로 가장하여 실제 반응을 이끌어 내는 기법도 종종 사용되는 만큼 지표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준법정신 지수의 중간값인 6.0을 기준으로 6.0에 해당하는 응답자를 제거하고 나머지 응답자를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다음의 표는 각집단의 표본수를 보여준다. 여기서 집단 1은 높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보유한 응답자 집단 그리고 집단 2는 낮은 수준의 준법정신을 보유한 응답자 집단을 말한다. 집단1은 785명의 응답자를 포함하며 집단 2는 961명의 응답자를 포함한다.

< >

유효	1.00	785	26.1	45.0	45.0
	2.00	961	32.0	55.0	100.0
	합계	1746	58.1	100.0	
결측	시스템결측값	1261	41.9		
	합계	3007	100.0		

우선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이 인구통계적으로 다른 특성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학력과 총수입에서는 차이가 없으니 계층별로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계층별로 보면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에는 더 많은 상위계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울러 더 나이가 많은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흔히 TV에 비추어지는 상위계층의 부도덕성의 이미지와는 정반대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 >

		N			
DQ1) <input type="checkbox"/> 학 력 별 <input type="checkbox"/>	1.00	785	2.14	.705	.025
	2.00	961	2.15	.664	.021
DQ2) <input type="checkbox"/> 총수입 별 <input type="checkbox"/>	1.00	785	2.84	6.061	.216
	2.00	961	3.44	10.341	.334
<input type="checkbox"/> 계 층 별 <input type="checkbox"/>	1.00	785	4.79	5.008	.179
	2.00	961	4.43	1.451	.047
<input type="checkbox"/> 연 령 별 <input type="checkbox"/>	1.00	785	44.3389	13.01901	.46467
	2.00	961	39.3819	12.80108	.41294

III.

< >

	Levene		t-							
	F		t		()			95%		
DQ1) □학 력 별□	3.880	.049	등분산이 가정됨	-1.514	1744	.607	-.017	.033	-.081	.048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511	1632.522	.609	-.017	.033	-.082	.048
DQ2) □총수입 별□	6.248	.013	등분산이 가정됨	-1.434	1744	.152	-.599	.418	-1.418	.220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506	1592.331	.132	-.599	.398	-1.379	.181
□계 층 별□	2.604	.107	등분산이 가정됨	2.115	1744	.035	.359	.170	.026	.691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1.942	891.812	.052	.359	.185	-.004	.721
□연 령 별□	.398	.528	등분산이 가정됨	7.988	1744	.000	4.95696	.62058	3.73980	6.17412
			등분산이 가정되지 않음	7.974	1663.822	.000	4.95696	.62164	3.73768	6.17624

아울러 직업군으로 높은 준법정신을 보유한 집단은 더 많은 자영업자와 화이트칼라 직업군에 속하는 응답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과 혼인 상태별로 보면 준법정신이 낮은 집단에는 상대적으로 많은 미혼 응답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DQ2) □ □							
			/	/						/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42	196	116	186	163	46	36	785
		준법정신집단의 %	5.4%	25.0%	14.8%	23.7%	20.8%	5.9%	4.6%	100.0%
		DQ2) □ 직업별 □의 %	48.3%	51.0%	35.3%	46.5%	50.0%	32.6%	45.6%	45.0%
	전체 %		2.4%	11.2%	6.6%	10.7%	9.3%	2.6%	2.1%	45.0%
	2.00	빈도	45	188	213	214	163	95	43	961
		준법정신집단의 %	4.7%	19.6%	22.2%	22.3%	17.0%	9.9%	4.5%	100.0%
DQ2) □ 직업별 □의 %		51.7%	49.0%	64.7%	53.5%	50.0%	67.4%	54.4%	55.0%	
전체 %		2.6%	10.8%	12.2%	12.3%	9.3%	5.4%	2.5%	55.0%	
전체	빈도		87	384	329	400	326	141	79	1746
	준법정신집단의 %		5.0%	22.0%	18.8%	22.9%	18.7%	8.1%	4.5%	100.0%
	DQ2) □ 직업별 □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		5.0%	22.0%	18.8%	22.9%	18.7%	8.1%	4.5%	100.0%

< >

			DQ3) □ □			
				/	/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611	29	145	785
		준법정신집단의 %	77.8%	3.7%	18.5%	100.0%
		DQ2) □ 직업별 □의 %	48.4%	51.8%	33.9%	45.0%
	전체 %		35.0%	1.7%	8.3%	45.0%
	2.00	빈도	651	27	283	961
		준법정신집단의 %	67.7%	2.8%	29.4%	100.0%
DQ2) □ 직업별 □의 %		51.6%	48.2%	66.1%	55.0%	
전체 %		37.3%	1.5%	16.2%	55.0%	
전체	빈도		1262	56	428	1746
	준법정신집단의 %		72.3%	3.2%	24.5%	100.0%
	DQ2) □ 직업별 □의 %		100.0%	100.0%	100.0%	100.0%
	전체 %		72.3%	3.2%	24.5%	100.0%

III.

이념 성향을 보면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응답자를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준법정신이 낮은 집단은 중도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상식과는 달리 진보성향의 응답자는 두 집단에 균형있게 분포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

			■					■
			1	2	3	4	5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25	219	329	196	16	785
		준법정신집단의 %	3.2%	27.9%	41.9%	25.0%	20.0%	100.0%
		■이념성향별■의 %	42.4%	44.2%	42.3%	49.6%	80.0%	45.0%
		전체%	1.4%	12.5%	18.8%	11.2%	.9%	45.0%
	2.00	빈도	34	276	448	199	4	961
		준법정신집단의 %	3.5%	28.7%	46.6%	20.7%	.4%	100.0%
		■이념성향별■의 %	57.6%	55.8%	57.7%	50.4%	20.0%	55.0%
		전체%	1.9%	15.8%	25.7%	11.4%	.2%	55.0%
전체	빈도	59	495	777	395	20	1746	
	준법정신집단의 %	3.4%	28.4%	44.5%	22.6%	1.1%	100.0%	
	■이념성향별■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3.4%	28.4%	44.5%	22.6%	1.1%	100.0%	

준법정신과 법교육에서의 중점 부문을 보면 준법정신의 낮은 집단에서 ‘법을 사용하는 능력’의 향상을 법교육의 중점부문으로 꼽은 응답자의 비율이 높아 법을 기술적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과 같이 보다 거시적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법의 역할을 인정하는 응답자가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에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되어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준법정신의 함양의 차원에서 두 집단간에는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 >

			15)						
			가						
준 법 정 신 집 단	1.00	빈도	244	26	391	38	84	2	785
		준법정신집단의 %	31.1%	3.3%	49.8%	4.8%	10.7%	.3%	100.0%
		15)법교육중점부문의 %	46.7%	47.3%	46.8%	28.8%	42.6%	40.0%	45.0%
		전체%	14.0%	1.5%	22.4%	2.2%	4.8%	.1%	45.0%
	2.00	빈도	278	29	444	94	113	3	961
		준법정신집단의 %	28.9%	3.0%	46.2%	9.8%	11.8%	.3%	100.0%
		15)법교육중점부문의 %	53.3%	52.7%	53.2%	71.2%	57.4%	60.0%	55.0%
		전체%	15.9%	1.7%	25.4%	5.4%	6.5%	.2%	55.0%
전 체	빈도	522	55	835	132	197	5	1746	
	준법정신집단의 %	29.9%	3.2%	47.8%	7.6%	11.3%	.3%	100.0%	
	15)법교육중점부문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29.9%	3.2%	47.8%	7.6%	11.3%	.3%	100.0%	

준법정신이 낮은 집단은 ‘법과 관련되는 것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법이 잘 못되었을 겨우 적극적으로 시정하도록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을 어겨야 한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어 집단에 속하는 응답자들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법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는 경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반면 높은 집단은 법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나 오히려 ‘상식적으로 살면 된다’에 응답한 시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준

Ⅲ.

법정신이 높은 집단의 응답자들은 사회체제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 보여진다.

그리고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은 범법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과 대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뽕소니 대처방법에 대한 질문 문26)에 대해 ‘당연히 신고한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량품 구매시 대처 반응을 묻는 문27)에 대해서도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라고 응답한 시민들이 상대적으로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에 많이 포함되어 개인적인 보상과 처리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통제 체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단호함도 엿보이는데 준법정신이 높은 집단은 치료비이외에 위자료 그리고 법에 의한 처벌을 원하는 응답자를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하고 있다.

< >

			26)					
준법정신집단	1.00	빈도	643	102	16	21	3	785
		준법정신집단의 %	81.9%	13.0%	2.0%	2.7%	.4%	100.0%
		26)뽕소니대처방법의 %	46.8%	69.7%	36.4%	32.3%	60.0%	45.0%
		전체%	36.8%	5.8%	.9%	1.2%	.2%	45.0%
	2.00	빈도	732	155	28	44	2	961
		준법정신집단의 %	76.2%	16.1%	2.9%	4.6%	.2%	100.0%
		26)뽕소니대처방법의 %	53.2%	60.3%	63.6%	67.7%	40.0%	55.0%
		전체%	41.9%	8.9%	1.6%	2.54%	.1%	55.0%
전체	빈도	1375	257	44	65	5	1746	
	준법정신집단의 %	78.8%	14.7%	2.5%	3.7%	.3%	100.0%	
	26)뽕소니대처방법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78.8%	14.7%	2.5%	3.7%	.3%	100.0%	

< >

			27)					
준법 정신 집단	1.00	빈도	245	254	255	26	5	785
		준법정신집단의 %	31.2%	32.4%	32.5%	3.3%	.6%	100.0%
		27)불량품구매시 대처반응의 %	44.4%	42.4%	50.7%	31.3%	55.6%	45.0%
		전체%	14.0%	14.5%	14.6%	1.5%	.3%	45.0%
	2.00	빈도	307	345	248	57	4	961
		준법정신집단의 %	31.9%	35.9%	25.8%	5.9%	.4%	100.0%
		27)불량품구매시 대처반응의 %	55.6%	57.6%	49.3%	68.7%	44.4%	55.0%
		전체%	17.6%	19.8%	14.2%	3.3%	.2%	55.0%
전체	빈도	552	599	503	83	9	1746	
	준법정신집단의 %	31.6%	34.3%	28.8%	4.8%	.5%	100.0%	
	27)불량품구매시 대처반응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31.6%	34.3%	28.8%	4.8%	.5%	100.0%	

Ⅲ.

< >

			28)						
			가	가					/
준법 정신 집단	1.00	빈도	56	139	388	191	10	1	785
		준법정신집단의 %	7.1%	17.7%	49.4%	24.3%	1.3%	.1%	100.0%
		28)횡단보도교통사고시 대처방법의 %	36.1%	40.3%	46.4%	49.9%	41.7%	33.3%	45.0%
		전체%	3.2%	8.0%	22.2%	10.9%	.6%	.1%	45.0%
	2.00	빈도	99	206	448	192	14	2	961
		준법정신집단의 %	10.3%	21.4%	46.6%	20.0%	1.5%	.2%	100.0%
		28)횡단보도교통사고시 대처방법의 %	63.9%	59.7%	53.6%	50.1%	58.3%	66.7%	55.0%
		전체%	5.7%	11.8%	25.7%	11.0%	.8%	.1%	55.0%
전체	빈도	155	345	836	383	24	3	1746	
	준법정신집단의 %	8.9%	19.8%	47.9%	21.9%	1.4%	.2%	100.0%	
	28)횡단보도교통사고시 대처방법의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체%	8.9%	19.8%	47.9%	21.9%	1.4%	.2%	100.0%	

2.

강제규범으로서의 법규범은 사회적 요청의 산물이지만, 그 제도적 시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사회적 폐습을 조장하게 된다. 법규범의 궁극적 효력은 공권력의 발동으로 나타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구성원의 법의식 수준의 정도에 따라 그 준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¹¹⁸⁾ 즉, 법규범의 현실적합성이 확보되고, 법 집행에 있어서 구성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적 강제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준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선진적·이상적 법치국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부터 법의 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 등을 조사하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으며, 이것은 법문화의 선진화와 국가구성원들의 법의식 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화 이후 제정된 성문법으로서의 법은 일제시대부터 군사정권에 이르기까지 국민을 억압하고 부정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인식되었고, 법집행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로 일컬어지기도 하였다. 근래에도 부정 정치인들의 사면과 엄청난 상속세를 교묘히 피해 가는 재벌의 행태 등은 국민들에게 권력층과 ‘가진 자’들에 대한 법의 무력함을 새삼 확인하게 하고,¹¹⁹⁾ 동시에 일반국민들의 준법의식을 희박하게 만들고 있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기 십상이고, 위에서부터 법이 무시되는 상황이므로 자연히 국민들의 준법의식은 희박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다. 2008년조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영하는 결과를 찾아 볼 수 있다. 즉, 우리 사회에서 법이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이 비교적 많았고(62.8%),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118) 정극원, 법 경시풍조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195쪽 참조.

119) 김시업·김지영, 한국인의 법의식 : 법리(法理)와情理(情理)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2003, 68쪽.

Ⅲ.

이유로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34.3%)과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라는 응답(20.1%)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강구되어야 만 선진법치사회가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1)

문21) ○○님은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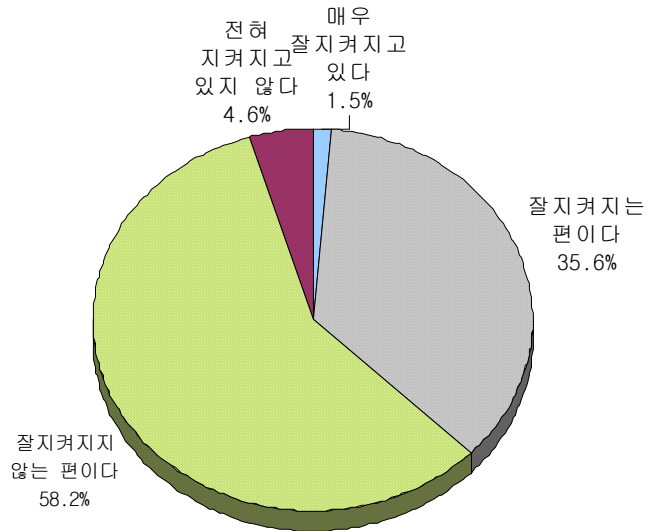
결 과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5 ↘ 37.1
잘 지켜지는 편이다	35.6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58.2 ↘ 62.8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4.6 ↘

계(N=3,007)	100.0

【 】

▣ 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묻은 결과, ‘지켜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62.8%)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 -26】



【 】

- 우리 사회의 법준수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의견은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학력 및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다.

III.

【 -43】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1.5	35.6	37.1	58.2	4.6	62.8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0.8	29.5	30.3	63.5	6.2	69.7 ↑	100.0
고 졸	1,522	2.2	36.6	38.8	56.5	4.7	61.2	100.0
대재 이상	962	0.8	37.5	38.4	58.1	3.6	61.6	100.0
▣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1.3	37.0	38.3	58.1	3.7	61.7 ↓	100.0
중·소 도시	1,260	1.5	35.5	37.0	57.6	5.4	63.0	100.0
읍 / 면	333	2.7	30.4	33.0	61.2	5.8	67.0 ↓	100.0
▣ 계 층 별 ▣								
하 층	1,339	1.4	33.3	34.7	60.0	5.3	65.3 ↑	100.0
중 간	1,431	1.4	37.2	38.6	57.3	4.1	61.4	100.0
상 층	237	2.9	39.4	42.3	54.0	3.7	57.7	1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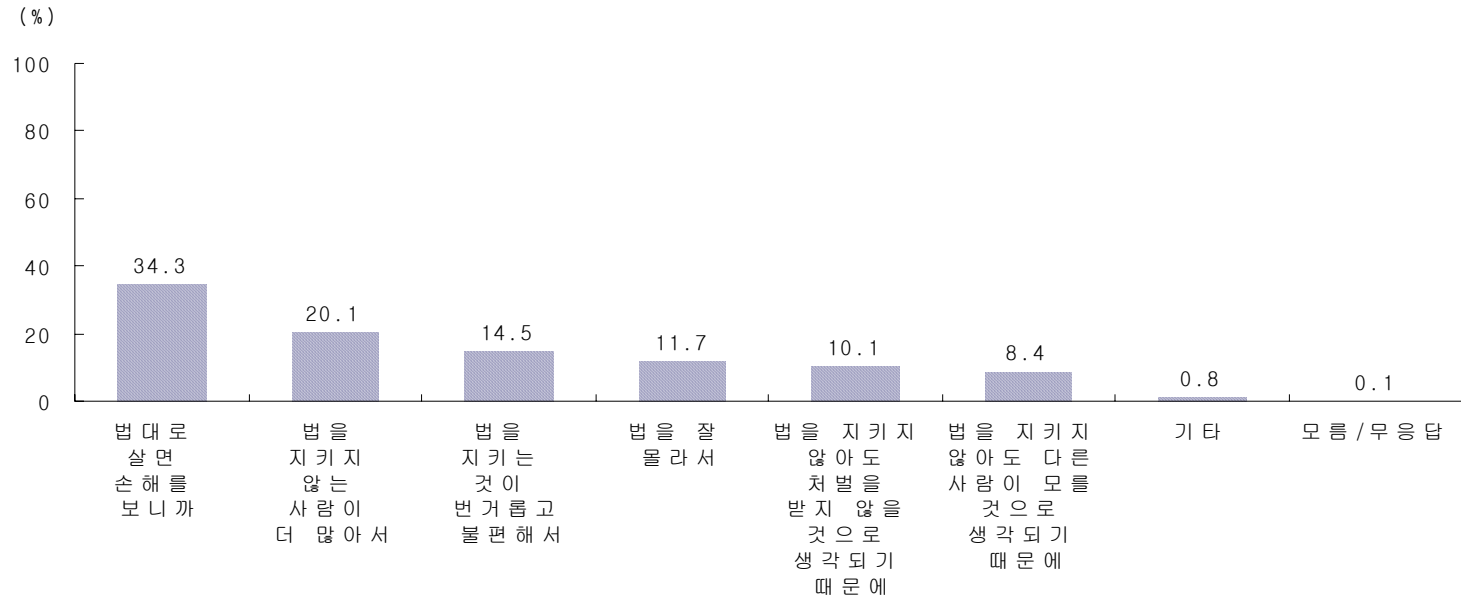
문21-1) 그럼,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34.3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0.1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4.5
법을 잘 몰라서	11.7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0.1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8.4
기타	0.8
모름/무응답	0.1
계(N=1,889)	100.0

【 】

- ▣ 우리 사회에서 ‘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N=1,889)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34.3%)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라는 응답(20.1%)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 -27】



Ⅲ.

【 -11】 1991 • 1994 -

	1991	1994	2008
준법정신	10.	10.	21)○○
	가)	가)	?
	?	?	?
	1)그렇다 17.6(352)	1) 그렇다 21.1(253)	1)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5(46)
	2)그렇지 않다 82.4(1645)	2) 그렇지 않다 78.9(946)	2)잘 지켜지는 편이다 35.6(1072)
			3)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58.2(1751)
			4)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4.6(138)

	1991	1994	2008
	<p>) 가 — ?</p> <p>1)법이 불공평하므로 19.9(326) 2)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2.6(206) 3)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61.8(1043) 4)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1(395) 5)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10.4(170)</p>	<p>) 가 — ?</p> <p>1)법의 절차가 복잡하고 자주 바뀌니까 32.5(305) 2)법이 불공평하므로 21.3(200) 3)법의 집행이 엄격하지 못하므로 24.9(234) 4)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 11.5(108) 5)법 이외의 다른 방법이 편리하므로 9.8(92)</p>	<p>21-1)(21 ‘3.4 ’) 가 , ? 1)법을 잘 몰라서 11.7(220) 2)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 14.5(274) 3) 법 대 로 살 면 손 해 를 보 니 까 34.3(648) 4)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8.4(159) 5)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10.1(191) 6)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서 20.1(380) 7)기타 0.8(15) 8)모름/무응답 0.1(3)</p>

3. 가

(1) 가

문22) ○○님은 본인 스스로 법을 어느 정도 잘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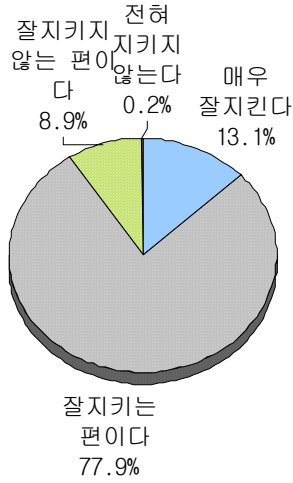
결 과	%
매우 잘 지킨다	13.1 ↗ 90.9
잘 지키는 편이다	77.9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8.9 ↗ 9.1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0.2 ↓

계(N=3,007)	100.0

【 】

- 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에 이어 본인의 법준수 여부에 대하여 물은 결과, 응답자의 대다수(90.9%)가 법을 잘 지킨다고 응답하여 우리 사회의 법준수 실태 결과와 큰 차이를 보였다.

【 -28】 가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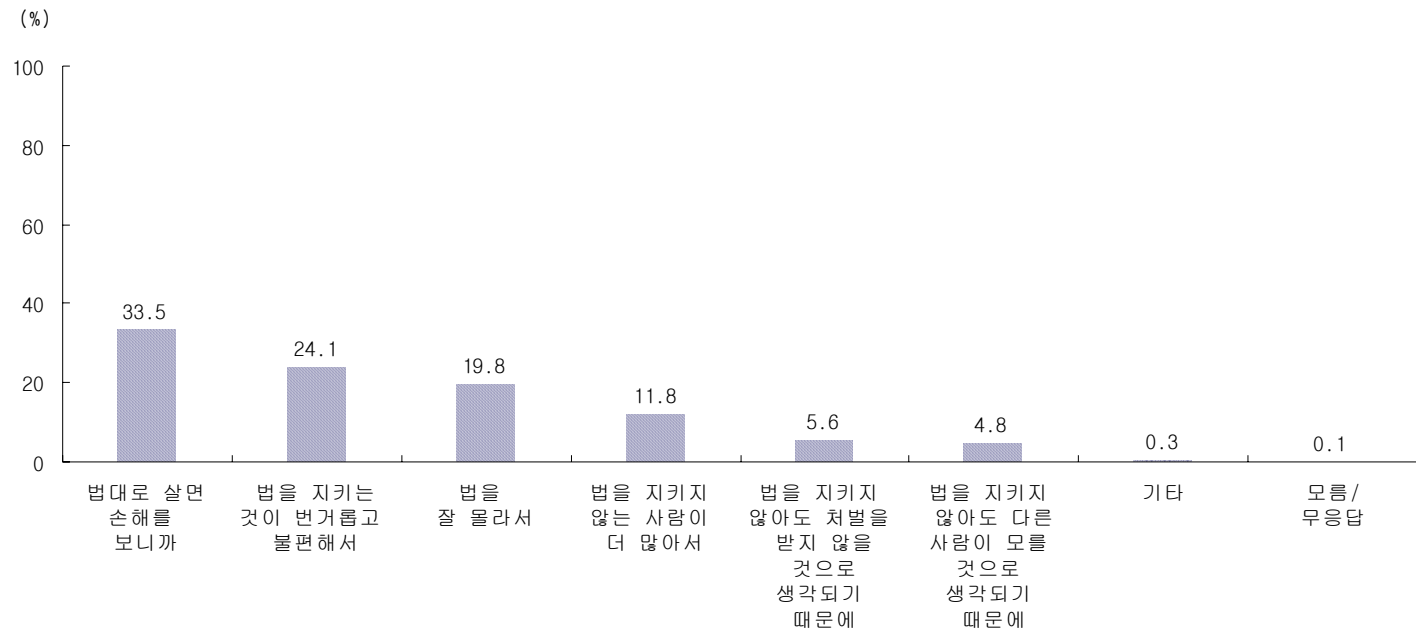
■ 본인의 법준수에 대해서 ‘잘 지킨다’는 의견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하였을 때,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러한 의견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5】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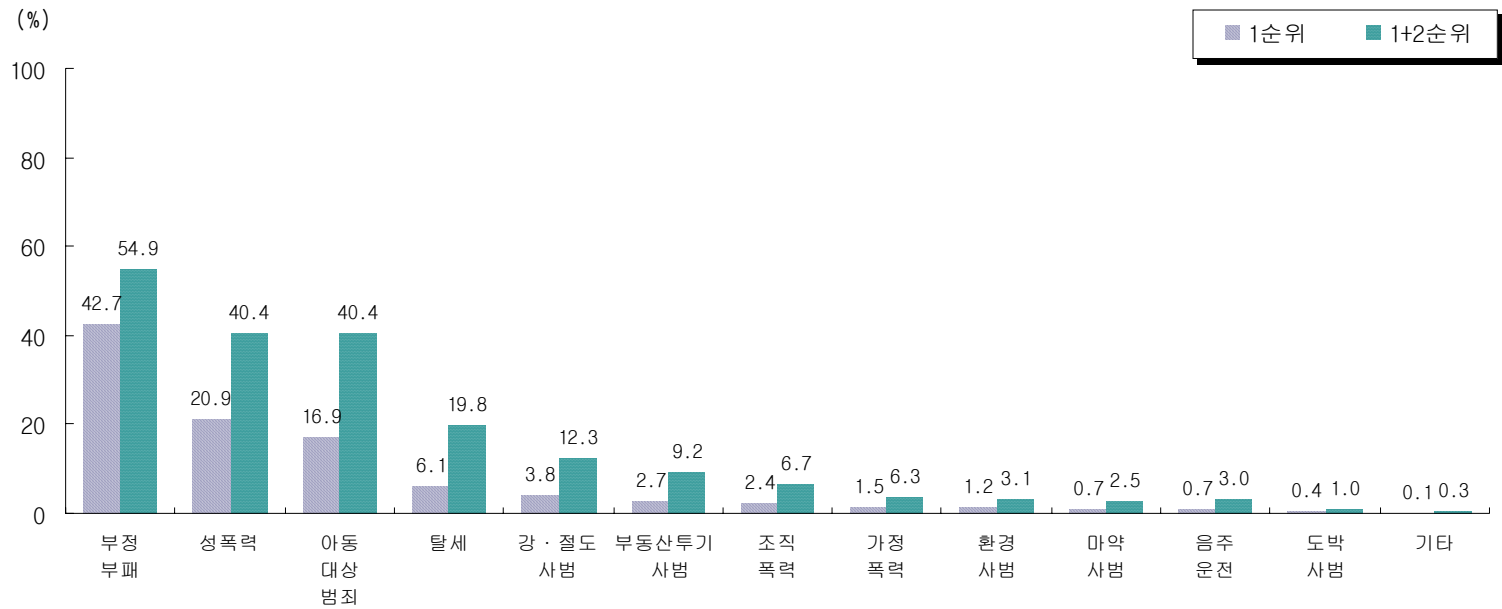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13.1	77.9	90.9	8.9	0.2	9.1	100.0
■ 연 령 별 ■								
19~29 세	632	6.6	75.7	82.4	17.5	0.2	17.6	100.0
30~39 세	690	9.8	82.1	91.9	7.5	0.6	8.1	100.0
40~49 세	679	11.0	80.4	91.4	8.6	0.0	8.6	100.0
50세 이상	1,007	20.8	74.6	95.3	4.6	0.1	4.7	100.0

【 -29】



【 -30】 가



Ⅲ.

【 -12】 1991 • 1994 -

	1991	1994	2008
	16. <u>가</u>	16. <u>가</u>	23)○○ <u>가</u>
	?	?	?
	가)	가)	가
			(1순위)
시급히 퇴 치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1)부정부패 56.0(1116)	1)부정부패 61.7(740)	1)부정부패 42.7(1285)
	2)탈세 3.4(68)	2)탈세 6.2(74)	2)탈세 6.1(185)
	3)부동산투기사범 24.1(481)	3)부동산투기사범 11.3(136)	3)부동산투기사범 2.7(81)
	4)공해사범 16.0(318)	4)환경사범 13.2(158)	4)환경사범 1.2(35)
	5)기타 0.5(10)	5)경제사범 7.2(86)	5)성폭력 20.9(629)
	6)기타 0.4(5)	6)조직폭력 2.4(71)	6)조직폭력 2.4(71)
			7)마약사범 0.7(21)
			8)도박사범 0.4(11)
			9)강·절도사범 3.8(115)
			10)음주운전 0.7(20)

	1991	1994	2008
))	
1)성폭행	18.9(377)	1)성폭행	36.0(431)
2)가정파괴범	50.0(997)	2)조직폭력배	26.1(313)
3)조직폭력배	21.3(425)	3)마약사범	8.3(99)
4)마약사범	8.8(176)	4)강·절도사범	25.0(300)
5)기타	0.9(18)	5)음주운전	4.2(50)
		6)기타	0.4(5)
			11)아동대상범죄 16.9(507)
			12)가정폭력 1.5(44)
			13)기타 0.1(2)
			14)모름/무응답 0.0(1)
			(2순위)
			1)부정부패 12.1(365)
			2)탈세 13.7(412)
			3)부동산투기사범 6.5(196)
			4)환경사범 2.0(59)
			5)성폭력 19.4(584)
			6)조직폭력 4.3(131)
			7)마약사범 1.8(53)
			8)도박사범 0.7(20)
			9)강·절도사범 8.4(253)
			10)음주운전 2.4(71)
			11)아동대상범죄 23.6(709)
			12)가정폭력 4.8(144)
			13)기타 0.3(8)

5.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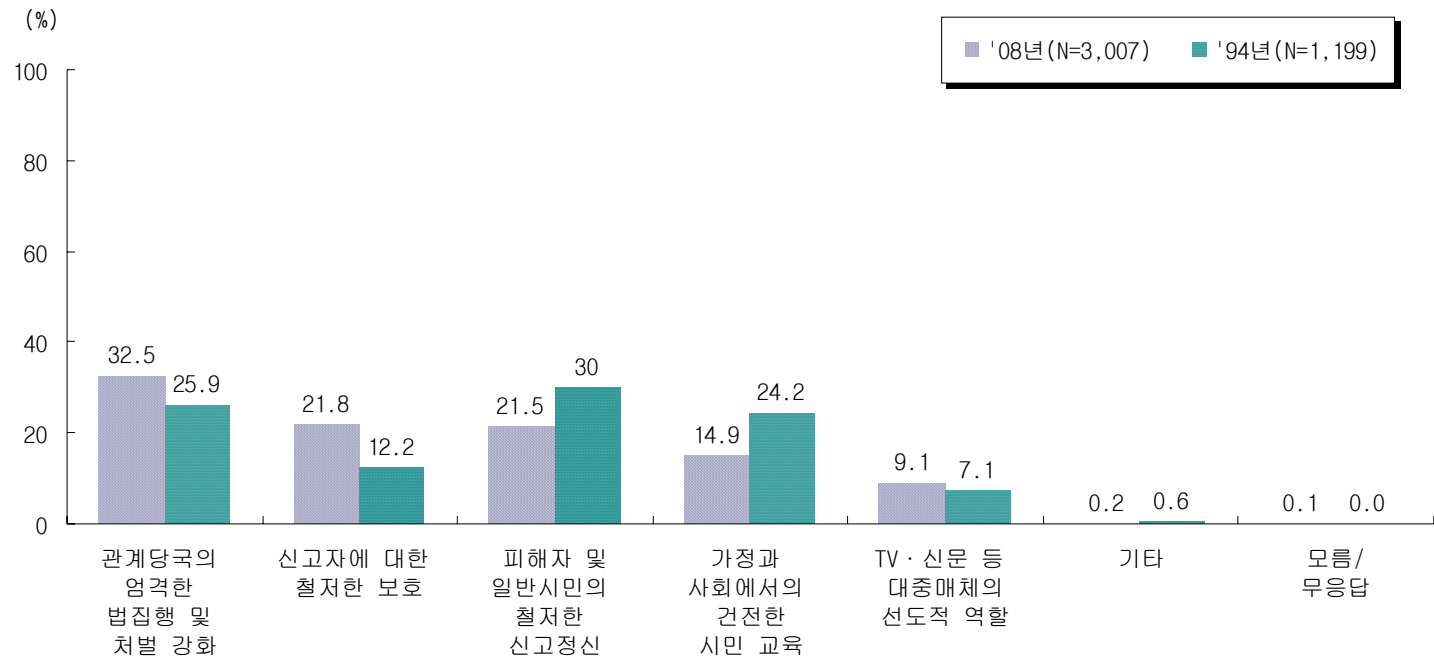
문24) 범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8년 (N=3,007)	1994년 (N=1,199)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32.5	25.9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21.8	12.2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1.5	30.0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	14.9	24.2
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9.1	7.1
기타	0.2	0.6
모름/무응답	0.1	-
계	100.0	100.0

【 】

- 범죄없는 사회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과 관련하여, 2008년 조사에서는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32.5%)라는 의견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 반면, 1994년조사에서는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30.0%)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2008년조사에서도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이외에 ‘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 교육’을 각각 21.8%, 21.8%, 14.9% 선택하였다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결국 범죄 없는 사회는 국가기관의 엄격한 법집행,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과 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이 동시에 병행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제임을 알 수 있다.

【 -31】 가



【 -13】 1994

-

가

	1994	2008
범죄 없는 사회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 가 ?	24) 가 ?
	1)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30.0(360)	1)피해자 및 일반시민의 철저한 신고정신 21.5(647)
	2)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12.2(146)	2)신고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21.8(657)
	3)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25.9(311)	3)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강화
	4)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24.2(290)	4)가정과 사회에서의 건전한 시민교육 32.5(976)
	5)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7.1(85)	5)TV·신문 등 대중매체의 선도적 역할 14.9(447)
	6)기타 0.6(7)	6)기타 0.2(5)
		7)모름/무응답 0.1(2)

Ⅲ.

【 】

▣ 범죄없는 사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계당국의 엄격한 법집행 및 처벌 강화’라는 의견은 보수적인 집단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47】

가

(%)

						가 TV·		/		
전	체	3,007	32.5	21.8	21.5	14.9	9.1	0.2	0.1	100.0
▣ 이념 성향별 ▣										
진	보	877	28.9	23.3	22.2	18.4	6.8	0.3	0.1	100.0
중	도	1,378	32.4	23.5	20.9	13.6	9.6	0.1	0.0	100.0
보	수	752	36.7▼	17.1	22.0	13.2	10.7	0.1	0.2	100.0

6.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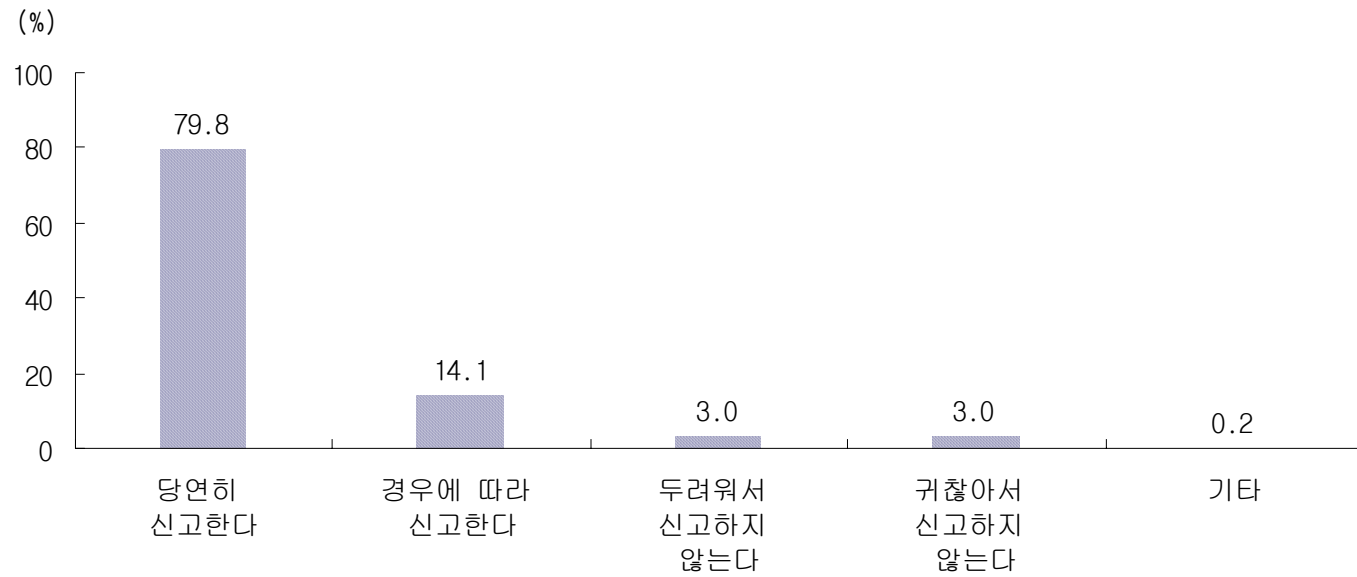
문25) ○○님이 뺑소니 장면을 목격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 과	%
당연히 신고한다	79.8
경우에 따라 신고한다	14.1
두려워서 신고하지 않는다	3.0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는다	3.0
기타	0.2
계(N=3,007)	100.0

【 】

- ▣ 뺑소니 장면 목격과 관련하여, 전체 응답자의 5명 중 4명은 ‘당연히 신고한다’고 응답하였고, 신고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0%도 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들의 고발정신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32】



(2)

권리의식이 약할 경우 법적 문제 발생시 법을 활용하는 능력이나 용의가 약화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적극적인 준법의식이 실정될 우려가 있다. 과거 한국인은 권리의식이 약하여 법을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위한 보장수단으로 여기기보다는 국가통치 내지 국민에 대한 규제의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참여적 시민문화의 정착을 통하여 국민의 권리의식이 신장되었다.¹²⁰⁾ 2008년 조사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는 결과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즉 불량품을 구입했을 경우 끝까지 따져서 정상제품으로 바꾸거나(32.9%) 또는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30.5%)는 의견이 많았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를 받는다는 의견(48.4%) 이외에 법적 절차를 밟는다는 의견(24.3%)도 상당수 존재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학교내 집단따돌림과 관련한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는 비공식적 처리방법, 즉 학생들끼리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거나(7.6%) 또는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만나 처리하는 방법(30.8%) 외에 공식적인 처리방법, 즉 학교에 해결을 요청하거나(42.2%) 또는 경찰에 신고하는 등 법적 해결방법(17.8%)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이 상당수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장기전세주택,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화장시설 등 소위 혐오시설의 지역 내 입주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현상이 팽배하는 등 권리의식의 향상이 공동체 전체의 차원에서 역효과를 가져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할 만큼 달라진 것이 권리의식의 오늘날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120)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118-119쪽.

Ⅲ.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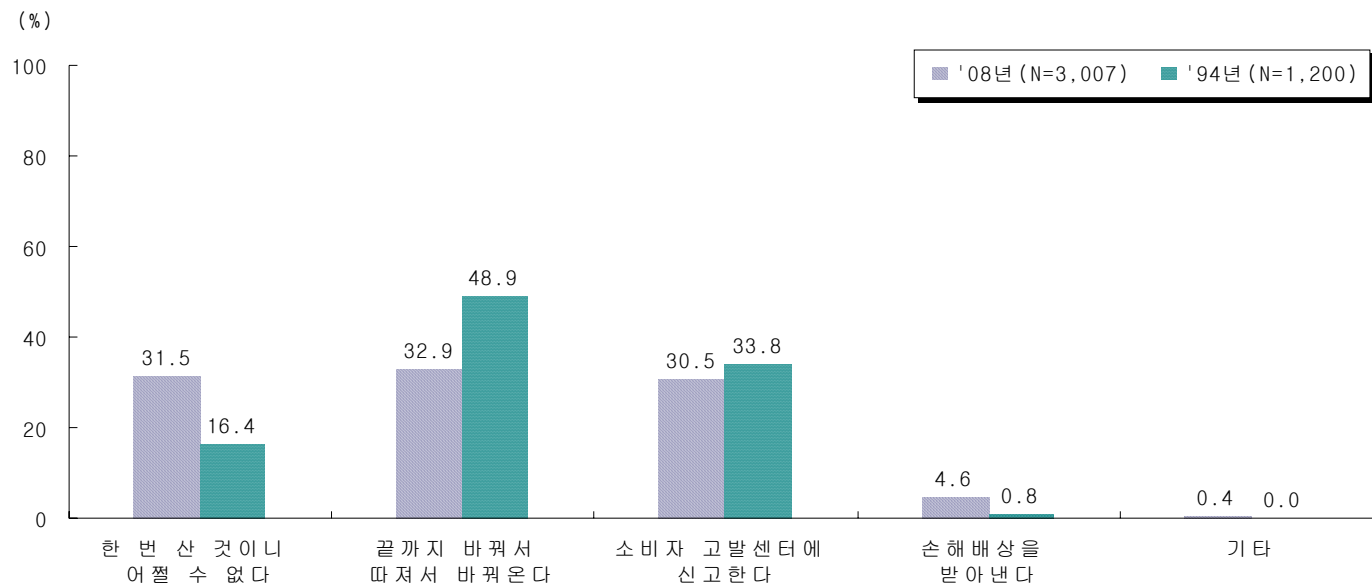
문26) 만약, 불량제품이나 불량식품 등을 샀을 경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결 과	2008년 (N=3,007)	1994년 (N=1,200)
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31.5	16.4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	32.9	48.9
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0.5	33.8
손해배상을 받아낸다	4.6	0.8
기타	0.4	-
모름/무응답	0.0	-
계	100.0	100.0

【 】

- ▣ 불량품 구입시 대처방법에 대해 물은 결과, '08년도 조사에서는 '손해배상을 받아낸다'(4.6%)는 응답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들이 30% 선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한편 '94년도 조사에서는 '끝까지 따져서 바꿔온다'는 의견이 확연히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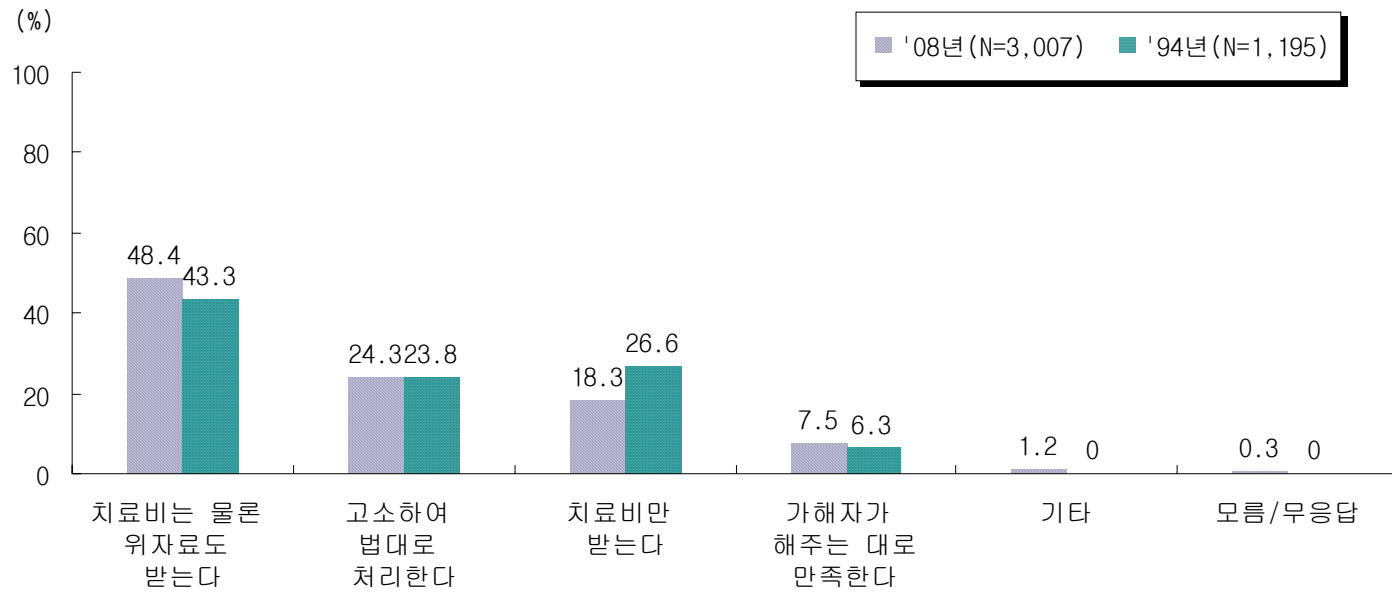


Ⅲ.

【 -14】 1991 · 1994 -

	1991	1994	2008
시급히 퇴치 하여야 할 범죄의 유형	24. (TV,) ? 1)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20.6(412) 2)끝까지 따져서 바뀌온다 48.8(975) 3)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29.7(593) 4)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 낸다 1.0(19)	24. (TV,) ? 1)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16.4(197) 2)끝까지 따져서 바뀌온다 48.9(587) 3)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3.8(406) 4)재판을 하여 손해배상까지 받아 낸다 0.8(10)	26) , ? 1)한 번 산 것이니 어쩔 수 없다 31.5(948) 2)끝까지 따져서 바뀌온다 32.9(990) 3)소비자 고발센터에 신고한다 30.5(916) 4)손해배상을 받아낸다 4.6(138) 5)기타 0.4(13) 6)모름/무응답 0.0(1)

【 -34】



Ⅲ.

【 -15】 1991 · 1994 -

	1991	1994	2008
권리의식	25. 가 ?	25. 가 ?	27) ○○ ,
	1)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8(136) 2)치료비만 받는다 25.2(502) 3)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2(861) 4)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4.8(494)	1)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6.3(75) 2)치료비만 받는다 26.6(318) 3)치료비는 물론 위자료까지 받는다 43.3(517) 4)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3.8(285)	? 1)가해자가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 7.5(225) 2)치료비만 받는다 18.3(550) 3)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는다 48.4(1456) 4)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 24.3(731) 5)기타 1.2(35) 6)모름/무응답 0.3(9)

【 】

▣ 교통사고 발생시 대처방법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가해자가 해주는 대로 만족한다’와 ‘치료비만 받는다’는 의견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치료비는 물론 위자료도 받는다’는 의견은 연령이 낮고, 학력이 높을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우세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고소하여 법대로 처리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 -49】

(%)

		가	가						
전 체	3,007	7.5	18.3	48.4	24.3	1.2	0.3	100.0	
▣연 령 별 ▣									
19~29 세	632	5.9	20.1	54.3↑	18.3	1.5	0.0	100.0	
30~39 세	690	5.4	15.6	53.8	22.7	2.2	0.3	100.0	
40~49 세	679	9.5	17.9	44.9	26.9	0.7	0.1	100.0	
50세 이상	1,007	8.6	19.4	43.4	27.4↓	0.6	0.7	100.0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9.2↑	20.3↑	41.0	28.6	0.3	0.6	100.0	
고 졸	1,522	8.0	20.0	47.4	23.3	1.0	0.3	100.0	
대재 이상	962	5.7	14.6	54.0↓	23.5	2.0	0.2	100.0	
▣지역크기별 ▣									
대 도시	1,415	6.6	16.9	51.2	24.0	1.0	0.2	100.0	
중 소도시	1,260	7.9	18.6	46.4	25.6	1.3	0.3	100.0	
읍 / 면	333	9.6	23.1↓	44.2	20.6	1.6	0.9	100.0	

다.¹²²⁾ 특히 학생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집단따돌림은 점차 집단화되어 가는 추세이며,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가고 있다.¹²³⁾ 이와 같이 학생 및 청소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학교폭력이나 집단따돌림, 그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는 이미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도외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학교 등의 당국에서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2008년조사에서도 자녀가 집단따돌림을 당할 경우 해결방법과 관련하여,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이 (42.2%) 가장 많았으며, 뒤를 이어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는 의견이 30.8%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이제 학생·청소년들이 직면한 집단따돌림이라는 현상은 개인이 풀어야 할 숙제가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임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즉, 학생 및 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쾌적한 학교생활이나 그 후의 성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집단따돌림을 방지하고, 학생 및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범국가적 대처방안이 시급한 실정에 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2005년 9월에 상습폭력교사퇴출 등 부적격교원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06년 8월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고, 2006년 3월에는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다.¹²⁴⁾

122) 장미향·성한기, 집단따돌림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지지의 관계, 사회 및 성격, 한국심리학회지 제21권 제1호, 2007, 77면 참조.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학교폭력피해자 중 집단따돌림이 35.9%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의 조사를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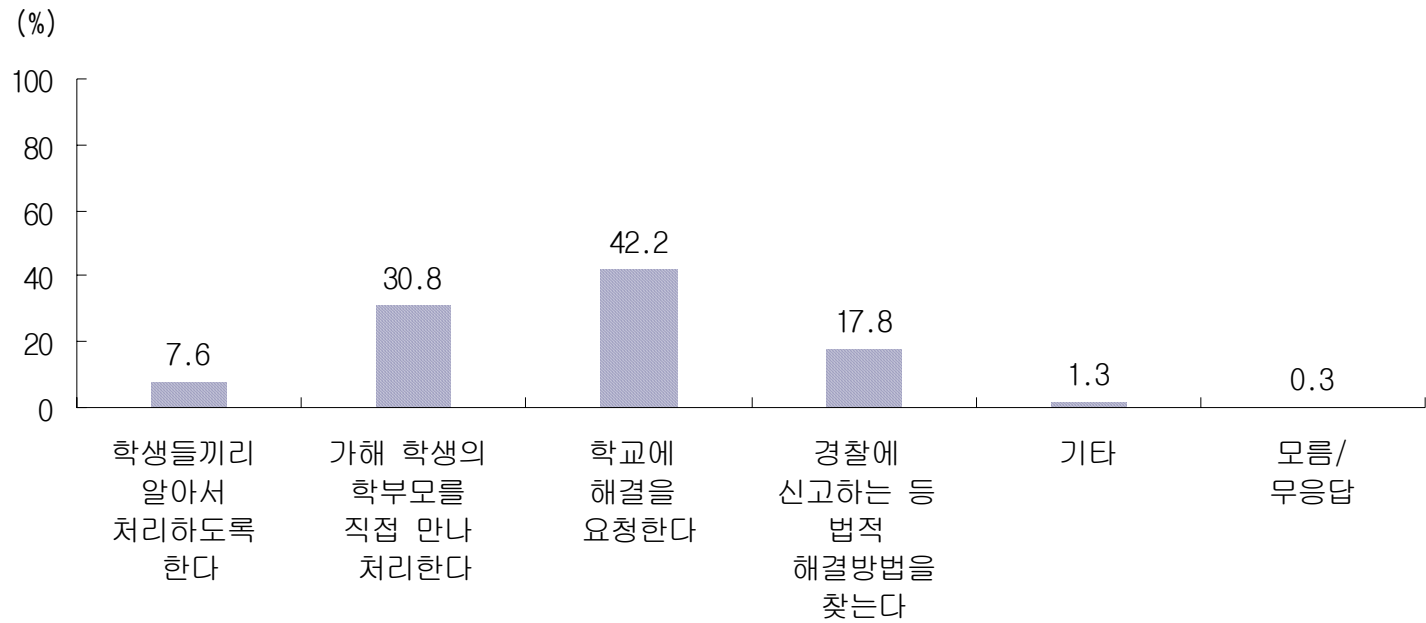
123) 강은희·이은희·임은정,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상담 및 심리치료(한국심리학회지) 제14권 제2호(2002), 446면 참조.

124) 이상윤, 앞의 논문, 18쪽 참조.

Ⅲ.

특히 2006년 2월에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학교폭력에 의한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보호를 선언하고 있다. 앞으로는 무시나 따돌림·악질적인 욕설·괴롭힘·낙서·물건감추기 등을 통한 신체적·심리적 공격과 폭력이나 말에 의한 따돌림·폭행 및 괴롭힘 등에 의한 생명·신체·자유·재산·정신에 대한 공격을 포괄하는 집단따돌림에 관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법제정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학생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과 그들의 미성숙과 합리성의 결여에 따른 보호와 후견의 필요성 및 일정한 권리의 제약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을 것이다.

【 -35】



Ⅲ.

【 】

▣ 집단따돌림의 해결방안을 살펴보면, ‘학교에 해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 및 계층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가해학생의 학부모를 직접 만나 처리한다’는 의견은 상층집단(38.6%)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0】

(%)

			가					
전 체	3,007	7.6	30.8	42.2	17.8	1.3	0.3	100.0
▣연 령 별 ▣								
19~29 세	632	14.7	31.3	29.2	21.7	2.4	0.7	100.0
30~39 세	690	7.7	28.4	40.3	22.3	1.1	0.2	100.0
40~49 세	679	5.8	32.4	46.0	13.7	1.6	0.3	100.0
50세 이상	1,007	4.2	31.2	49.1▼	15.0	0.5	0.1	100.0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3.2	32.3	45.0▲	18.9	0.5	0.0	100.0
고 졸	1,522	7.7	32.0	42.0	17.0	1.0	0.4	100.0
대재 이상	962	9.8	28.2	41.0	18.5	2.2	0.2	100.0
▣계 층 별 ▣								
하 층	1,339	7.5	30.7	43.4▲	16.4	1.6	0.4	100.0
중 간	1,431	7.9	29.7	41.9	19.2	1.1	0.2	100.0
상 층	237	6.0	38.6 ▲	37.7	17.0	0.6	0.1	100.0

제 6 장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

I.

우리나라 사법제도의 골격은 일제 식민지하에서 만들어졌고, 해방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를 겪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사법제도는 기형화되고, 법종사자는 한낱 법기술자로 전락하였으며, 국민의 법의식은 왜곡될 수밖에 없었다. 일반 국민들은 사법제도가 국민의 참여가능성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 국민적 견제와 감시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마치 당연한 사실처럼 받아들여야 했다.¹²⁵⁾

법원과 검찰의 권위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구조, 문턱은 높고, 법조인은 불친절하며, 법률서비스를 받는 데 드는 비용도 엄청나다. 이 모두가 국민의 법률생활의 일부가 된 지 오래이다. 이것은 앞서 살펴본 ‘법률서비스 이용경험’ 및 ‘법률서비스 접근용이 여부’에 관한 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사법권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었지, 국민을 위한 법률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식되지 않았다. 또한 사법제도는 권력자 혹은 내부인사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고 운영될 뿐, 일반국민의 편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전관예우와 같은 폐해는 기존의 법조계가 일종의 범죄적 공생을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¹²⁶⁾

사법의 궁극적인 주인이 국민이라고 할 때 사법은 더 이상 국민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 아니라 주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시민의 권익과 편의에 봉사하는 법원, 값싸고 질 높은 서비스로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호사, 양질

125) 박은정, 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위하여 - 규범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한국인상 -, 정책포럼 2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0. 2, 21쪽.

126) 박은정, 앞의 논문, 21-22쪽.

의 법률서비스를 위한 적정 법조인의 수, 세계화에 걸맞는 법조인력 충원제도와 법학교육, 공익변호사에 의한 법률구조, 시민의 사법참여가 도모되어야 필요성이 제기되었고,¹²⁷⁾ 이러한 인식의 일환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일명 ‘로스쿨’)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등 사법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2008년조사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일반국민의 태도를 살펴보기 위하여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문항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권력이나 재력 혹은 국민여론이 재판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으로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질문과도 연결된다. 두 번째는 사법개혁의 실례로써 최근에 도입된 로스쿨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고 이러한 제도로 인해 기대되는 점이나 효과적 시행방안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것이다.

조사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중 상당수가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등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적 당위성과 정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법은 입법이나 행정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국민은 청원권의 행사를 통하여 또는 언론매체를 통하여 재판을 비판할 수 있다.¹²⁸⁾ 그러나 국민은 자신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도록 하여서는 안 되며, 오히려 사법기관이 다른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독립을 지킬 수

127) 박은정, 앞의 논문, 22쪽.

128)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1015-1016쪽.

있도록 국민이 방패막이의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 권력이 다원화되어 상호균형을 유지하면서 적절히 서로를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필요하다. 사법권은 입법권이나 행정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정치적인 권력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적절히 통제하기 위하여는 사법권의 권위를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된다.¹²⁹⁾ 따라서 여론에 의하여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받거나 왜곡되는 것은 사법권의 독립과 사법기능의 공정성에 많은 우려가 되지만, 조사결과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오히려 여론이 권력이나 재력의 재판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는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사결과에 의하면 200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국민적 당위성과 정당성이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재판관상’에 관한 논쟁이 참고로 될 것으로 생각된다. 즉, 복잡한 사회변화에 따라 국민의 사법에 대한 요구도 다양화되고 있으며, 사법권은 그러한 국민이나 여론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구체적 사안의 성질에 맞추어 전문적·합리적 견제를 관철하는 것에 그 존재의의가 있다는 견해¹³⁰⁾에 대하여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재판관상의 중심적 이념은 국민에게 열려진, 국민과 연대하는, 국민적 기반에 입각한 자세에 있다는 견해¹³¹⁾의 대립이다. 이러한 두 견해의 대립에 있어서 결정적인 차이는 사법의 행정관청화에 대한 해결책을 “사법의 전문성·합리성·독립성”에서 구하는가 아니면 “국민에게 열려진, 국민과 연대하는 사법” 즉 사법에 대한 국민참가에서 구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¹³²⁾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단순히 국민주권이나 사법의

129) 손경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과 언론의 역할, 법과 사회 제18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0, 270쪽.

130) 樋口陽一, 比較の中の日本国憲法, 岩波書店, 1979, 190頁.

131) 外尾健一·廣中俊雄·樋口陽一, 人權と司法, 勁草書房, 1984, 337頁.

132) 이상윤, 일본헌법제도론, 세종출판사, 2006, 455-456쪽 참조.

민주화라는 말로는 사법에 대한 국민참가제도의 충분한 논거가 될 수 없으며, 진정한 권리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열린, 국민과 연대하는 사법으로서의 국민참가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끝으로 로스쿨제도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로스쿨제도를 인지하는 사람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제도 또한 인지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로스쿨 제도의 시행 효과에 대하여,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이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효과는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법조계 비리나 부패감소’라는 구조적인 측면은 학력 및 계층이 낮을수록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에서 결국 학력이나 계층이 낮은 국민들에게 접근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학력이나 계층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법률서비스를 자신의 일이 아닌 남의 일처럼 간주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경우 도입 초기인 만큼 제도에 대한 올바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국민참여재판제도를 그저 ‘들어 봤다’는 수준의 인지율은 높을지 모르나, 그 취지나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제도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 -51】 : / ↔

(%)

		30)		
29) /	(→)	바람직함	바람직하지 않음	계
	영향을 미침	77.0	23.0	100.0
	영향을 미치지 않음	60.5	39.5	100.0

【 -52】 : ↔

(%)

		33)		
31)	(→)	있다	없다	계
	있다	84.9	15.1	100.0
	없다	40.7	59.3	100.0

II. . /

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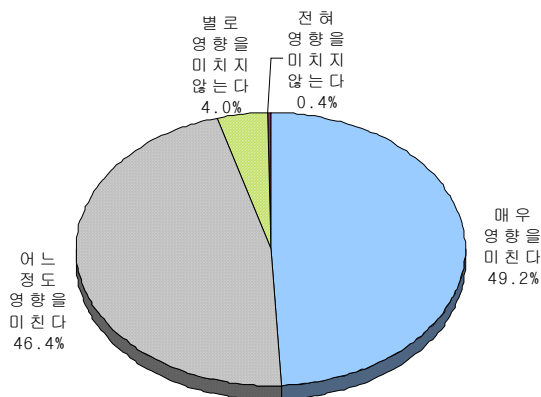
문29) ○○님은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의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영향을 미친다	49.2 95.6
어느정도 영향을 미친다	46.4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 4.4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4
모름/무응답	0.0
계(N=3,007)	100.0

【 】

■ 권력이나 재력이 재판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대다수(95.6%)로 나타났다.

【 -36】 .



【 -16】 1991 . 1994 - .

	1991	1994	2008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32. ?	32. ?	29)○○ ?
	1)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40.3(805)	1)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36.4(437)	?
	2)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3.9(1076)	2)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56.9(682)	
	3)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7(93)	3)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9(59)	1)매우 영향을 미친다 49.2(1479) 2)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46.4(1395)
	4)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2(24)	4)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8(21)	3)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0(122) 4)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0.4(1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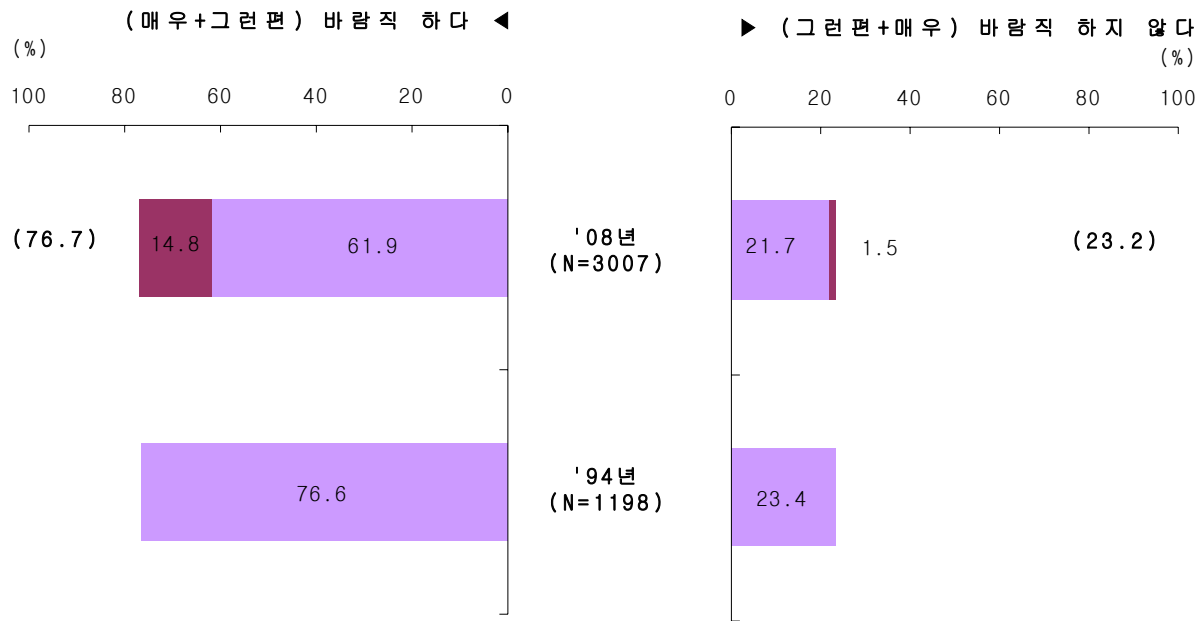
문30) ○○님은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느 정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8년 (N=3,007)	1994년 (N=1,198)
매우 바람직하다	14.8 ↘ 76.7	- ↘ 76.6
바람직한 편이다	61.9 ↘	- ↘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21.7 ↘ 23.2	- ↘ 23.4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	1.5 ↘	- ↘
모름/무응답	0.0	-
계(N=3,007)	100.0	100.0

【 】

- ▣ 국민의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관련하여, 2008년 조사와 1994년 조사 모두에서 전체 응답자의 4명 중 3명 이상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 -37】



【 -17】 1991 · 1994 -

	1991	1994	2008
여론이 재판 에 미치는 영향	33. ?	33. ?	30)○○ ? ?
	1)바람직하다 78.8(1575) 2)바람직하지 않다 21.2(423)	1)바람직하다 76.8(918) 2)바람직하지 않다 23.4(280)	1)매우 바람직하다 14.8(445) 2)바람직한 편이다 61.9(1863) 3)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다 21.7(652) 4)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1.5(46) 5)모름/무응답 0.0(1)

【 】

▣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상층으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 -53】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	
전 체	3,007	14.8	61.9	76.7	21.7	1.5	23.2	0.0	100.0
▣ 계 층 별 ▣									
하 층	1,339	15.0	58.7	73.7	24.2	2.1	26.3	0.0	100.0
중 간	1,431	13.6	64.8	78.4	20.5	1.0	21.6	0.0	100.0
상 층	237	20.9	63.0	83.8▼	14.6	1.6	16.2	0.0	100.0

Ⅲ.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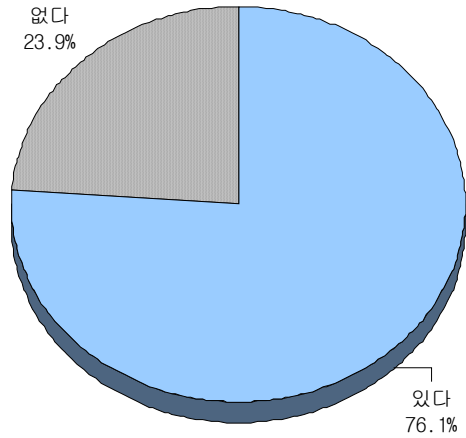
문31)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님은 오늘 이전에 ‘로스쿨 제도’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 과	%
-----	-----
있다	76.1
없다	23.9
-----	-----
계(N=3,007)	100.0

【 】

▣ 로스쿨 제도에 대해 76.1%의 응답자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38】



【 】

- ▣ 로스쿨 제도의 인지도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자보다는 남자(82.4%)가, 직업별로는 학생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학력 및 수입이 높을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54】

(%)

전 체	3,007	76.1	23.9	100.0
성 별				
남 자	1,485	82.4 ↑	17.6	100.0
여 자	1,522	70.0	30.0	100.0
학 력 별				
중졸 이하	523	48.2 ↓	51.8	100.0
고 졸	1,522	78.4	21.6	100.0
대재 이상	962	87.7 ↓	12.3	100.0
직 업 별				
농/수/축산업	108	46.4	53.6	100.0
자 영 업	719	78.5	21.5	100.0
블루 칼라	549	74.9	25.1	100.0
화이트 칼라	647	83.2	16.8	100.0
전업 주부	597	65.4	34.6	100.0
학 생	245	89.9 ↑	10.1	100.0
무직 / 기타	142	80.2	19.8	100.0
총 수입별				
199만원 이하	701	61.9 ↓	38.1	100.0
200~299만원	910	76.0	24.0	100.0
300~399만원	776	82.5	17.5	100.0
400만원 이상	592	84.6	15.4	100.0
모름/무응답	28	81.1 ↓	18.9	100.0
지역크기별				
대 도 시	1,415	78.7 ↑	21.3	100.0
중 소 도시	1,260	74.9	25.1	100.0
읍 / 면	333	69.9	30.1	100.0
계 층 별				
하 층	1,339	73.2 ↓	26.8	100.0
중 간 층	1,431	77.0	23.0	100.0
상 층	237	87.4 ↓	12.6	100.0
이념성향별				
진 보	877	81.5 ↑	18.5	100.0
중 도	1,378	73.9	26.1	100.0
보 수	752	73.9	26.1	1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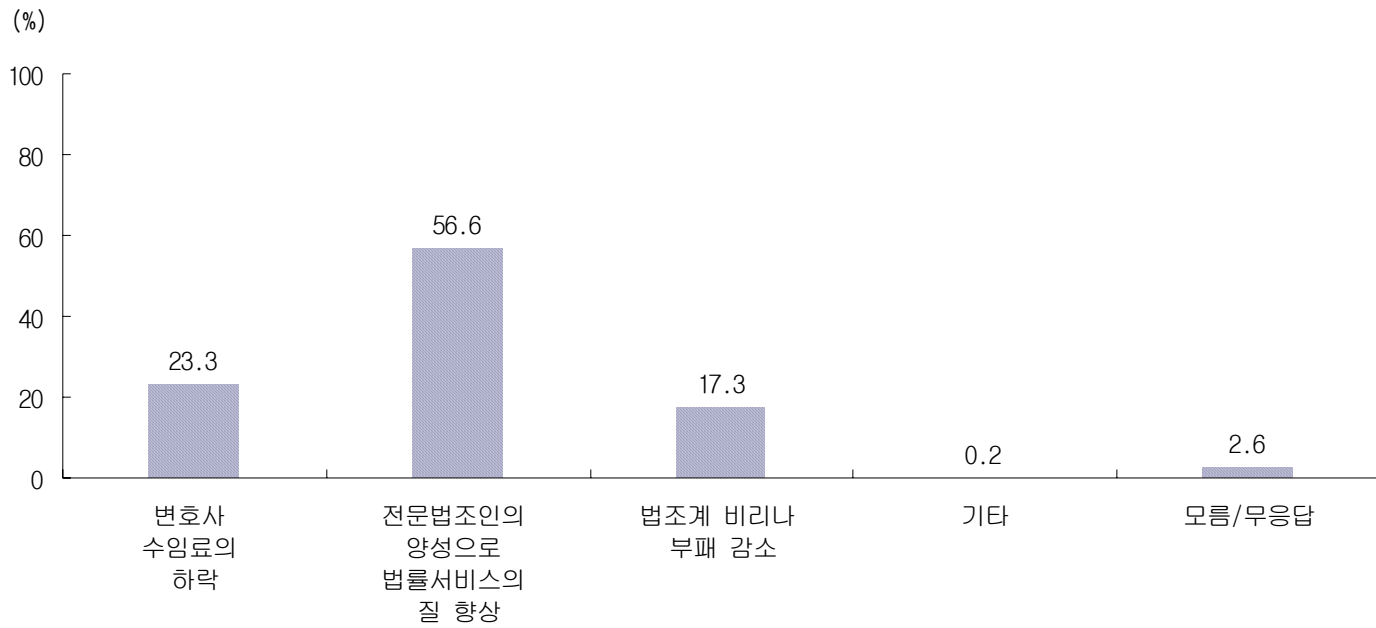
문32) ○○님은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큰 효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변호사 수입료의 하락	23.3
전문 법조인의 양성으로 법률 서비스의 질 향상	56.6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	17.3
기타	0.2
모름/무응답	2.6
계(N=3,007)	100.0

【 】

- 로스쿨 제도의 시행으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하여 물은 결과, 과반수 이상(56.6%)이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을 들었으며, 그 다음으로 ‘변호사 수입료의 하락’과 ‘법조계 비리나 부패 감소’라는 의견 등이 높았다.

【 -39】



【 】

▣ 로스쿨 제도의 효과에 대하여, ‘법률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의 효과는 학력 및 계층이 높을수록 높은 반면, ‘법조계 비리나 부패감소’라는 구조적인 측면은 학력 및 계층이 낮을수록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 -55】

(%)

전 체	3,007	23.3	56.6	17.3	0.2	2.6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21.9	51.6 ↓	21.3 ↑	0.6	4.6	100.0
고 졸	1,522	23.3	56.0 ↓	18.7 ↑	0.8	1.1	100.0
대재 이상	962	24.2	60.3 ↓	13.0 ↑	1.5	1.0	100.0
▣ 계 층 별 ▣							
하 층	1,339	24.7	54.0 ↓	18.0 ↑	1.3	2.0	100.0
중 간	1,431	22.2	58.1 ↓	17.1 ↑	0.9	1.7	100.0
상 층	237	22.7	62.3 ↓	14.7 ↑	0.2	0.1	100.0

IV.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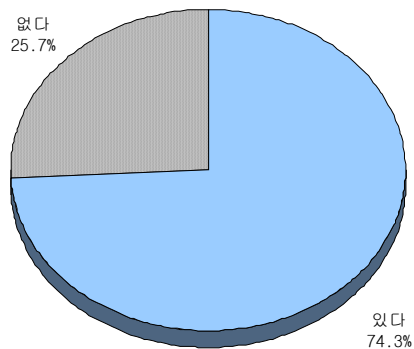
문33) ‘국민참여재판제도’가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습니다. ○○님은 오늘 이전에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듣거나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결 과	%
있다	74.3
없다	25.7
계(N=3,007)	100.0

【 】

-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 정도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40】



【 】

-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인지도와 관련하여 특성별 차이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편이었다. 우선, '알고 있다'는 응답은 여자보다는 남자집단(81.3%)에서 우세하였고, 학력 및 수입이 높을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그리고 진보성향 응답자일수록 높게 나타나 '로스쿨제도 인지도'에 대한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 -56】

(%)

전 체	3,007	74.3	25.7	100.0
▣ 성 별 ▣				
남 자	1,485	81.3 ↑	18.7	100.0
여 자	1,522	67.5	32.5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53.4	46.6	100.0
고 졸	1,522	75.0	25.0	100.0
대재 이상	962	84.6 ↓	15.4	100.0
▣ 총 수입별 ▣				
199만원 이하	701	62.8	37.2	100.0
200~299만원	910	75.1	24.9	100.0
300~399만원	776	78.4	21.6	100.0
400만원 이상	592	81.0	19.0	100.0
모름/무응답	28	80.5 ↓	19.5	100.0
▣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78.9 ↑	21.1	100.0
중소 도시	1,260	71.0	29.0	100.0
읍 / 면	333	67.2	32.8	100.0
▣ 이념 성향별 ▣				
진 보	877	77.3 ↑	22.7	100.0
중 도	1,378	73.6	26.4	100.0
보 수	752	72.1	27.9	100.0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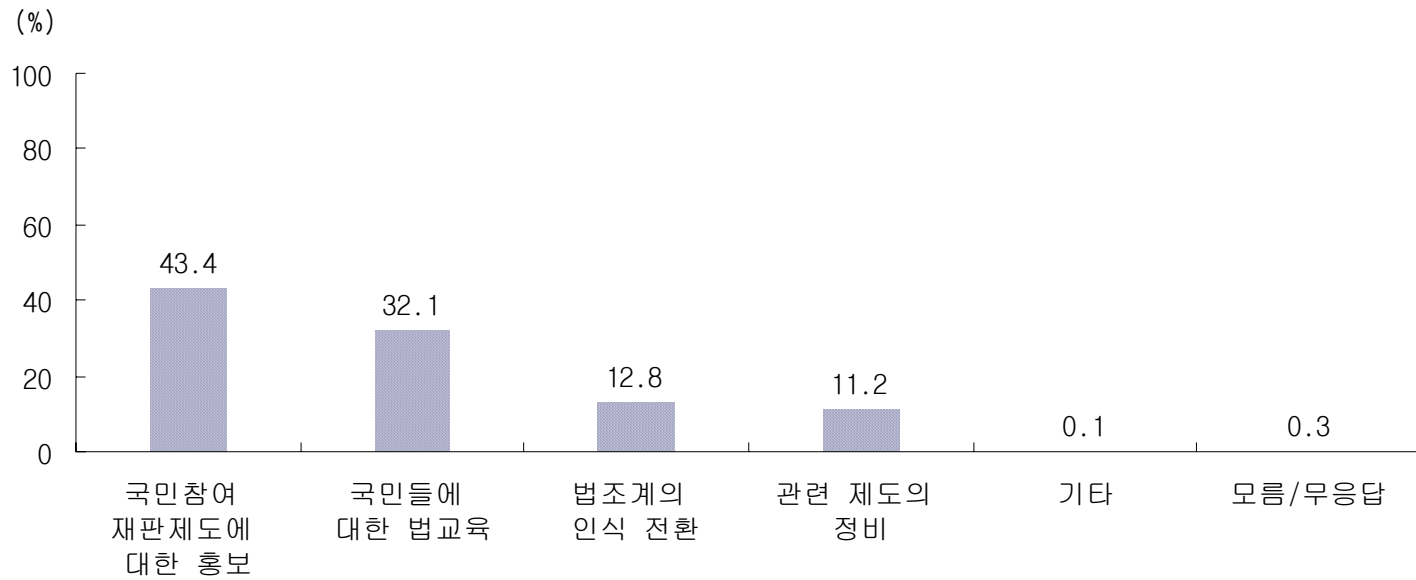
문34) ○○님은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국민참여 재판제도에 대한 홍보	43.4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	32.1
법조계의 인식 전환	12.8
관련 제도의 정비	11.2
기타	0.1
모름/무응답	0.3
계(N=3,007)	100.0

【 】

-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제도에 대한 홍보’라는 의견이 43.4%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32.1%)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비교적 높은 비율을 보였다.

【 -41】



【 】

- 국민참여재판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의견을 살펴보면,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고, 계층이 낮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관련제도 정비의 필요성’의 경우 상층의 경우(20.3%)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특히 ‘국민들에 대한 법교육’의 경우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따라서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등에서 국민참여재판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법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57】

(%)

전 체	3,007	43.4	32.1	12.8	11.2	0.1	0.3	100.0
■ 연 령 별 ■								
19~29 세	632	38.3	40.2↑	9.8	11.6	0.0	0.1	100.0
30~39 세	690	41.0	31.1	13.7	13.8	0.0	0.4	100.0
40~49 세	679	45.2	29.7	14.7	10.2	0.2	0.0	100.0
50세 이상	1,007	47.1↓	29.5	12.8	10.0	0.2	0.4	100.0
■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42.6	30.5	13.5	13.1	0.2	0.2	100.0
중소 도시	1,260	44.9	33.0	12.2	9.5	0.1	0.3	100.0
읍 / 면	333	41.3	35.7↓	12.1	10.0	0.2	0.6	100.0
■ 계 층 별 ■								
하 층	1,339	45.5↑	30.4	14.3	9.1	0.1	0.6	100.0
중 간	1,431	42.2	33.9	11.9	11.7	0.2	0.0	100.0
상 층	237	38.9	30.9	9.7	20.3 ↑	0.0	0.1	100.0

제 7 장 현행 법제에 대한 태도

현행 법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국민법 의식조사의 최종임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법의식과 현행 법령과의 괴리 정도에 대한 측정과 분석이 정확하다면, 국가의 입법정책에 더할 나위 없는 지원과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의식조사가 곧바로 법의 제정 및 개정에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최소한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¹³³⁾

현행 법제에 대한 일반국민의 견해를 조사함에 있어서 현행 법제 중 조사대상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작업이다.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시의성을 유지하되, 나아가 국가의 입법정책 전반에 대한 일반국민의 요구를 도출해 낼 수 있는 선택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이러한 점에 유의하여, i) 현실에 맞지 않는 법, ii) 헌법에 대한 의견, iii) 정치관계법, iv)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 소재, v)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등을 내용으로 총 11가지 문항을 선정하였다. 1994년조사의 경우와 달리 2008년조사에서는 ‘헌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을 새로이 추가하였고, 1994년조사의 경우에 i) 현실에 맞지 않는 법과 관련하여 질문하였던 ‘동성동본 결혼’에 대한 견해,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을 대신하여 ‘인터넷 실명제’, ‘안락사 허용 여부’, ‘사형제 존치 여부’ 등에 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ii) 정치관계법에 관한 문항의 경우에는 1994년조사에서는 일련의 ‘정치개혁법’이 잘 지켜지기 위하여 필요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것에 반하여, 2008년조사에서는 정치부패를 줄이고, 정치의 투명화, 선진화를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과 선거법 준수 정도 및 비준수 이유에 대해서 물었다. iii) 그 외에 노사관계법 및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관한 문항의 경우에는 큰 틀에서의 변화 없이 문장 및 용어를 수정하는 선에서만 조정했다.

133)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134쪽.

I.

현실에 맞지 않는 법제도로써 가장 많이 논의되고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 정책, 즉 인터넷 실명제, 안락사 허용, 사형제 폐지에 대한 문항을 구성하였다.

1.

인터넷 실명제는 사이버 공간이 확대됨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이다. 인터넷은 우리의 생활에서 많은 편리함과 혜택을 주고 있고,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생활기반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편리함과 많은 혜택의 이면에는 사이버 폭력·범죄, 명예훼손 등의 역기능들이 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7월에 시행된 ‘본인확인제’는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 할 경우, 해당 게시판 관리·운영자가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로써, 게시판에 정보를 게재하지 않는 단순 이용자의 경우에는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1회 본인확인 후에는 정보를 게재할 때마다 본인확인을 거칠 필요 없으며, 본인확인을 하고 난 후에는 ID나 필명 등을 사용하여 정보를 게재할 수 있다.

인터넷실명제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표현과 사회적 약자의 발언기회 보장을 위해서는 익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표현의 자유보다는 표현에 대한 책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익명의 표현으로 인한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인터넷실명제에 관한 논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게시판문화와 세계적으로 유일한

주민등록제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세계적으로 예외적인 논쟁사안이라고 하겠다.¹³⁴⁾ 이러한 논쟁은 사이버스페이스를 통한 인간의 활동과 그로 인하여 야기되는 분쟁은 날로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음에 반하여 법의 세계는 그 만큼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¹³⁵⁾ 특히 인터넷기술의 발전속도에 비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론적·제도적 발전속도가 보조를 맞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¹³⁶⁾

문35) ○○님은 인터넷 실명제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필요하다	38.6 ↑ 79.7
필요한 편이다	41.2 ↓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6.1 ↑ 20.1
전혀 필요하지 않다	4.0 ↓
모름/무응답	0.2
계(N=3,007)	100.0

134)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289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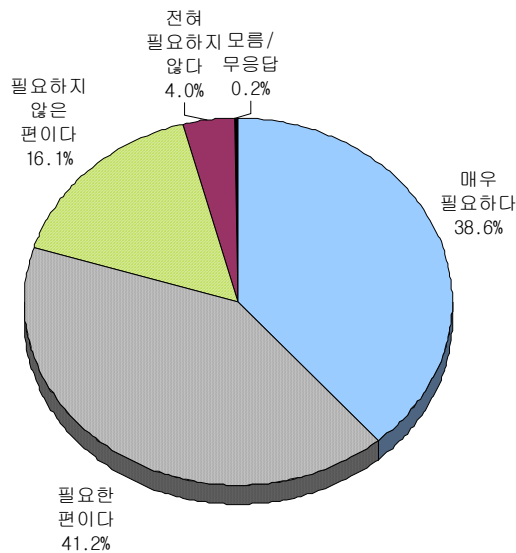
135)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87쪽 참조.

136)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2, 289쪽 참조.

【 】

▣ 인터넷 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물은 결과, 우리나라 국민의 4명 중 3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이 인터넷실명제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상당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성은 익명성의 순기능을 유지하면서 익명성의 역기능을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사회적 합의과정의 하나로서 2008년조사의 결과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입법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 -42】



【 】

▣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면, ‘필요하다’는 응답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상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학력과 계층이 높을수록, 대도시로 갈수록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실제 인터넷 사용자’들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여 진다.

【 -58】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	
전 체	3,007	38.6	41.2	79.2	16.1	4.0	20.1	0.2	100.0
▣연 령 별 ▣									
19~29 세	632	45.6	38.2	83.7▲	11.0	5.3	16.3	0.0	100.0
30~39 세	690	44.8	37.8	82.6	13.2	4.2	17.4	0.0	100.0
40~49 세	679	39.3	41.0	80.3	16.6	3.1	19.7	0.0	100.0
50세 이상	1,007	29.4	45.5	74.9	20.8	3.6	24.5	0.7	100.0
▣학 령 별 ▣									
중졸 이하	523	21.9	51.9	73.9	23.3	1.7	25.0	1.1	100.0
고 졸	1,522	38.3	40.6	78.8	16.0	5.1	21.1	0.0	100.0
대재 이상	962	48.1	36.2	84.3▼	12.2	3.5	15.7	0.0	100.0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39.0	41.7	80.7▲	15.4	3.5	18.9	0.4	100.0
중소 도시	1,260	37.3	41.7	79.1	16.0	4.8	20.8	0.1	100.0
읍 / 면	333	41.2	36.6	77.9	19.1	3.1	22.1	0.0	100.0
▣계 층 별 ▣									
하 층	1,339	36.7	40.6	77.2	17.9	4.6	22.5	0.3	100.0
중 간	1,431	38.7	42.1	80.9	15.1	3.8	18.9	0.2	100.0
상 층	237	48.1	38.8	86.9▼	11.5	1.6	13.1	0.0	100.0

2.

우리나라에서 안락사를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지난 1997년 서울 보라매병원사건에서 법원이 당시 환자의 부인과 담당 의사를 살인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이후 지금까지 의료계는 물론 종교계, 법조계에서도 뜨거운 논의대상이 되고 있다. 안락사의 의미는 본래 불치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매는 고통받는 환자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돕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존귀한 것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 생명에 대한 인위적인 관여를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범죄로 평가하고 형벌로서 규제하고 있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불치의 병에 걸린 환자 본인이 참기 어려운 고통을 줄여 주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안락사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간의 생명은 존엄한 것이며 어느 누구도 인위적으로 타인의 생명을 단축시킬 수는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에서는 안락사 찬반 논쟁이 팽팽한 대립구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조사결과에서는 안락사 허용에 대해 동의하는 편이라는 의견(78.6%)이 높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안락사의 법제화를 받아들일 수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락사 허용의 문제는 현대의학으로도 치유가 불가능한 병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그를 치료하는 의사와 병원 등 여러 사회주체의 다양한 이익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안락사의 법제화에 있어서는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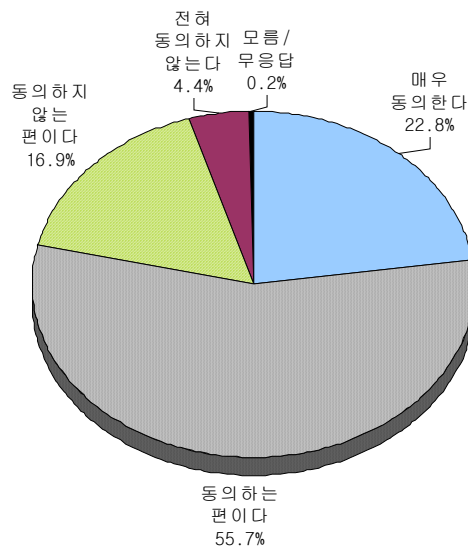
문36) ○○님은 안락사 허용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결 과	%
매우 동의한다	22.8
동의하는 편이다	55.7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6.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4.4
모름/무응답	0.2
계(N=3,007)	100.0

【 】

■ 안락사 허용에 대하여, 응답자 상당수가 동의하는 것(78.6%)으로 나타났다.

【 -43】



【 】

▣ 안락사에 관해서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학력이 높을수록, 읍/면지역으로 갈수록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 -59】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	
전 체	3,007	22.8	55.7	78.6	16.9	4.4	21.3	0.2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21.4	51.5	72.9	20.4	6.2	26.6	0.4	100.0
고 졸	1,522	22.4	57.1	79.6	15.7	4.5	20.3	0.2	100.0
대재 이상	962	24.0	56.0	80.0	16.7	3.3	20.0	0.0	100.0
▣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21.9	55.0	77.0	18.6	4.1	22.7	0.3	100.0
중소 도시	1,260	22.6	57.1	79.7	15.8	4.5	20.3	0.0	100.0
읍 / 면	333	27.1	54.1	81.2	13.3	5.6	18.8	0.0	100.0

3.

사형제는 현행법상 존재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과거 10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생명권과 관련하여 사형제도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사형제를 찬성하는 입장은 사형제도는 흉악범을 제거하는 중요한 제도로서 국가와 사회의 질서를 보존해 주는데, 만약 이를 폐지할 경우 범죄가 양산되어 사회질서가 붕괴될 위험이 주장한다. 또한 흉악범은 타인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은 자이므로 그에게 개인적인 책임이 있으며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응보적 형벌을 받음으로써 정의가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사형제 폐지를 찬성하는 입장은 사형제도를 통한 사회·국가의 질서를 보호하는 것이 상으로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인간의 생명권은 형벌권을 위임받고 있는 국가라 하여도 감히 박탈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형벌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재판을 통한 사형선고에서 재판의 오판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오판으로 인한 형이 집행된 경우 생명은 하나뿐인 것으로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형제도를 채택하는 국가가 축소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학계에서는 폐지론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학계에서의 입장과는 달리 조사결과에서는 사형제도의 존치에 찬성한다는 의견(69.6%)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사형제의 폐지를 받아들일 수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문37) 우리나라는 법률상에는 존재하지만 과거 10여년 동안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은 ‘사실상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님은 사형제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찬성하십니까? 혹은 반대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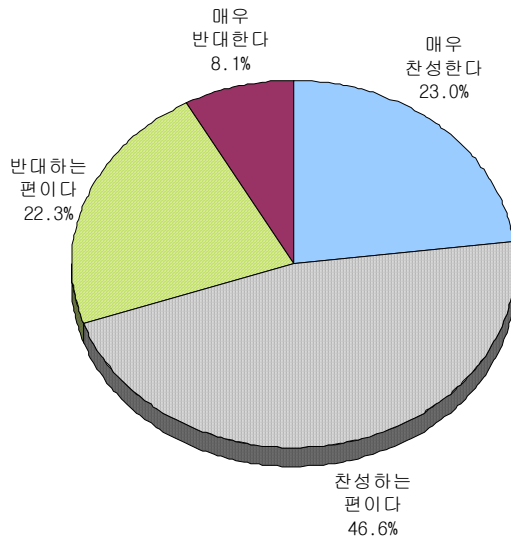
결 과	%
매우 찬성한다	23.0 ↑ 69.6
찬성하는 편이다	46.6 ↓
반대하는 편이다	22.3 ↑ 30.4
매우 반대한다	8.1 ↓

계(N=3,007)	100.0

【 】

■ 사형제 찬반여부를 묻은 결과, 찬성한다(69.6%)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 -44】



【 】

▣ 사형제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이 대도시로 갈수록, 계층이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60】

(%)

		①	②	①+②	③	④	③+④	
전 체	3,007	23.0	46.6	69.6	22.3	8.1	30.4	100.0
▣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23.3	50.2	73.6↑	21.0	5.5	26.4	100.0
중소 도시	1,260	21.3	45.3	66.6	23.2	10.2	33.4	100.0
읍 / 면	333	27.9	36.3	64.2	24.2	11.6	35.8	100.0
▣ 계 층 별 ▣								
하 층	1,339	22.9	44.1	66.9	22.0	11.0	33.1	100.0
중 간	1,431	22.4	48.8	71.2	22.8	6.0	28.8	100.0
상 층	237	26.8	48.0	74.8↓	20.9	4.3	25.2	100.0

Ⅱ.

1.

(1)

문38) 다음은 헌법에 관한 의견들입니다. ○○님은 다음 각각의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

결 과	%
매우 동의한다	23.6 ↘ 86.0
동의하는 편이다	62.4 ↘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12.4 ↗ 14.0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 ↘
계(N=3,0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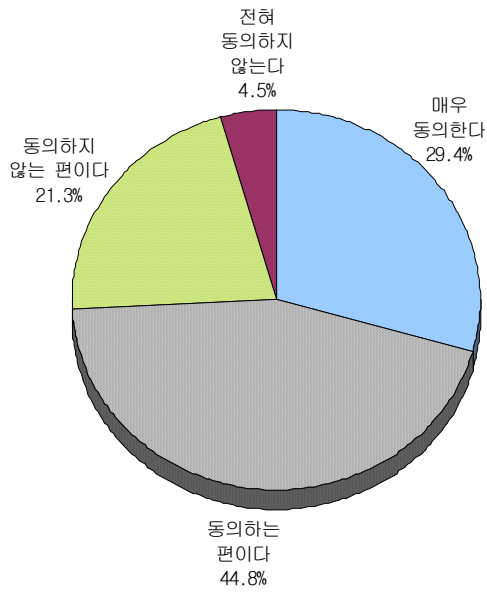
【 】

- ▣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동의한다는 의견이 86.0%로 헌법에 대한 다른 어떤 의견보다 높게 나타났다. 헌법은 기본권의 보장·실현을 기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권보장규범’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헌법도 제10조 이하에서 기본적 인권을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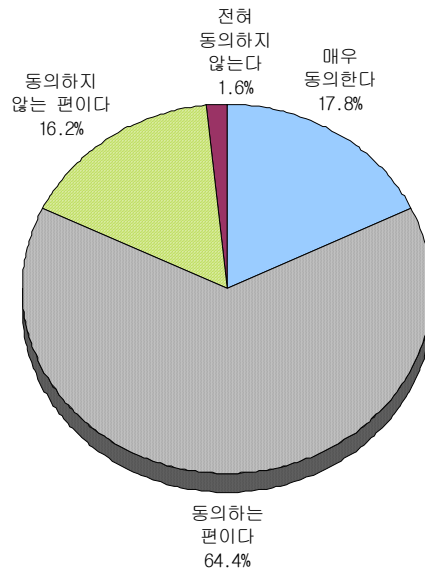
구체적으로 열거·보장함과 동시에 그 불가침성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다. 2008년조사에서도 86.0%가 이러한 우리헌법의 기본권보장 규범으로서의 존재의의를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헌법질서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아주 고무적인 결과라고 하겠다.

【 -45】



조사결과에 의하면, ‘헌법은 공동체의 존립을 유지하기 위한 최고법’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동의한다는 의견(82.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우리헌법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최고규범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제헌 60주년을 회고해 볼 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결과라고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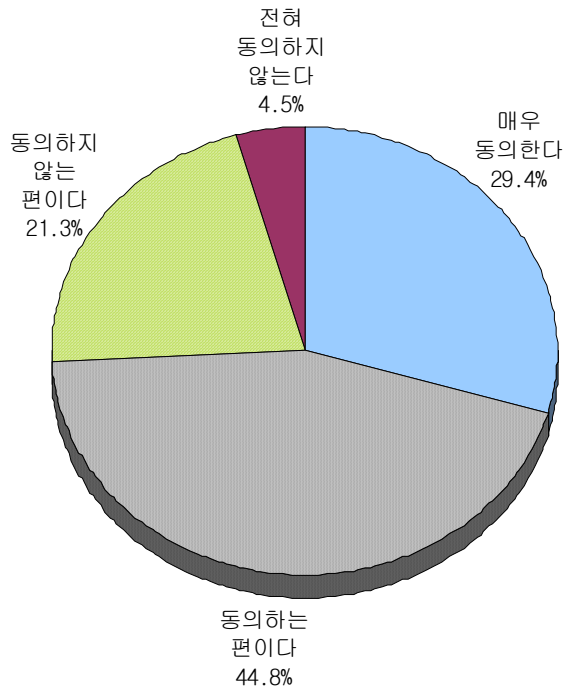
【 -46】



자유를 모든 국가권력으로부터 보장하는 규범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芦部信喜, 憲法(第三版), 有斐閣, 2005, 12頁 참조.

【 -47】

-



II.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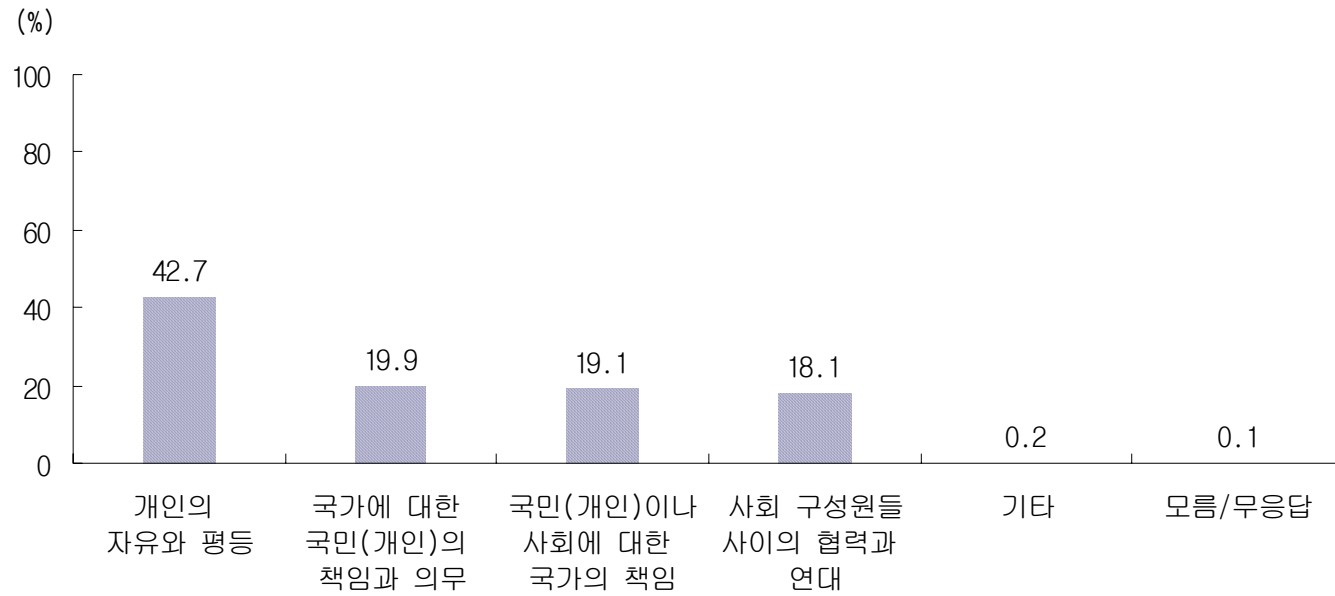
문39) ○○님은 우리 헌법에서 어떤 점이 가장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	-----
개인의 자유와 평등	42.7
국가에 대한 국민(개인)의 책임과 의무	19.9
국민(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	19.1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협력과 연대	18.1
기타	0.2
모름/무응답	0.1
-----	-----
계(N=3,007)	100.0

【 】

-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42.7%로 가장 많았고, ‘국가에 대한 국민(개인)의 책임과 의무’, ‘국민(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국가의 책임’, ‘사회 구성원 사이의 협력과 연대’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각각 19.1%, 19.1%, 18.1%에 달했다.

【 -48】



Ⅲ.

여기서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등을 모두 포괄하는 문항(문43)을 먼저 묻고, 이 중 일반국민들에게 가장 직접적 관련이 있으리라고 여겨지는 공직선거법(선거법)에 대한 문항(문44)을 좀 더 자세하게 물어보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조사결과 많은 사람들이 선거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선거사범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장 큰 이유로 여기는 점 등 우리 사회의 선거실태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과를 해석하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4월에 행하여진 대선과 총선 과정에서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과 특히 선거 전후로 언론매체에서 앞 다투어 보도하는 선거관련 비리와 사건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선거 자체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인상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선거법이 지켜지고 있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응답자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에서 노사관계법 또한 지켜지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나, 특정법률에 대하여 긍정 혹은 부정적이라기보다는 현행법제, 더 나아가서는 현 정부 및 정책에 대한 긍정 혹은 부정적 감정이 이러한 문항들에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Ⅲ.

【 -63】 : ↔

(%)

		45)		
44)		지켜지고 있음	지켜지지 않고 있음	계
	지켜지고 있음	55.7	44.3	100.0
	지켜지지 않음	23.9	76.1	100.0

1. .

문40)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정치부패를 줄이고 정치의 투명화·선진화를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사전선거 운동	12.4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57.4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	28.8
기타	1.1
모름/무응답	0.3
계(N=3,007)	100.0

【 】

▣ 우리 사회의 정치발전을 이루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57.4%)이라는 의견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28.8%)라는 의견 또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정당성에 대한 위기로 평가할 수 있으며,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 당내경선 및 정당공천에 대한 민주적 개선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¹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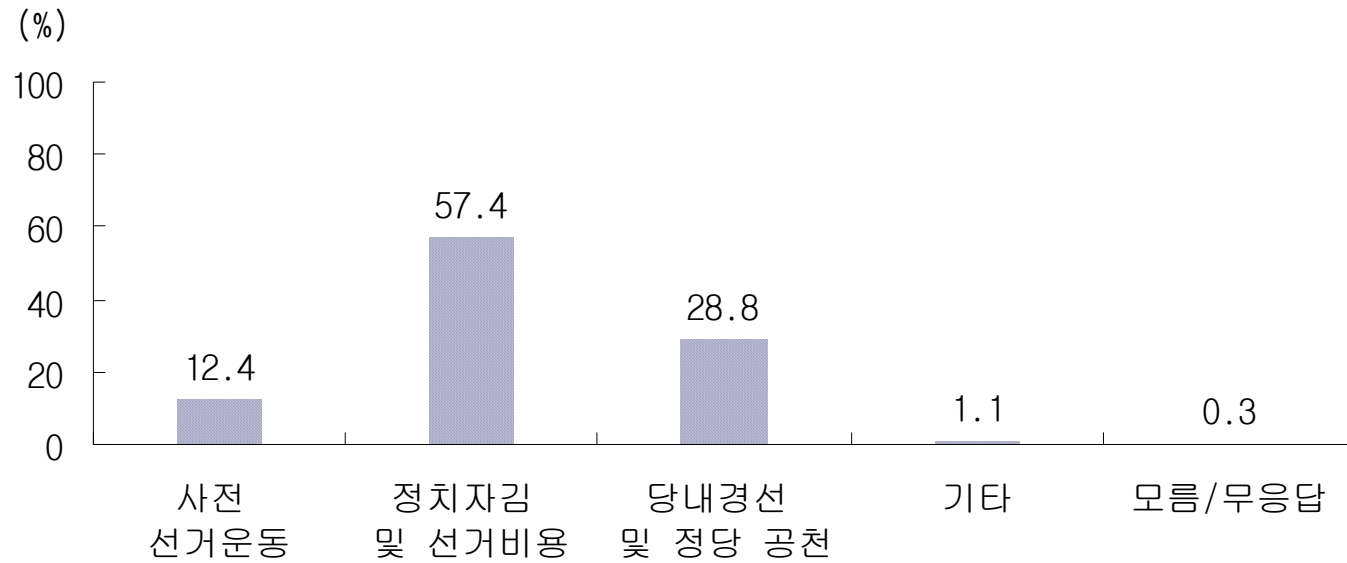
돈과 정치의 문제는 고대부터 금권정치가 통치형태의 한 유형으로 분류되었듯이, 현실적으로 분리하기 어려운 민주주의의 난제였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앞으로도 정치가 존재하는 한 돈과 정치의 완강한 연결고리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⁴⁰⁾ 이러한 정치자금의 일반적 원칙결정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치자금제도에 관한 외국제도의 백화점식 도입론을 지양해야 하고,¹⁴¹⁾ 우리나라에 적합한 구체적인 ‘저비용 고효율’의 정치문화 선진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39) 정만희 교수는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후보자 공천과정의 민주화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선거법제에서는 전혀 고려되지 못했고, 규제의 대상으로도 여기지 않았던 것이지만, 공천의 민주화문제는 정당의 민주화문제일 뿐만 아니라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라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여 후보자 공천과정의 민주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만희,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66호, 2002. 4, 38쪽.

140) 이종수,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127쪽 참조.

141) 박상철, 새천년 새정치를 위한 정치법학의 임무, 지정, 1995, 85쪽 참조.

【 -49】 .



【 】

▣ 정치발전을 위한 개선점과 관련하여, ‘정치자금 및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응답은 대도시로 갈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 -64】

(%)

전 체	3,007	12.4	57.4	28.8	1.1	0.3	100.0
▣ 지역 크기별 ▣							
대 도시	1,415	12.8	59.4↑	26.3	1.2	0.3	100.0
중소 도시	1,260	12.8	56.1	29.6	1.2	0.3	100.0
읍 / 면	333	9.1	53.4	36.3	0.9	0.4	100.0
▣ 이념 성향별 ▣							
진 보	877	13.7	60.2↑	24.8	1.1	0.2	100.0
중 도	1,378	11.9	56.3	30.6	1.1	0.1	100.0
보 수	752	11.7	56.1	30.2	1.2	0.7	100.0

2.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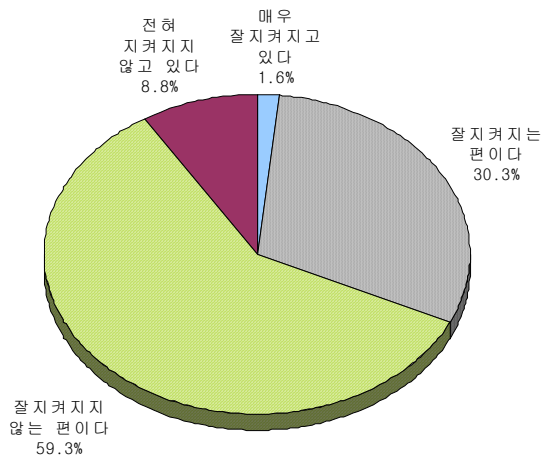
문41) ○○님은 우리 사회에서 선거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1.6 31.9
잘 지켜지는 편이다	30.3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59.3 68.1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8.8 ↓
계(N=3,0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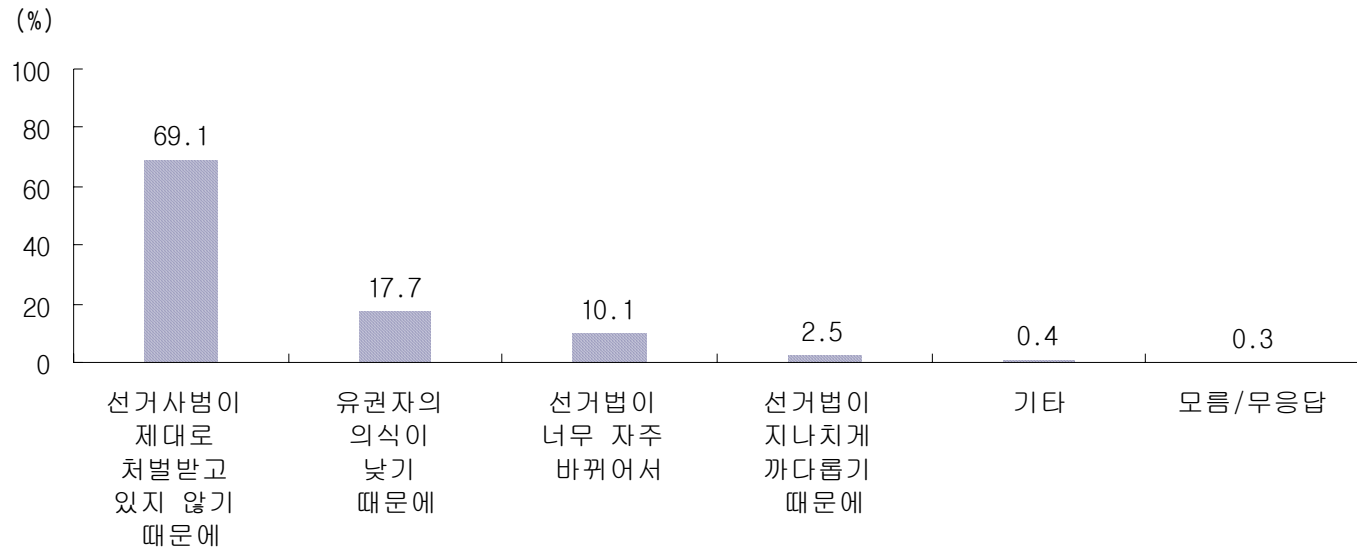
【 】

▣ 우리 사회의 선거법 준수정도에 대하여,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자의 68.1%로 높게 나타났다.

【 -50】



【 -51】



IV.

1.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발전이 압축적인 성장으로 이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노사관계 역시 매우ダイナミッ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97년 12월 3일 우리 정부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인 이후, 노동시장 유연화가 마치 하나의 대세처럼 움직였다. 이러한 노동시장 유연화는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에게 위기감을 조성했다. 사용자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하나의 당위명제처럼 여겼고, 근로자는 근로자의 삶을 기초부터 흔드는 위협적인 상황의 도래로 간주했다. 노사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더 첨예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노동시장 유연화를 포함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998년 1월 15일 노사정위원회가 설치되었다.¹⁴²⁾ 노사정위원회 발족 후 곧바로 이루어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채택’(1998. 1. 20)은 한 때나마 노사갈등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게 만들었다. 그러나 불과 1년 후 민주노총이 교원노조법제화 불이행과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을 이유로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함으로써 파란을 예고했다. 그 후 양대노총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탈퇴와 복귀가 반복되면서 노사정간의 갈등은 지속되어 왔다. 2006년 9월 11일에는 노사정위원회가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에 합의하여 노사관계법 선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러한 움직임은 현 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노사관계법은 집단적인 의미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일반국민들의 경우 언론을 통해 알려진 집단

142) 법적 근거 없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는 이 후 대통령령으로 노사정위원회규정(1998. 3. 28, 대통령령 제15746호)을 공포하게 되었고, 다시 법적 근거를 격상시켜 노사정위원회의설치및운영등에관한법률(1999. 5. 24, 법률 제5990호)을 제정·공포하기에 이르렀다.

IV.

적 쟁의 등을 노사관계법의 가장 큰 이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노사관계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노조와 기업간의 분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반복적인 집단파업과 정부나 기업의 미온적 태도 등 부정적인 면이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2007년 하반기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비정규직 법안 등은 노동법과 관련하여 국민적 불신을 가중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이러한 전반적 이미지에서 또한 그 연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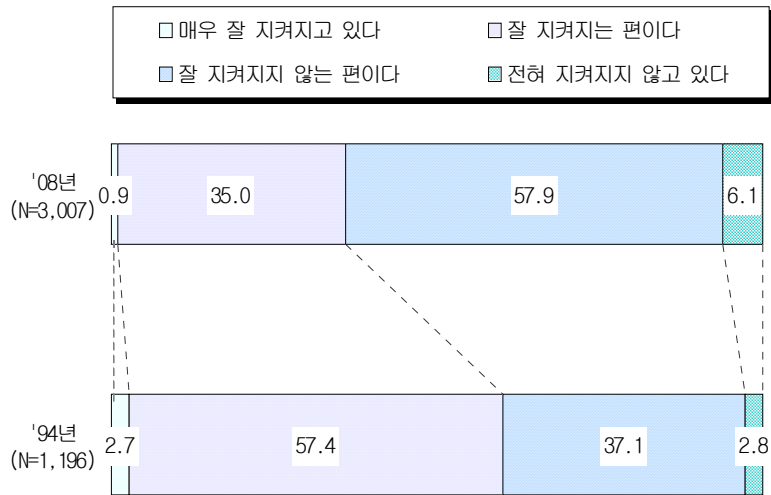
문42) ○○님은 요즘 노사관계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결 과	2008년 (N=3,007)	1994년 (N=718)
매우 잘 지켜지고 있다	0.9 ↘ 35.9	2.7 ↘ 60.1
잘 지켜지는 편이다	35.0 ↘	57.4 ↘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다	57.9 ↘ 64.1	37.1 ↘ 39.9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6.1 ↘	2.8 ↘
모름/무응답	0.0	-
계(N=3,007)	100.0	100.0

【 】

- ▣ 노사관계법 선진화를 위한 노사관계법 준수실태에 대한 질문에서, '08년도 조사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64.1%)이 우세하였으나, '94년도 조사에서는 '지켜지고 있다'는 의견(60.1%)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노사관계법 준수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으로 변했음을 알 수 있다.

【 -52】



	1991	1994	2008
		가) 가 ?	42-1) (42 '3,4') , 가 ?
		1)사용자 24.3(116)	1)사업주 60.8(117)
		2)근로자 2.5(12)	2)근로자 11.0(1)
		3)정부 16.1(77)	3)정부 27.1(213)
		4)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57.1(273)	4)기타 0.2(17)
			5)모름/무응답 0.1(4)

3.

문45-1) 그럼,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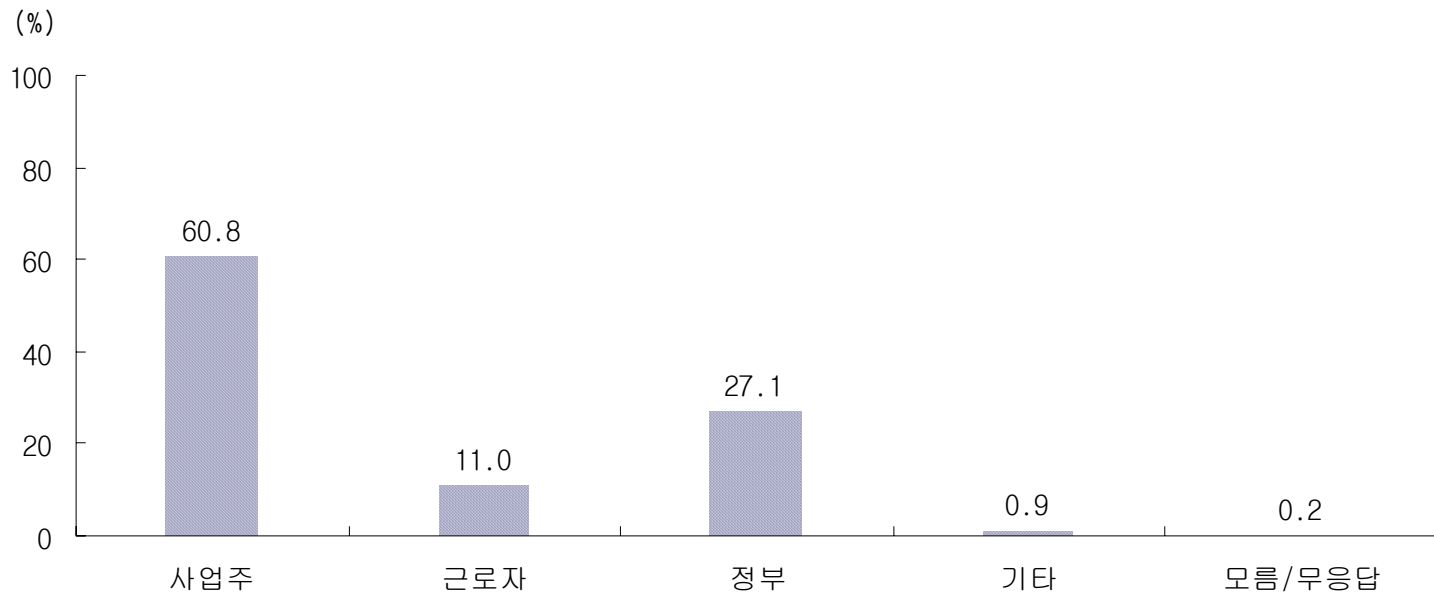
결 과	%
-----	-----
사업주	60.8
근로자	11.0
정부	27.1
기타	0.9
모름/무응답	0.2
-----	-----
계(N=1,926)	100.0

【 】

- ▣ 노사관계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자(N=1,926)에게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느냐고 묻은 결과, 사업주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60.8%)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정부(27.1%)라는 의견 또한 적지 않았다.

IV.

【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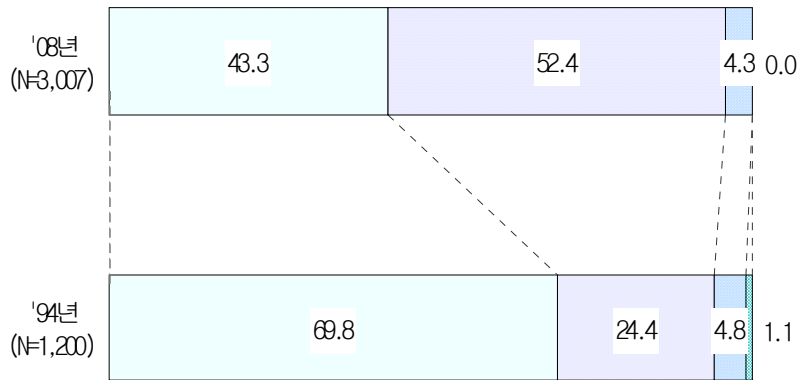
V. ()

최근 환경오염과 관련하여 가장 큰 이슈인 태안반도 기름유출사건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와 오염발생에 대한 원인자에 대한 사법처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반영하듯, 일반국민들 대부분이 환경오염 유발 기업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2008년조사를 1994년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벌금형 이상의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연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서도 언급하였듯이,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 대한 단순한 책임(금전적인 보상 등)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오염을 범죄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합의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이것은 최근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흐름의 중대한 변화 중의 하나인 종래의 사법적(私法的) 규제와 행정법적 규제로 일관되던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의 환경보호를 위한 형사법적 법적 조치의 등장에 부응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V. ()

【 -54】 ()

-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규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 벌금형 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 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 기타



【 -19】 1994 -

	1994	2008
	39. 가 ?	43)○○ 가 가 ?
환경오염의 규제방향	1)환경오염의 방지 및 복구에 대한 책임을 부담 시켜야 한다 69.8(837) 2)벌금보다는 징역 등 체형으로 처벌하여야 한다 24.4(293) 3)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4.8(57) 4)기타 1.1(13)	1)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시켜야 한다 43.3(1301) 2)벌금보다는 더 엄격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52.4(1574) 3)규제보다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치중하여야 한다 4.3(131) 4)기타 0.0(0) 5)모름/무응답 0.0(1)

【 】

▣ 환경오염 유발기업 규제 방법 중, ‘환경오염의 예방 및 피해구제에 대한 책임 부담’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학력이 높을수록 그리고 이념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학력이 낮을수록 그리고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 -69】 ()

(%)

전 체	3,007	43.3	52.4	4.3	0.0	0.0	100.0
▣ 학 력 별 ▣							
중졸 이하	523	36.3	59.0	4.8	0.0	0.0	100.0
고 졸	1,522	42.4	53.3	4.4	0.0	0.0	100.0
대재 이상	962	48.5	47.3	4.1	0.0	0.1	100.0
▣ 이념 성향별 ▣							
진 보	877	47.9	48.0	4.1	0.0	0.0	100.0
중 도	1,378	42.7	53.6	3.7	0.0	0.0	100.0
보 수	752	38.9	55.2	5.8	0.0	0.1	100.0

제 8 장 결 론

1997년 IMF 구제금융기를 전후하여 한국사회는 급속한 경제체제의 변화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사회계층간의 소득격차와 소득불균형의 확대 등 다양한 사회변화를 경험하고 있고, 지방자치제도의 본격 실시를 통하여 지방화와 분권화가 상당한 정도도 진행되었고, 이로 인하여 사회의 복잡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그 여파로 과거 정치적 또는 행정적으로 해결되었을 문제들이 법적 판단을 통하여 해결되는 일이 점차 늘어나게 되는 등 법과 제도의 소프트웨어가 급격하게 발전함과 동시에 복잡해지게 되었고, 법치주의의 운영시스템 자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이른바 ‘사법개혁’이 추진되었다.¹⁴³⁾ 이러한 사법개혁을 통하여 국민참여재판제도,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이 추진되는 등 국민의 사법제도에의 참여, 법률서비스 접근 기회 확대 등이 도모되고 있다. 또한 1988년 헌법재판소의 설치, 1994년 행정법원의 설치 등을 통해 국민의 권리구제수단이 확대되었다. 그 외에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등을 통하여 과거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국민권리박탈을 회복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설치를 통하여 통상의 엄격한 권리구제장치로 소용이 닳지 않는 인권침해에 대비하는 등 실질적 법치국가의 구현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정비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적·제도적 장치들의 정비와 더불어 국민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법의식도 성장하여 그 동안 우리 국민의 특유한 법의식으로 거론되어 왔던 무송(無訟)사상이나 ‘재판을 싫어하는 국민’이라는 관념의 유효성에 대한 의문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준법정신의 부재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법을 도구로

143) 최송화, 앞의 논문, 6쪽 이하 참조.

이용하려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는 입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변화 및 국민법의식의 변화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국민법의식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변화양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필요성에 입각하여 이 연구에서는 법의식의 개념을 가능한 한 넓게 해석하여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 법이라고 하는 사회통제제도에 대하여 가지는 법적 인식·법적 가치판단·법감정·법태도를 총칭하는 것으로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제2장에서 설문조사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에 앞서 법의식의 개념과 우리나라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의 연혁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가족 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화, 여성의 법률상 지위, 남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의견 등에 관한 문항을 채택하여 사회변동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가 국민의 법의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 보았다.

제4장에서는 법에 대한 느낌, 법의 필요성과 존재이유, 악법에 대한 인식, 유전무죄·무전유죄에 관한 인식 등을 중심으로 국민의 법에 대한 인식과 법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진단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법생활과 법적 경험, 준법정신과 권리의식 등을 중심으로 국민법의식의 수준을 가늠해 보았다.

제6장에서는 사법개혁에 대한 태도를 묻고자 권력·재력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여론이 재판에 미치는 영향, 로스쿨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제도도입의 효과,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적 시행을 위한 의견을 물었다.

제7장에서는 현행법제에 대한 응답자의 견해를 묻기 위하여 현실에 맞지 않는 법, 헌법에 대한 의식, 정치관계법, 노사관계법 위반의 책임소재, 환경오염의 규제방향에 관한 문항 등을 추가하여 조사하였다.

이상의 조사결과로부터는 여성의 법률상 처우 개선, 다문화 사회의 도래에 따른 외국인 등에 대한 포용력 향상, 학생집단이나 젊은 세대의 법에 대한 긍정적 인상 확산, 다원화된 사회에서의 법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법인지 경로의 다원화 및 뉴 미디어의 이용 증가, 법인지육구의 강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국민의 권리의식의 신장, 사법개혁에 대한 관심 및 인지도 고양, 헌법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국민의 법의식의 제고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입법 및 제도정비를 추진함에 있어 이와 같은 향상된 국민법의식을 고려하여 선진적인 입법 및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진다면, 선진법치주의의 구현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장미 빛 청사진을 그려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이 법에 대한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고, ‘유전무죄·무전유죄’ 현상을 통한 사법불신의 팽배, 법률서비스 이용경험의 저조 및 접근성의 곤란, 국민의 법인지육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법교육 실태, 우리 사회의 낮은 준법의식 수준, 정치관계법·노사관계법 준수 실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이 존재한다.

따라서 법치주의의 정착을 넘어선 선진적 법치주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한 노력, 모든 국민이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 구축, 효율적이고 실효적인 법교육 강화,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법정책·제도 등에 대한 홍보 강화, 정치관계법·노사관계법 등의 개선 등 국민의 법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다양한 법정책적·제도적 노력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입법·법적용·법해석의 방향은 주로 판·검사, 변호사, 법학자, 각 부처의 법제담당자, 법학도, 기타 법률종사자 등의 법전문가에 의

하여 크게 좌우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국민의 법의식 못지않게 이들에 대한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들의 법의식을 정확하게 파악할 때 비로소 국민법의식의 조사가 완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조사방법론 수립 및 별도의 설문지 구성 등을 필요로 하는바, 연구수행을 위한 시간적·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2008 국민법의식 조사연구’에서는 이들을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향후 일반국민의 경우와는 다른 조사방법론의 수립을 통한 법전문가의 법의식 조사를 통하여 법전문가의 법의식을 정밀하게 진단함으로써 국민법의식 조사의 성공적 완결을 기대한다.

【 참고 문헌 】

- 강정인, 소크라테스, 악법도 법인가?, 한국정치학회보 제27집 제2호, 1994.
- 강은희·이은희·임은정, 집단따돌림 행동유형과 심리적 특성, 상담 및 심리치료, 한국심리학회지 제14권 제2호, 2002.
- 곽한영, 법의식과 법교육-여자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학술정보원, 2007.
- 권미경, 초등학교 도덕교과서의 민주시민교육 내용 비교분석, 청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8.
- 김경숙, 조선후기 산송(山訟)과 사회갈등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김다현, 법교육을 통한 법의식 영향 연구 : 고등학교 ‘법과 사회’를 중심으로, 법교육연구 제1권 제2호, 2006.
- 김시업·김지영, 한국인의 법의식 : 법리(法理)와情理(情理)의 갈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제9권 제1호, 한국심리학회, 2003.
- 김영란, 법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형사정책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9.
- 김은경, 준법의식 현황과 과제, 준법의식의 현주소와 준법운동의 전개 방향, 형사정책연구원, 2000. 6.
- 김정오, 규범마찰과 분쟁야기에 따른 정서변화의 양태분석, 사회과학연구 제5집,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6.

【 】

- 김정오, 법원의 법문화 : 법원의 이미지 Vs. 법원의 현실, 법과 사회 제21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1.
- 김종철, 헌법과 양극화에 대한 법적 대응, 법과 사회, 법과사회이론학회, 2006.
- 박병호, 한국의 전통사회와 법, 근세의 법과 법사상, 진원, 1996.
- 박상철 외 2인, '91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1.
- 박상철 외 2인, '94 국민법의식조사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4.
- 박상철, 새천년 새정치를 위한 정치법학의 임무, 지정, 1995.
- 박은정, 법치문화의 혁명적 변화를 위하여 - 규범적 측면에서 본 새로운 한국인상 -, 정책포럼 27,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회, 2000. 2.
- 박재윤, 법교육에 관한 연구 - 초·중등학교 법교육의 재정립을 중심으로 -, 한국교육 제19권, 1992.
- 백윤철,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8권 제3호, 2002.
- 서경림 외, 제주도민의 법의식,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9.
- 손경한, 사법서비스 향상을 위한 국민과 언론의 역할, 법과 사회 제18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0.
- 송기춘, 참여정부에서의 법치주의의 발전: 헌법적 평가와 전망, 공법연구 제35집 제4호, 한국공법학회, 2007.
- 심재우, 박병호 교수의 전통적 법, 법의식과 현대법의 과제에 대한 토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12.
- 안청시·백창재 편, 한국정치자금제도-문제와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3.

- 양 건, 법사회학, 아르케, 2004.
- 양 건, 한국과 일본 간의 비교법문화론을 위한 서설 : 함병춘과 川島 武宜를 넘어서, 저스티스 제34권 제1호.
- 양 건, 한국에서의 ‘법과 사회’ 연구, 법과사회 창간호, 창작과 비평사, 1989.
-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의 사회와 문화 제3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
- 양승두, 우리나라 전통적 법의식과 그 변화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제2권, 연세대학교, 1982.
-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사상과 정책, 법문사, 1989.
- 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사회과학논집 제9집, 1968.
- 양승두, 한국의 법문화론, 고시연구, 1997. 7.
- 양승두 외, 한국의 법문화 I,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
- 오병선, 한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평가와 과제,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학회, 2007.
- 이상윤, 집단따돌림현상의 헌법적 개념정의와 입법론적 과제, 공법학연구 제9권 제2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5.
- 이상윤, 일본헌법제도론, 세종출판사, 2006.
- 이은영, 한국의 계약문화, 법과 사회,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제25호, 2003.
- 이종수, 정당제민주주의의 현안문제의 검토, 헌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07.

【 】

이해완, 사이버스페이스와 표현의 자유, 헌법학연구 제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00.

임상혁, 소송 기피의 문화전통에 대한 재고와 한국사회, 법과 사회 제 25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2003.

임송학, 일본의 내각법제국과 중의원법제국을 다녀와서, 법제 2007. 2.

임 웅, 법감정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제1권, 1998.

임현모, 제7차 도덕과 교육과정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 한국동북아논총 제29집, 한국동북아학회, 2003.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 1975.

임희섭, 한국인의 법의식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 제 15권 제1호,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장문철, 재판에 의하지 않는 분쟁해결방식(ADR), 인권과 정의 제215호, 1994.

장미향·성한기, 집단따돌림피해 및 가해경험과 사회정체성 및 사회 지지의 관계, 사회 및 성격, 한국심리학회 제21권 제1호, 2007.

전경목, 조선후기 산송(山訟)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6.

정극원, 법 경시풍조와 선거범죄신고포상금제, 공법학연구 제9권 제1호, 한국비교공법학회, 2008.

정만희, 현행 선거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저스티스 제66호, 2002. 4.

차용석 외 2인, 한국인의 법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및 준법의식의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6집,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1989.

- 최송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의 창달, 법제 2006. 10.
- 최송화,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 공법연구 제 36집 제1호, 한국공법학회, 2007. 10.
- 최 식, 한국인의 권리 및 법의식, 성대논문집 제17집, 1972.
- 최응렬,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의식 제고, 기초질서 확립 방안 전문가회의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 6.
- 최종고, 한국법문화의 근대화과정, 석당논총(石堂論叢) 제9집, 1984.
- 함병춘·양승두, 한국인의 법의식, 한국의 법률문화, 국제문화재단출판부, 1975.
- 홍완식, 인터넷실명제 관련 법률안의 입법원칙에 따른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31집,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 홍준형,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8.
- 한도현 외, 한국경제선진화와 법치, 백산서당, 2004.
- 황승흠, 법과 사회질서를 보는 사회과학적 시각, 법과 사회 제16·17합본호, ‘법과 사회’이론연구회, 1999.
- 황승흠, 법의식조사의 법사회학 : 방법론 모색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의식조사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자료집, 2008.
- M. Rehbinder, 이영희·최종고 역, 법사회학, 1984.
- 로렌스 M. 프리드만/박남규 역, 법과 사회, 법문사, 1990.

【 】

芦部信喜，憲法(第三版)，有斐閣，2005.

六本佳平，法社會学，有斐閣，1986.

川島武宜，日本人の法意識，岩波新書，2005.

和田仁孝 編，法社會學，法律文化社，2006.

和田仁孝 外，法社會學の可能性，法律文化社，2004.

外尾健一・廣中俊雄・樋口陽一，人權と司法，勁草書房，1984.

樋口陽一，比較の中の日本国憲法，岩波書店，1979.

E.-J. Lampe (Hrsg.), Zur Entwicklung von Rechtsbewußtsein, Frankfurt am Main, 1997.

E. Riezler, Das Rechtsgefühl, 1. Aufl., 1921.

F. Wieacker, Grundlagen der Rechtskultur, Plenarsitzungsreferate und Korreferate der 11. Weltkongress für Rechts- und Sozialphilosophie, Helsinki, 1982.

H. Henkel, Rechtsphilosophie, 2. Aufl, 1977.

Hahm Pyung-choon, Decision Process in Korea, Korean Jurisprudence, Politics and Culture, Seoul, Yeonsei University Press, 1986.

L. Friedmann, Law and Society : An Introduction, Prentice-Hall, 1977.

T. Würtenberger, Schwankungen und Wandlungen im Rechtsbewußtsein der Bevölkerung, NJW 1986.

Th. Geiger, Vorstudien zu einer Soziologie des Rechts, 2. Aufl., 1970.

Tokiyasu Fujita, Streivermeidung und Streiterledigung durch informelles
Verwaltungshandeln in Japan, NVwZ 1994.

U. Matz, Rechtsgefühl und objektive Werte, 1966.